

C2004-18 / 2004. 6

한 · 일 FTA 체결과 임업부문의 정책과제

어 명 근 연구 위 원
장 철 수 부 연구위원
이 광 연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머 리 말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출범으로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다자주의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주요국은 다자주의보다는 지역주의에 더 치중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WTO/DDA 각료회의가 각료 선언문 합의에 실패한 이래 지역주의는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지난 5월 1일에는 동부유럽 10개국의 가입으로 EU가 확대되었으며 남북미 34개국은 범미주 자유무역지대(FTAA)를 2005년까지 창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는 유럽과 미주, 그리고 동북아의 3극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중·일 FTA 창설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이미 2003년 12월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공식협상에 착수하였다.

한·일 FTA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최초의 거대 경제권과의 FTA로서 한·일간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와의 FTA와는 달리 한국의 일부 제조업부문과 일본의 농업부문 등이 민감부문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 연구는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임업부문의 정책과제를 규명하고자 추진되었다. 한·일 양국의 임산물 수급 및 교역구조와 경쟁력을 분석하고 FTA 체결이 임산물 교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측하여 임업부문에서 대일 FTA 협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가 향후 한·중·일 FTA 출범을 위한 정책 결정과 대책 마련에 필요한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4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문

한국의 일본 목재류 수입시장 점유율은 약 0.2%에 불과한 낮은 수준으로 대부분 중간재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들 품목들은 광범위하게 소비되는 품목이라기보다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소량 주문형 수출품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일반 합판과 일반 섬유판보다는 기타 합판, 기타 섬유판 등 특수 가공목재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수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틈새시장 확보 차원에서는 일본과의 FTA 체결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어도 대일 목재류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목재류 교역은 규모는 작지만 상호보완적 관계와 동시에 산업내 무역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은 섬유판과 제재목을 수출하는 대신 일본산 단판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complementary) 관계에 있으면서 합판과 목재케이스는 서로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산업내 무역 관계도 있어 FTA 체결시 상호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산 단기소득 임산물의 대일 수출은 수출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외국산 임산물이나 일본산 임산물과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보한 품목이 거의 없다. 따라서 한국산 단기소득 임산물은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이나 생산비 절감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자연조건에 제약을 받고 있어 대일 수출량이 연도별로 크게 변동하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과 일본의 관세구조 분석 결과 품목세분화 정도는 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한국은 세율이 세번별로 차등화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목재류 평균 실행세율은 6.3%로 일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고, 무관세율은

19.5%로 일본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 외견상 관세장벽이 높게 나타나지만 관세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민감 품목을 보호하기 위한 차등과세 기능이 취약하다. 반면에 일본은 실행세율이 평균 2.9%로 낮고 무관세 비율도 목재류는 37.1%, 단기소득 임산물은 35.1%로 높아 외견상 관세 장벽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세분화된 품목들의 가공도에 따라 차등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민감품목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품목 세분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은 합판과 제재목의 세분화 정도가 높고 한국은 원목과 단판의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은 세분된 품목에 대해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원목 일부 품목에 할당세율을 적용하고 있을 뿐 품목 세분화와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FTA 체결시 예외없는 관세철폐 원칙이 적용될 경우 전반적인 임산물 실행관세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한국의 수입 증가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관세 품목이 많은 일본은 관세철폐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한국산 임산물의 대일 신규 수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수출품목의 수출액도 크게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임산물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계측한 결과 한국은 밤과 섬유판, 마루판, 산림수 종자, 목재케이스, 초피류, 송이 등의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침엽수 합판, 목재케이스, 기타 적층목제품, 기타 산림수, 밤과 펠렛 및 박스펠렛, 건축용 목재건구 등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았다. 또한 세계 각국의 평균 시장점유율에 대한 상대적인 시장점유율인 시장별 비교우위(MCA)를 계측한 결과 한국이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품목은 밤, 송이, 표고(건조), 산림수 종자, 수피류, 섬유판, 침엽수합판, 침엽수제재목, 목재케이스, 건축용 목재건구, 죽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이 한국의 임산물 수입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품목은 분재용 나무, 사고뿌리(쪼뿌리), 올레오레진, 생칠, 식물성염색원료, 마룻글라세, 삭편상(활엽수), 방부처리원목(침엽수), 단판, 침엽수 합판, 목재케이스, 보빈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 가운데 비교우위도 높은 품목은 한국의

경우 밤과 섬유판, 산림수 종자, 목재케이스, 송이 등이며 일본은 침엽수 합판과 목재케이스 등이었다.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별 비교우위가 높은 것은 세계 전체의 시장점유율에 비해 당사국의 시장점유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상호 시장별 비교우위를 갖는 침엽수 합판과 목재케이스 가운데 침엽수 합판은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규격과 용도가 일본의 비교우위 규격 및 용도와 서로 달라 사실상 같은 품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이 모두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이 거의 없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양국간 임산물 교역은 상호보완적이라는 특징이 확실하게 드러난 반면 임업 부문에서의 산업내 무역 관계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간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의 교역전환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잠재 교역액(PBT)을 계측한 결과 한국의 대일 임산물 수출액은 약 1억 9백만 달러, 대일 수입액은 약 94백만 달러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도 약 15백만 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임산물 대일 수출은 1999~2003년 기간 평균 대일 임산물 수출액(약 1억 4천 9백만 달러)의 약 73%가 증가하고 수입은 5년간 평균 수입액(약 1천 7백만 달러)의 45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에 따라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겠지만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양국간 임산물 교역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일본의 임산물 수출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일본산 임산물의 한국 수출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 탓이라 할 수 있다. 품목별 한국의 대일 수출 증가 예상액은 기타 합판 26백만 달러, 새의 솜털과 깃털 15백만 달러, 조립식 건축물 13백만 달러, 밤 10백만 달러, 섬유판 8백만 달러, 보빈과 스폴 4백만 달러, 목재케이스 4백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품목별 대일 수입 증가 예상액은 단판이 10백만 달러, 보빈과 스폴 8백만 달러, 제재목 7백만 달러, 조립식 건축물 5백만 달러, 합판류 5백만 달러, 오가피주 5백만 달러, 목재식기 5백만 달러, 건축용 목재건구 4백만 달러 등이었다.

이러한 전망은 양국의 관세가 일시에 철폐될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그러

나 현재까지 체결된 FTA는 대부분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과 5년 내지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양허계획표(C/S)를 첨부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철폐 기간이 길어지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교역액 증가는 앞서서의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이다. PBT는 수입전환효과에 의해 교역액이 증가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산물 수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싱가포르와의 FTA에서조차 기존의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로 분류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FTA에서 임산물 관세를 일시에 철폐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대일 임산물 수출도 앞서 예측한 만큼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가공도가 높은 품목들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능한 한 장기간에 걸쳐 인하하는 다양한 관세철폐 범주(Category)를 포함하는 양허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 FTA 협상전략은 양허안(Offer)과 양허요청서(Request)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양허안 작성의 기본 원칙은 관세 철폐시 수입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에 충격이 작은 품목부터 즉시 또는 단기간에 철폐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양허안 작성 기준으로 현행 실행세율 수준을 참고하되 칠레와의 FTA 협정에 제시한 양허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원목류와 같이 할당관세 등에 의해 사실상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철폐하고 중간재로 사용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단기간에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는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생산이 어렵거나 경쟁력이 낮고 실행세율 3.0% 이하인 칩상 및 삭편상과 일부 단판류들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양허세율 수준에 관계없이 실행세율이 10년 이상 5% 이하로 낮게 유지된 품목들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 사실상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들과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UR에서 양허하지 않은 목재류 품목들은 국내 수급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6mm 이상 합판류는 일단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분류하되 한·칠레 FTA 양허안을 기준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칠레와의 FTA에서는 “DDA 협상 이후에 논의” 범주에 속하는 목재류가 없었지만 사실상 DDA 협상 결과에 따라 한·일 FTA에서의 양허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주에 포함되는 목재류 품목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허세율이 100% 이상으로 높은 품목들 가운데 실행세율도 50% 이상으로 높은 품목들은 “관세철폐 예외” 또는 장기간에 걸친 감축 대상 품목으로 분류한다. 특히 한·칠레 FTA에 없었던 10년 이상 장기간 관세철폐 범주를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단기소득 임산물들은 생산 농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일 양허요청서(Request)에는 일본의 임산물 수입시장 점유율과 시장비교우위(MCA)가 높은 품목, 그리고 대일 잠재수출액(PBT)이 높게 계측된 품목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철폐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일 수입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품목 및 한국시장 비교우위(MCA)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양허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대일 양허 요청시 관세철폐에 따른 실익이 작거나 불분명한 품목 또는 일본이 민감 품목으로 분류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관세철폐 요구보다는 향후 중국이나 ASEAN과의 FTA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현행 실행관세율이 5% 이내인 품목들은 관세철폐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의 실행관세가 5% 이내인 품목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준세율이 높은 (30~50% 이상) 품목은 양허요청서에 포함시키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굳이 “관세 철폐 예외”로 명시할 필요없이 관세철폐 요청서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측과 협의를 거쳐 신축적인 FTA 협상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관세철폐 예외” 범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제 2 장 일본의 임산업 현황과 수급구조	5
1. 일본의 임산업 현황	5
1.1. 생산구조	5
1.2. 목재류	6
1.3. 단기소득 임산물	11
2. 일본의 임산물 수급구조	16
2.1. 목재류	16
2.2. 단기소득 임산물	18
제 3 장 한·일 임산물 교역구조와 특징	23
1. 한·일 임산물 교역구조	23
2. 한·일간 임산물 교역의 특징	28
2.1 한·일 목재류 교역의 특징	28
2.2 한·일 단기소득 임산물 교역의 특징	31
제 4 장 한·일 임산물 관세체계 비교	34
1. 한국의 임산물 관세구조	34
1.1 단기소득 임산물의 품목분류와 관세체계	34
1.2 목재류 품목분류와 관세 체계	38

2. 일본의 임산물 관세구조	40
2.1. 특용 임산물의 품목분류와 관세체계	40
2.2. 목재류의 품목분류와 관세체계	45
3. 한·일 임산물 관세구조 비교	48
 제 5 장 한·일 FTA 체결의 파급효과 계측	50
1. 한·일 임산물 경쟁력 분석	50
1.1. 품목별 수입시장 점유율	50
1.2.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55
2. FTA의 수입전환효과 : 양국간 잠재교역액(PBT)	61
 제 6 장 결 론 : 한·일 FTA 임업부문 대응방안	65
1. 한국과 일본의 FTA 체결 사례	65
1.1. 한국의 FTA 체결 사례 : 한·칠 FTA	65
1.2. 일본의 FTA 체결 사례 : 일·싱 FTA	67
2. 분석 결과 요약	70
3. 임업부문의 한·일 FTA 협상 전략	74
 <참고문헌>	77
 <부록 1> 일본의 임산물 비관세 장벽 현황	78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90
<부표 2> 일본 시장내 한국농산물의 MCA지수	112
<부표 3> 한국 시장내 일본농산물의 MCA지수	123
<부표 4> 일본 임산물의 한국 시장내 잠재교역액(PBT)	135
<부표 5> 한국 임산물의 일본 시장내 잠재교역액(PBT)	140

표 목차

표 2-1	일본 산림의 생산구조	6
표 2-2	일본의 제재공장 현황	7
표 2-3	일본의 합판산업 현황	9
표 2-4	주요 특용 임산물 생산동향	11
표 2-5	일본의 밤 생산동향	13
표 2-6	일본의 주요산지별 송이버섯 생산시기	15
표 2-7	목재(용재) 수급구조	16
표 2-8	해외 수입재(용재) 공급구조	17
표 2-9	일본의 밤 수급 동향	18
표 2-10	일본의 표고버섯 수급동향	20
표 2-11	일본의 송이버섯 수급동향	21
표 2-12	일본의 송이버섯 수입동향	22
표 3-1	임산물 대일 수출 동향	27
표 3-2	임산물 대일 수입 동향	28
표 3-3	일본의 목재류 수입 동향	29
표 3-4	일본의 목재류 수입가격 비교	30
표 4-1	한국 임산물 관세구조	36
표 4-2	일본 임산물 관세구조	42
표 5-1	한국 임산물의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	52
표 5-2	일본 임산물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54
표 5-3	한국 임산물의 일본시장에서의 MCA 지수	57
표 5-4	일본 임산물의 한국시장에서의 MCA 지수	60
표 5-5	주요 임산물 양국간 잠재교역액	63
표 6-1	한·칠레 FTA 임산물 양허 내용	67

그림 목차

그림 3-1 한·일 임산물 수출입 현황	24
그림 3-2 주요 임산물 품목별 대일 수출 추이	26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과 일본은 2002년 7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가능성에 대한 산·관·학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어 2003년 12월 양국간 FTA체결을 위한 정부간 공식 협상을 시작하여 2004년 6월 말 4차 협상을 완료하기에 이르렀다. 한·일 양국은 약 2년간의 협상을 거쳐 2005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WTO/DDA 각료회의가 선언문 합의에 실패하는 등 세계 경제는 다자주의 체제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지역주의가 더욱 확대,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EU의 동진(2004년 5월 동부 유럽 국가들의 EU 가입)과 200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출범 등 거대 경제 블록이 형성되면 세계 전체에 지역주의가 팽배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세계 경제는 장기적으로 NAFTA와 EU, 동북아시아의 3극 구도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까지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불모지였던 동북아 지역은 2001년 일본이

싱가포르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데 이어 2004년 멕시코와의 자유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타결시키고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 국가 및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공식 협상에 착수하였다. 우리나라도 칠레와의 FTA 협상을 발효시킨데 이어 현재 일본 및 싱가포르와 공식 협상을 진행중인 상태이다.

한·일 양국은 경제발전 단계가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도 상호 경쟁적인 측면이 강하여 EU나 NAFTA 등과 달리 FTA 협상 타결까지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농림업 분야는 일본과의 FTA에 찬성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제조업 분야는 기술력과 자본력의 극심한 차이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일 FTA는 농업 등 특정 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포괄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임업 분야도 양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한 실무 협상에 대비하여 일본의 임산물 생산과 소비 구조, 수출입 동향과 변화 전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FTA 체결의 이해득실을 예측하고 대일 협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정부간 공식 협상에 착수한 한·일 FTA 체결이 임업 생산과 소비, 그리고 임산물 수출입 등 임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대일 협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한·일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의 당면 과제는 단기적으로 산업간 이해관계가 상반되게 나타날 가능성과 양국간 역사적 특수성을 포함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제조업과 일본의 농업부문이 취약부문으로 예상된다. 김군호(2003)는 만일 WTO/DDA 모델리티 협상이 장

기화되어 한·일 FTA와 함께 추진될 경우 양국간 관계가 공조관계와 대립관계를 동시에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일 FTA 체결의 파급효과 계측에 관한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정인교(2003)는 CGE 모형과 GTAP 프로그램에 의해 양국간 FTA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대일 및 전체 무역수지 적자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세균 외(2001)는 한국과 일본의 2국가 CGE 모형에 의해 한·일 FTA 체결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계측하였다. 추정 결과 한·일 FTA는 한국의 농업 부문 부가가치를 14% 향상시켜 농업부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신동천 외(2001)는 임산물 대일 수출이 4.2% 감소하고 수입은 45.4% 감소하여 임업부문의 무역수지 흑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최세균 외(2004)는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의 영향은 실행 관세율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전제 하에 양국의 실행관세를 분석한 결과 평균 실행관세율이 한국 54%, 일본 24%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높게 나타나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는 일본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무역자유화가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잠재적 교역액으로 계측한 결과 한국의 대일본 농산물 잠재적 수출액은 2002년 기준 6억 5천만 달러, 일본의 대한국 농산물 잠재교역 규모는 6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한·일 FTA로 인한 시장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 원칙과 일본의 고율관세 품목 및 잠재교역액이 크게 나타난 품목 위주의 양허요청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일본의 각종 비관세장벽 철폐 또는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요구하는 한편 차액관세제도와 종량세 등도 종가세에 준하여 철폐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한국산 농산물 수출 증대의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양허요청서에 반영함으로써 전략적인 협상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신동천 외(2001)는 임산물 수입총액에 대한 징수액 기준 관세율은 일본이 5.03%로 한국 2.66%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임산물 단순평균 양허세율은 2.85%로 한국(9.3%)보다 크게 낮았으며 2003년 일본의 한국산 임산물(HS-44류) 수입에 대한 징수액 기준 관세율도 2.68%로 한국의 일본산 임산물 징수액 기준 관세율 6.98%에 비해 역시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상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한·일 FTA 체결시 경제 전반 또는 농업과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 방안에 관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FTA 체결이 임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협상 전략에 관해서는 경제 전체의 한 부문으로서 피상적인 영향 예측 결과만이 제시되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일 FTA에 대비하여 임업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 계측과 대응방안 및 협상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제 2 장

일본의 임산업 현황과 수급구조

1. 일본의 임산업 현황

1.1. 생산구조

일본의 산림 면적은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3.9배인 2,512만ha이며, 이 가운데 임목지가 2,371만ha이며 그밖에 벌채나지와 무임목지 및 죽림 등이 141만ha에 달한다. 임야 소유형태는 국유림 31.2%, 민유림 68.8%로 민유림 위주이다. 임상별로는 인공림이 49.6%, 천연림 50.4%로 되어 있으며, 인공림 면적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천연림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목재생산 가능성을 나타내는 영급구조를 보면 천연림의 경우 전체의 30%정도가 8영급(80년생) 이상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림은 벌채이용이 가능하지만 산촌과 촌락주변 야산 등의 천연림은 주로 신탄용재로 이용되는 것 외에는 생활양식의 변화와 인구 과소화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공림의 경우 전후 조림된 인공림의 대부분은 간벌이 필요한 3~4영급

(21~40년생)에 속해 있어 향후 주벌이 가능한 산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산비 증가와 목재가격의 정체 등에 따른 임업의 채산성 악화로 간벌 및 주벌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천연림과 인공림을 포함한 전체적인 일본 산림의 영급구조는 4~5영급(전체 면적의 41.1%)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당분간 중, 소경목의 생산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이들 산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향후 일본 산림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2~3영급(11~30년생)이 전체 산림면적의 59%, 5영급(41년생 이상) 산림은 9%에 불과한 어린나무 위주의 산림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일본은 충분히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산림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1> 일본 산림의 생산구조

단위 : %

영 급	계	1	2	3	4	5	6	7	8	8영급 이상
천연림	100	1.2	2.8	4.8	12.5	20.1	12.1	6.9	9.6	30.0
인공림	100	4.2	11.0	22.2	32.5	19.8	4.4	2.8	1.7	1.4
합 계	100	2.5	6.5	12.4	21.2	19.9	8.7	5.1	6.2	17.5

주: 1영급의 길이는 10년임

자료 :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림수산통계」, 2003.

1.2. 목재류

1.2.1. 제재업

제재업은 기초 원자재인 원목을 이용하여 주택건축용, 토목 건설용, 가구 용재, 포장용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재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목재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일본의 경우 산림의 생산구조에서도 나타났듯이 산림이 자원으로 점점 더 충실해지고 있어 산림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수단이자 재생산 가능한 산림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재생산업으로서 기대를 받

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제재업은 품질과 성능을 중시하는 수요의 변화와 제재품의 수입 증대 및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으며, 제재공장 수, 종업원 수, 생산량 모두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3년도 제재공장 수는 1999년 대비 19.3% 감소한 9,920개로 나타났으며, 종업원 수도 78,757명에서 58,593명으로 25.6% 감소하였고, 제재목 소비량은 27,079천m³에서 21,531천m³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용재, 토목 건설용재, 상자, 포장재, 가구·건구용재, 기타 용재 등 제재품 출하량은 18,165천m³에서 13,929천m³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표 2-2> 일본의 제재공장 현황

단위 : 개, 명, %, 천m³

연차	제재용 동력출력 계층별 공장수							종업원수	제재품출하량
	합계	7.5- 22.5KW	22.5- 37.5	37.5- 75.0	75.0- 150.0	150.0- 300.0	300KW 이상		
1999	12,288 (100.0)	1,195 (9.7)	2,740 (22.3)	4,678 (38.0)	2,084 (17.0)	1,040 (8.5)	551 (4.5)	78,757	18,165
2000	11,692 (100.0)	1,137 (9.7)	2,635 (22.5)	4,406 (37.7)	1,991 (17.0)	980 (8.4)	543 (4.7)	73,625	17,231
2001	11,020 (100.0)	1,050 (9.5)	2,533 (23.0)	4,092 (37.1)	1,888 (17.1)	918 (8.3)	539 (4.9)	67,012	15,485
2002	10,429 (100.0)	948 (9.1)	2,468 (23.7)	3,849 (36.9)	1,766 (16.9)	886 (8.5)	512 (4.9)	62,372	14,402
2003	9,920 (100.0)	992 (10.0)	2,265 (22.8)	3,617 (36.5)	1,706 (17.2)	844 (8.5)	496 (5.0)	58,593	13,929
증감율 (’99/2003)	-19.3	-17.0	-17.3	-22.7	-19.1	-18.8	-10.0	-25.6	-23.3

주 : 제재품은 건축용재, 토목 건설용재, 상자, 포장재, 가구·건구용재, 기타 용재 등을 포함

자료 : 농림수산성, 「제재 기초통계」, 각 년도.

제재소 규모별로 보면 동력출력 기준으로 75KW 미만인 공장당 연간 제재

능력이 1천 m^3 이하의 공장이 전체 제재공장의 약 3분의 2를 넘는 69.3%를 점하고 있어 제재공장이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제재공장은 원목상품이 작고 가공코스트도 높기 때문에 규모가 큰 제재공장에 비해 품질, 성능의 명확한 제재품의 공급에 빠질 수 없는 건조시설 등의 정비가 진행되지 못하여 수요자 요구로의 대응은 불충분한 상황이다.

반면 300KW 이상의 대규모 공장 당 연간 제재 능력이 1만 m^3 이상인 공장수(2003년)는 496개로 1999년 대비 10% 감소하였으나 전체에 대한 비중은 5%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국산재 용도 중에서 70%가 제재품이며 앞으로 일본은 국산재의 수요량을 확보해가기 위해서는 제재품 생산에 대한 저 코스트화, 상품의 확보, 품질·성능의 명확화를 위해 제재공장의 규모 확대와 이들 대규모 공장으로서의 안정적인 원목 공급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2. 합판산업

합판은 기초 건축자재로 폭넓게 사용되는데 주택과 소규모 상업용 건축용 부자재로도 널리 사용된다. 70년대 이후 주요 생산 공장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원목 생산지로 대거 이전함에 따라 일본내 생산은 급감하였으며 현재로는 해외생산 공장과 연계하여 방열, 방염처리 등 고급제품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에 임하고 있다.

일본의 합판산업은 공장수와 종업원 수 모두 감소하고 있다. 공장 수는 2003년 292개로 1999년 대비 22.8% 감소하였으며 종업원 수도 25.9% 감소한 13,328명으로 나타났다. 합판공장의 대부분(70%)인 204개가 특수합판을 생산하고 있으며 보통합판과 특수합판을 모두 생산하는 업체는 1999년 대비 30%가 감소한 14개이다. 보통합판 생산량은 1999년 3,261천 m^3 에서 2003년 3,024천 m^3 로 7.3% 감소하였으나 두께 12mm 이상의 합판 생산량은 2,259천 m^3 에서 2,331천 m^3 로 3.2%증가하였다. 특수합판 생산량은 1,579천 m^3 에서 1,141천 m^3 로 27.7%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합판산업은 1980년대까지 목재산업의 주종산업으로서 1985년

에는 전국에 88개 업체에 3만여 명의 종업원이 있었으나, IMF 등을 거치면서 2003년 9월 말 현재 총 9개 업체로 종업원 수는 2,200명이며, 연간 생산능력은 959천³m에 달한다. 평균 생산량은 940천³m으로 가동률은 평균 98%에 달한다. 생산제품의 90%가 뉴질랜드산 라디에타 파인과 남양재를 원료로 한 침엽수와 활엽수를 혼합한 거꾸집용 합판이 대부분이다. 일본의 업체당 평균 생산량은 10천³m(보통합판 생산기준)으로 소규모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업체당 평균 생산량이 104천³m에 달하여 상당히 규모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일본의 합판산업 현황

단위 : 개, 명, %, 천³m

연차	공장수					종업 원수	생산량		
	계	단판	보통 합판	보통합판과 특수합판	특수 합판		보통합판		특수 합판
							합 계	12mm이상	
1999	378 (100.0)	36 (9.7)	60 (14.6)	20 (5.5)	262 (70.2)	17,991	3,261	2,259	1,579
2000	354 (100.0)	32 (9.0)	56 (15.8)	19 (5.4)	247 (69.8)	16,795	3,218	2,330	1,534
2001	329 (100.0)	32 (9.7)	48 (14.6)	18 (5.5)	231 (70.2)	15,222	2,771	2,032	1,416
2002	306 (100.0)	30 (9.8)	47 (15.4)	14 (4.6)	215 (70.3)	13,942	2,735	2,112	1,240
2003	292 (100.0)	31 (10.6)	43 (14.7)	14 (4.8)	204 (69.9)	13,328	3,024	2,331	1,141
증감율 (’99/2003)	-22.8	-13.9	-28.3	-30.0	-22.1	-25.9	-7.3	3.2	-27.7

주 : 보통합판은 일반적인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 합판, 특수합판은 천연목 화장합판과 특수가공화장 합판으로 구분되며 천연목 화장합판은 보통합판의 표면에 미관을 목적으로 한 천연목의 얇은 단판을 붙여 주택내장용과 가구용으로 이용되는 합판, 그리고 특수가공화장 합판은 보통합판의 표면에 미관과 내구성을 목적으로 천연목 이외의 것을 붙이거나 木目모양 등을 인쇄 가공한 표면가공합판으로 오버레이 합판, 프린트 합판, 도장합판 등이 있음.

자료 : 농림수산성 통계부, 「합판통계」, 각 년도.

1.2.3. 섬유판

섬유판은 소경재나 제재목 폐재 등을 원료로 이용하여 만든 합판의 대체 품으로서 비중 $0.8\text{g}/\text{cm}^3$ 이상이 경질섬유판(HB화이버보드), $0.35\text{g}/\text{cm}^3$ 이상 $0.8\text{g}/\text{cm}^3$ 이하가 중질섬유판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0.35\text{g}/\text{cm}^3$ 미만이 연질 섬유판(IB, Insulation Board) 등으로 분류된다¹⁾. 연질 섬유판 중에서 아스팔트 등으로 처리한 시징그보드는 밀도 $0.4\text{g}/\text{cm}^3$ 미만이다.

일본의 섬유판 생산은 194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이후 계속 확대되어 1997년 146백만 m^3 으로 증가하였으나 주택건설 부진, 자동차, 전기기기의 수요 부진 등 경기불황으로 총생산량이 2001년 123백만 m^3 에서 2002년 111백만 m^3 로 감소하였다. 가동중인 섬유판 공장(2003.11.1 기준)은 9개가 있으며, 품목별로는 경질섬유판 공장이 6개, 중질섬유판 공장 3개(해외 공장제외), 연질섬유판 공장이 5개(복수 제품 제조공장 수 합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티클보드와 마찬가지로 섬유판 제조업은 폐잔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합판제조업과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섬유판 생산은 주로 중질섬유판(MDF) 위주로 되어 있으며, 2003년 9월말 현재 생산공장 수는 12개 업체, 종업원 수는 700명에 달한다. 연간생산능력은 1,428천 m^3 , 연간생산량은 1,400천 m^3 으로 평균 가동율은 98%이

1) 경질섬유판은 목재섬유에 합성수지를 가하여 열압 제조한 것으로, 강도가 높고, 2차 가공에 의한 굽힘, 구멍내기(천공)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자동차 내장, 건축, 가구, 전기기기에 이용된다. 중질섬유판은(MDF) 건조식에 의해 제조된 것이 주류로서 용도는 표면과 木口面이 平滑하여 가공성이 좋고, 치밀하여 가구목공분야가 중심이며, 전기기기, 건축, 住設기기 등에 사용된다. 연질섬유판(IB)은 제조과정에서 압축하지 않고 성형 후 연속 건조한 것으로 단열성, 吸音性 등이 탁월하다. 연질섬유판은 A급 인슐레이션보드, 시징보드 및 다다미보드로 세분류 되는데, 원료는 100% 목재가 사용된다. 시징보드는 A급 인슐레이션보드에 아스팔트를 침투 도포하여 내수·방습성·내구성을 높인 검정색의 보드이다. 이들 연질섬유판은 건축용재로서 바닥벽 등의 기초재, 천정에 사용되고 있는 외에, 다다미보드는 單體 또는 벚짚, 플라스틱 등을 조합하여 다다미용으로 이용된다.

다. 중질섬유판은 제재 및 합판공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와 소경목을 원료로 활용하는 환경친화적 자원재활용 제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 밖에 고밀도 섬유판(경질섬유판)을 기재로 하여 제조하는 강화마루판은 섬유판 가공 제품 중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으로 우리나라의 강화마루판 제조기술은 세계적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단기소득 임산물

일본의 특용임산물은 우리나라의 단기소득 임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야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품목은 버섯류와 목탄 등이며 밤은 과수로 분류하고 있다. 버섯류는 표고버섯(건, 생),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등이며 목탄류는 백탄, 흑탄, 죽탄, 목초액, 죽초액 등을 포함한다. 밤, 표고버섯, 송이버섯 모두 생산량이 감소 추세로서 밤은 1999년 30,000톤에서 2003년 25,100톤으로 16.3% 감소하였다. 생표고버섯은 1999년 70,511톤에서 2003년 65,384톤, 건표고버섯은 5,582톤에서 4,108톤으로 각각 7.3%와 26.4% 감소하였고, 송이버섯은 147톤에서 80톤으로 4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주요 특용 임산물 생산동향

단위 : 톤,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감율 (‘99/2003)
밤		30,000	26,700	29,000	30,100	25,100	-16.3
표 고 버섯	생표고	70,511	67,224	66,128	64,442	65,384	- 7.3
	건표고	5,582	5,236	4,964	4,449	4,108	-26.4
송 이 버섯		147	181	78	52	80	-45.6

자료 : www.rinya.maff.go.jp

13.1 밤

일본의 밤 품종은 현재 약 100종류 이상이며, 축파, 단택, 은기, 석추 등 4 품종은 2003년도 전체 재배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수확시기는 크게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구분되며, 조생종은 8월말~9월 하순, 중생종은 9월 하순~10월 상순, 만생종은 10월 상순~10월 하순이다.

전국적으로 밤이 생산되나 밤 주산지는 이바라키현(전체생산량의 17%), 구마모토현(13.1%), 에이메현(10.8%) 등이며, 전체 생산량의 40.9%를 생산하고 있다. 전후 농업구조개선 사업 등 정책적인 대규모 밤 생산지 조성, 병해충 면역품종의 보급 등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수입자유화(1961년) 이후 수입량의 증가, 국내 가격하락과 함께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생산량도 감소 추세이다.

생산량은 1999년 30,000톤에서 2003년 25,100톤으로 16.3% 감소하였다. 2000년에 생산량이 26,700톤으로 감소한 이래 매년 생산량은 증가하여 2002년에는 30,100톤을 생산하였다. 2003년도에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5,000톤이나 감소한 이유는 6월 하순이래 저온, 일조량 부족의 영향에 의해 생리적 낙과가 많았고 결과지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수 면적도 고목화에 따른 폐원 및 노동력 부족 등으로 26,900ha에서 25,300ha로 1999년 대비 5.9%, 전년 대비 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ha당 단수는 1999년 1.12톤에서 2003년 0.99톤으로 11.6%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밤은 경상남도와 전라도, 충청도에서 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일 수출의존도가 높다. 주산지인 경상남도과 전라도의 경우 밤나무가 고목화되어 있고, 재배자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한 관리 부실로 생산량은 1997년 12만톤을 기록한 이후로 2000년 93천톤, 2002년 72천톤, 2003년 59천톤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 연이은 태풍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급감한 탓도 있으나 구조적으로 이미 노령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는 실정이다. 2003년도의 ha당 단수도 일본과 비슷한 0.99톤을 보이고 있다.

<표 2-5> 일본의 밤 생산동향

단위 : 톤, ha,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감율 (‘99/2003)
국내 생산량	30,000	26,700	29,000	30,100	25,100	-16.3
결과수 면적	26,900	26,400	25,900	25,600	25,300	-5.9
ha당 단수	1.12	1.01	1.12	1.18	0.99	-11.6

자료 : www.maff.go.jp

1.3.2.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1960~70년대 고도성장에 따른 소비 확대로 생산이 증가했으나 1987년 이후 생산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낮은 가격, 중국산 수입 급증 등으로 인해 감소 추세이다. 표고버섯의 원목재배는 1943년도에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물참나무 등 원목에 배양한 균사를 접종하여 재배한다. 표고버섯의 발생이 일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선도유지가 어려워 생표고보다는 건표고로 가공하여 유통하고 있다.

균상재배는 1980년 후반에 도입된 기술로 톱밥 등을 이용한 배지에 종균을 접종하여 재배하는 방법으로 발생기간이 원목재배보다 짧고(약 100일 정도), 인공적으로 재배관리하기 때문에 자연조건이나 기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연중생산이 가능하여 최근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인공적인 관리에 따라 계획적인 출하가 가능함으로 생표고로 많이 출하된다.

표고버섯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발생시기, 색, 형상에 의해 구분되는데 주로 하나동고, 동고, 향고, 향신, 바레하, 슬라이스 등 6가지로 구분된다. 주산지는 군마(8.5%), 홋카이도(6.4%), 이와테(6.2%), 토쿠시마(6.1%), 이바라키(6.1%) 등이다. 건표고는 1984년 약 167천톤이 생산된 이후 감소 추세에 있고, 생표고는 원목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대체 재배방식인 균상재배가 늘어나면서 생산량도 급증하여 국내 생표고 전체 생산량의 51.6%를 점유하고 있다.

농림수산성(2003)에 따르면 표고버섯 재배자 수는 1999년 대비 19%가 감

소한 51,175명으로 표고자목 본수가 600본 미만 24,808명, 600~3,000본 10,978명, 3,000~10,000본 8,871명, 10,000~30,000본 5,134명, 30,000본 이상이 1,3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00본 이상 중·대규모의 재배자 수는 12.7%로 감소율도 가장 낮은 반면 600본 이하의 소규모 재배자 수는 48.5%로 가장 많고 재배자 감소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상재배에서는 규모확대가, 원목재배는 원자재확보의 문제, 가격상승 등으로 재배자 수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표고산업은 주로 원목에 의존하고 있으며, 균상재배는 극히 적다. 1990년대 초까지는 일본과 홍콩으로 건표고와 소량의 생표고를 수출하였으나 최근 국내 수요의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대일 건표고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었고 원목 구입비용의 상승,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 생산여건이 악화되면서 균상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표고 생산량은 1993년 3.7천톤에서 2002년 22천톤으로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다. 건표고 생산량은 연간 약 15천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3.3. 송이버섯

송이버섯의 주요 산지는 히로시마(52%), 나가노(15.5%), 이와테(6.1%) 오카야마(5.5%) 등으로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이 이들 4개 지역에서 이루어지나 전반적으로 생산량은 계속 감소 추세이다. 2001년 이후 발생기의 기상악화 등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생산량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즉, 송이는 원래 군사가 소나무뿌리에 공생하여 번식하는데 벌채, 지구온난화, 병충해 등으로 예전에 비해 소나무의 50% 이상이 고사하였다. 또한 최근 땃감용 낙엽채취가 거의 없어 낙엽층이 두껍게 형성되면서 통기성이 크게 감소됨으로서 군사가 제대로 번식할 수 없기 때문에 송이버섯 생육 환경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산지별 송이버섯의 생산시기를 보면 나가노, 이와테, 야마가타, 후쿠지마 등은 9~10월, 히로시마, 오카야마, 교토 등은 10~11월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일본에서는 송이버섯을 자연에서 채취되는 무공해의 진귀한 상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채취과정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관리가 철저하다. 공통적인 규격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갓의 형태나 중량, 길이, 기형품 등에 따라 구분되며, 1등급(갓이 완전한 상태), 2등급(갓이 반개한 상태), 3등급(갓이 찢어진 상태), 규격외품(벌레먹은 것, 파손품, 기형품 등)으로 유통된다²⁾.

우리나라의 송이버섯 생산은 1999년 559톤에서 2001년 250톤, 2002년 373톤 등으로 기복이 심하며, 전반적으로 생산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이다. 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에서 생산된다. 출하량의 70~80%는 산림조합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나머지 20~30%는 무역상, 시장인, 소비자와 직거래되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량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나 최근에는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6> 일본의 주요산지별 송이버섯 생산시기

구 분	히로시마	나가노	이와테	오카야마	교 토	야마가타	후쿠지마	기타지역
9~10월		○	○			○	○	-
10~11월	○			○	○			-

자료 : www.rinya.maff.go.jp

- 2) 1등급은 상(갓이 전혀 찢어지지 않고 완전한 형태로 중량이 100g이상인 것), 중(갓이 전혀 찢어지지 않고 완전한 형태로 중량이 50g~100g이하인 것), 하(갓이 전혀 찢어지지 않고 완전한 형태로 중량이 50g이하인 것)로 구분되며, 2등급은 한군데라도 송이의 갓부분이 줄기와 떨어져 있는 상품, 3등급은 송이의 갓과 줄기가 붙어 있지 않지만 갓의 가장자리가 오므라들어 있는 것, 또는 갓이 완전히 찢어져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2. 일본의 임산물 수급구조

2.1. 목재류

일본의 목재류 수요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목재 수요량은 1990년 111백만[㎥]에서 2000년 99백만[㎥], 2003년 88백만[㎥]로 감소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일본 경기침체로 인한 산업용 목재수요인 제재목, 합판, 펄프·칩, 기타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즉 제재목용 수요는 1990년 54백만[㎥]에서 2000년 41백만[㎥], 2003년 35백만[㎥]으로, 합판용 수요는 15백만[㎥]에서 14백만[㎥], 13백만[㎥]으로, 펄프·칩용 수요는 41백만[㎥]에서 42백만[㎥], 37백만[㎥]으로 감소하였다. 기타 산업용 목재수요는 1990년 1백만[㎥]에서 2.3백만[㎥], 2.6백만[㎥]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 2-7> 목재(용재) 수급구조

단위 : 천[㎥], %

연도	수요					공급		자급율
	합계	제재용	합판용	펄프·칩용	기타	국내	해외	
1990	111,160	53,887	14,546	41,344	1,383	29,367	81,793	26.4
1995	111,921	50,384	14,314	44,922	2,301	22,915	89,006	20.5
2000	99,260	40,946	13,825	42,186	2,303	18,019	81,241	18.2
2001	91,245	37,087	13,074	38,706	2,377	16,757	74,488	18.4
2002	88,125	34,085	13,226	37,607	2,436	16,075	72,050	18.2
2003	87,838	35,441	12,810	36,964	2,623	16,620	71,218	18.9
증감율 (’90/2003)	-21.0	-34.2	-12.0	-11.6	89.7	-43.4	-13.0	18.9

주 : 수급자료는 원목환산재적이며, 신탄재 및 표고자목용 원목은 제외하였음

자료 : 1990~2002년은 임야청 「목재 수급표」, 2003년은 2004.3월에 책정된 수치임.

1990년도 일본의 목재 자급율은 26.4%에 달했으나 인건비 상승과 목재가

격 정체 등에 따라 벌채량이 급감하면서 2000년 국내재 공급량은 18백만 m^3 에 불과하여 자급율은 18.2%로 하락하였고, 2003년 국내재 공급량은 17백만 m^3 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목재수요량이 감소하면서 자급율은 18.9%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재 공급은 국내산 공급이 감소하면서 1990년 82백만 m^3 에서 1995년에 다소 증가했다가 2000년에는 1990년 수준을 보였다. 목재 수입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2003년에는 71백만 m^3 으로 감소하였고 전체 목재류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1%에 달하고 있다.

수입 목재의 형태는 과거 원목 위주에서 근래에는 가공품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원목수입량은 1990년에 34백만 m^3 에서 2003년도에 15백만 m^3 으로 감소한 반면, 제재목은 13백만 m^3 에서 14백만 m^3 , 합단판은 4.7백만 m^3 에서 7.9백만 m^3 으로 증가하였다. 칩은 1990년에 20백만 m^3 에서 2003년에 24백만 m^3 으로 증가한 반면, 펄프는 9.7백만 m^3 에서 8.0백만 m^3 으로 감소하였다.

수입목재를 제품별로 보면 원목의 경우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북미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남양재와 북양재 및 뉴질랜드재 등이 수입되며, 제재목의 경우 북미재, 구주(유럽)재, 북양재 등이 수입되고 있다. 합판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되며, 칩은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 미국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8> 해외 수입재(용재) 공급구조

단위 : 천 m^3 , %

연 도	합 계	원 목	제 재	합단판	칩	펄 프	기 타
1990	81,793	33,861	12,598	4,707	20,252	9,721	654
1995	89,006	25,865	15,982	6,993	26,411	11,990	1,765
2000	81,241	18,018	15,913	8,424	26,661	10,320	1,904
2001	74,488	15,942	14,340	8,423	25,104	8,659	2,019
2002	72,050	14,865	13,694	8,502	24,791	8,101	2,097
2003	71,218	14,579	14,104	7,897	24,322	8,022	2,294
증감율 (’90/2003)	-23.0	-43.1	12.0	67.8	20.1	-17.5	250.8

주 : 수급자료는 원목환산재적이며, 신탄재 및 표고자목용 원목은 제외하였음

자료 : 1990~2002년은 임야청 「목재 수급표」, 2003년은 2004.3월에 책정된 수치임.

2.2. 단기소득 임산물

2.2.1. 쌀

일본의 쌀 수요량은 경기 침체에 따라 1999년 71천 톤에서 2003년 53천 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쌀 수입량의 대부분은 한국산과 중국산으로 한국에서는 주로 깐쌀을 중국에서는 군밤과 쌀 통조림 등을 수입하고 있다.

수입 쌀의 대부분은 생쌀이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산 깐쌀은 과거 ‘일시보존처리 쌀’으로 분류되었으나 2000년부터 대부분이 ‘생쌀’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은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나 수입단가는 한국산보다 낮으며 대부분이 군밤용으로 소비된다. 한국산은 수입단가가 높은 반면 맛이 좋아 가공용으로 소비가 된다. 2003년을 기준으로 수입단가를 보면 kg당 생쌀 수입 쌀 평균가격은 474엔이나 한국산은 1,197엔, 중국산은 338엔으로 한국산은 수입 쌀 평균가격보다 2.5배, 중국산보다 3.5배가 높다.

<표 2-9> 일본의 쌀 수급 동향

단위 : 톤,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감율 (’99/2003)
국내 생산량		30,000 (42.1)	26,700 (40.0)	29,000 (45.7)	30,100 (48.6)	25,100 (47.2)	-16.3
수입량	생 쌀	34,726	37,384	31,695	29,073	25,233	-27.3
	일시저장쌀	5,706	1,190	1,423	1,543	1,399	-75.5
	쌀 통조림	824	1,496	1,318	1,176	1,450	76.0
수입 계		41,310 (57.9)	40,070 (60.0)	34,436 (54.3)	31,792 (51.4)	28,082 (52.8)	-32.0
총 수급량		71,310 (100.0)	66,770 (100.0)	63,436 (100.0)	61,892 (100.0)	53,182 (100.0)	-25.3

주 : ()속은 비율(%)임.

자료 : 일본 재무성, 「일본무역통계」, 2003.

www.rinya.maff.go.jp.

일시보존처리 밤은 kg당 평균수입 가격이 1,045엔이나 한국산은 1,409엔, 중국산은 572엔으로 한국산은 수입 밤 평균가격보다 1.3배 중국산보다 2.5배가 높다. 한국산 생밤(깎밤 포함)과 일시보존처리 밤 모두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뒤지나 질적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2.2.2.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버섯류 가운데 일본 국내 생산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 건표고와 생표고로 구분되는데 건표고는 물에 불린 후 조림용, 버섯밥, 국물용 등으로 사용되며, 생표고는 구이용, 볶음용, 튀김 및 냄비 요리 등의 용도로 소비된다. 표고버섯의 수출은 거의 없고 건표고 공급량의 절반 이상이 수입품이나 생표고 공급 물량은 국내산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건표고의 국내 소비는 간편한 식생활을 선호하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감소 추세이다.

생표고는 구입 즉시 요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매년 10만 톤 이상이 소비되고 있다. 2002년에는 일본 국내 생산량 감소와 중국 사스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하였다. 생표고는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건표고는 한국산도 일부 수입되고 있으나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³⁾. 한국산 생표고는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고 건표고도 중국산에 밀려 수입이 감소하였다. 반면 2002년 사스의 영향으로 중국산 건표고의 안전성이 문제되면서 한국산 수입이 다소 증가하였다.

3) 표고버섯의 일본수입은 생표고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2002년도 28,136톤, 2003년도 24,896톤을 수입했으며, 한국으로부터는 200톤, 150톤을 수입하였다. 건표고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2002년도 8,478톤, 2003년도 8,874톤, 한국으로부터는 154톤, 249톤을 수입하였다(자료 :www.kita.net).

<표 2-10> 일본의 표고버섯 수급동향

단위 : 톤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감율 (1999/2003)
건표고	공 급	국내생산	5,582	5,236	4,965	4,449	4,108	-26.4
		수 입	9,146	9,144	9,253	8,633	9,137	- 0.1
	수 요	국내소비	14,572	14,265	14,067	12,965	13,166	- 9.7
		수 출	156	115	151	118	79	-49.4
	총수급량		14,728	14,380	14,218	13,082	13,245	-10.1
생표고	공 급	국내생산	70,511	67,224	66,128	64,442	65,384	- 7.3
		수 입	31,628	42,057	36,301	28,148	24,896	-21.3
	수 요	국내소비	102,139	109,281	102,429	92,590	90,277	-11.6
		수 출	-	-	-	-	-	-
	총수급량		102,139	109,281	102,429	92,590	90,277	-11.6

자료 : 농림수산물 통계부, 「농림수산물통계」, 2003. www.rinya.maff.go.jp

2.2.3. 송이버섯

일본의 송이버섯 소비는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구분되며 고급업소에서는 일본산과 한국산이 주로 소비된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송이버섯은 주로 적은 양으로 향을 내는데 많이 사용된다. 사용용도를 보면 밥을 지을 때 얇게 썰은 송이버섯을 넣어 짓는 송이밥, 구이, 송이수란, 송이국, 전골, 튀김, 구이 등 다양하다.

오사카 세관이 조사한 지역별 수입 및 소비현황(1999)을 보면 일본 전체 송이버섯 수입량 중 近畿圏(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와카야마현, 나라현, 시가현)이 가장 많은 6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송이버섯의 소비가 많은 이유는 수도권에서는 송이의 값이 피지 않은 고급품을 선호하지만, 近畿圏은 구이 용, 우동 등 서민적인 요리의 재료로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값이 피어 있는 송이도 지장이 없어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송이버섯은 일본 국내의 소비가 많기 때문에 수출은 전혀 없고 국내 소비량의 95%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생산량(2002년 373톤)이 모두 일본으로 들어와도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시장규모가 크다. 송이버섯은 과거 일본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 변동이 심해 품질이 비슷한 한국산이 송이버섯 시장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1993년 이후 저가의 중국산과 북한산 수입이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의 송이버섯이 수입시장 점유율의 70%에 이르고 있다.

<표 2-11> 일본의 송이버섯 수급동향

단위 : 톤,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감율 (’99/2003)
공 급	국내생산	147	181	79	52	80	-45.6
	수 입	2,674	3,452	2,395	2,109	2,221	-16.9
수 요	국내소비	2,821	3,633	2,474	2,109	2,301	-18.4
	수 출	-	-	-	-	-	-
총수급량		2,821	3,633	2,474	2,109	2,301	-18.4

자료 : 일본 재무성, 「일본 무역통계」, 2003.

www.rinya.maff.go.jp

수입대상국별 수입 시기는 중국산은 7~8월, 북한산은 9월, 한국산과 캐나다산은 10월, 그리고 11~12월은 미국산이 수입되어 기간별 수급 균형을 이루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수입 물량은 중국, 북한 등이 많지만 수입단가는 한국산이 단연 높았다. 평균 수입가격(kg당)은 5,031엔이지만 한국산은 14,116엔, 중국산 4,984엔, 캐나다산 3,654엔이었다.

<표 2-12> 일본의 송이버섯 수입동향

단위: 톤

수입국	1999	2000	2001	2002
중 국	1,292(48.3)	1,308(37.9)	1,531(63.9)	997(47.3)
북 한	307(11.5)	1,309(37.9)	211(8.8)	502(23.8)
한 국	516(19.3)	387(11.2)	181(7.6)	229(10.9)
캐나다	376(14.1)	272(7.9)	328(13.7)	208(9.9)
미 국	94(3.5)	87(0.2)	80(3.3)	73(3.4)
기 타	89(3.2)	89(2.5)	64(2.7)	100(4.7)
합 계	2,674(100)	3,452(100)	2,395(100)	2,109(100)

자료 : 일본 재무성, 「일본 무역통계」, 2003.

제 3 장

한 · 일 임산물 교역구조와 특징

1. 한 · 일 임산물 교역구조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기후와 재배품목도 유사한 편으로 일찍부터 우리나라 임산물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었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임산물 수출대상국 1위(임산물 수출액의 53.9%), 수입대상국 22위(임산물 수입액의 0.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시장은 임산물 수입이 장기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일본의 목재류(HS-44류) 수입액은 1988년 약 1조 1,800억 엔에서 2003년 1조 1,500억 엔으로 15년간 불과 2.4% 감소할 정도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일 목재류 수출액은 1988년 101억 엔에서 2003년 27억 엔으로 급속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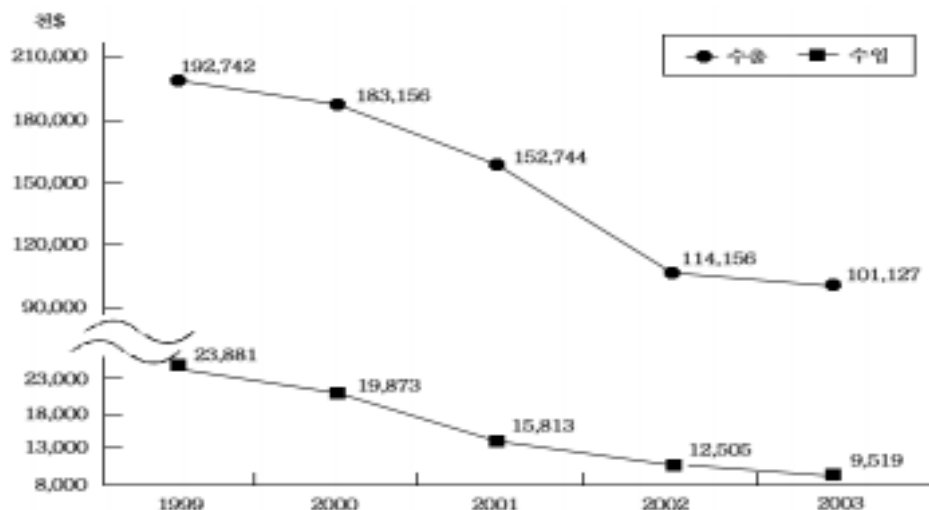
<그림 3-1>에서 보듯이 최근 5년간 한국의 대일 임산물 교역은 지속적으로 수출 초과를 유지하고 있으나 1999년 이후 수출입 모두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출이 더 빠르게 감소하여 무역흑자 폭도 매년 축소되고 있다. 대일 임산물 수출액은 1999년 1억 93백만 달러에서 2001년 1억 53백만 달러,

2003년에 1억 1백만 달러로 47.7%가 감소하였다. 수입은 같은 기간에 24백만 달러에서 16백만 달러, 9.5백만 달러로 40.6%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대일 무역수지 흑자 폭은 1999년 1억 69백만 달러에서 2001년 1억 37백만 달러, 2003년 92백만 달러로 45.6% 감소하였다. 한국의 일본 목재류 수입시장 점유율도 1999년 0.9%에서 2003년 0.2%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대일 임산물 수출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의 임산물 수출에서 대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일 임산물 수출 비중은 2003년 53.9%로 1999년의 64.7%보다 낮아졌지만 아직도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밤, 송이버섯, 표고버섯 등 단기 소득 임산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섬유판, 제재목, 합판, 목재케이스 등 목재류도 수출되고 있다.

대일 임산물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밤이다. 대일 밤 수출액은 1999년 80백만 달러를 넘었으나 2003년에는 44백만 달러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그림 3-1> 한·일 임산물 수출입 현황



밤 수출이 감소한 원인은 2002년과 2003년 연속적인 태풍의 영향으로 밤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탓도 있지만 일본시장에서 중국을 비롯한 외국산 밤과의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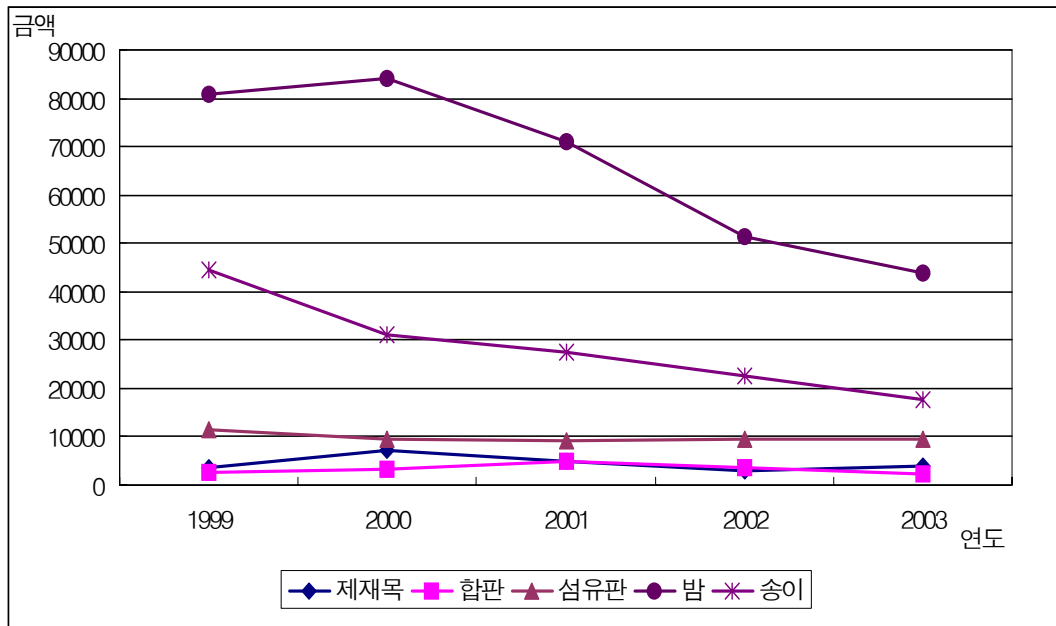
밤은 주로 깎밤 형태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인력의 부족과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깎밤으로 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대신에 중국으로 생밤을 수출하여 그곳에서 깎밤으로 가공한 다음 일본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출 물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수출한 깎밤만 한국산으로 취급하며, 중국으로 수출하여 가공한 다음 일본으로 수출한 깎밤에 대해서는 중국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같이 전적으로 국내에서 깎밤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던 형태가 깎밤의 일부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수출하고 생밤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그곳에서 깎밤으로 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대일본 밤 수출은 물량뿐만 아니라 수출액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송이버섯 대일 수출액은 같은 기간에 약 45백만 달러에서 18백만 달러로 밤 수출액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표고버섯 수출액은 1999년 4백만 달러에서 2001년 130만 달러로 감소하였지만 2003년에는 다시 4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표고버섯의 수출액이 증가한 것은 사스(SAS) 발생과 함께 중국산 표고버섯에 대한 식품안전성이 문제되면서 일본에서 한국산 표고버섯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이버섯은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산 송이에 비해 맛이나 향기가 우수하지만 한국내 생산물량이 감소한 탓에 대일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한국내 송이버섯 수요 증가로 고급품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고 국내 가격도 상승하면서 중국산 및 북한산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더욱 낮아진 것도 대일 수출 감소의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2> 주요 임산물 품목별 대일 수출 추이

단위 : 천 달러



섬유판 수출은 1999년 11백만 달러에서 2003년 9.5 백만 달러로 비교적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재목은 1999년 3백만 달러에서 2000년 7백만 달러까지 증가한 뒤 2003년 4백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여 변동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합판 수출액도 1999년 약 3백만 달러에서 2001년 5백만 달러까지 증가한 뒤 2003년 2백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 밖에 목재케이스와 상자, 문틀과 건축목공품, 그리고 파티클보드 등 목재류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1> 임산물 대일 수출 동향

단위 : 천 달러

품 목	1999	2000	2001	2002	2003
밤	80,721	83,899	71,123	51,258	43,762
송이	44,605	30,993	27,528	22,564	17,739
섬유판	11,447	9,423	9,213	9,488	9,470
제재목	3,498	7,152	5,052	3,046	4,040
표고	4,246	2,279	1,293	2,261	4,014
합판	2,591	3,369	5,024	3,706	2,415
목재케이스	1,573	4,415	4,020	2,099	2,115
문틀, 건축목공품	1,970	1,859	1,169	1,162	824
파티클보드	699	1,711	1,047	1,110	1,724
목탄	190	147	291	413	308
수피류	-	655	584	421	334
대일 수출액 계	192,742	183,156	152,744	114,156	101,127
임산물 총수출액	297,714	281,628	230,612	180,107	187,578
대일 수출비중	64.7%	65.0%	66.2%	63.4%	53.9%

자료 : 산림청, 「2003년도 임산물 수출입 동계」, 2004.

대일 임산물 수입은 임산물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일 임산물 수입은 1999년 약 24백만 달러에서 2003년 9.5백만 달러로 감소하면서 전체 임산물 수입에서의 비중도 1.6%에서 0.4%로 급락하였다.

품목별 수입액도 대부분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합판 수입은 1999년 13백만 달러에서 2003년 3백만 달러로 70% 이상 크게 줄었으며 단판 수입은 같은 기간에 약 2백만 달러에서 1.5백만 달러로 25% 감소하였다. 목재케이스는 1.5백만 달러에서 0.7백만 달러로 줄었고 로진도 30만 달러에서 절반 이하인 14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 밖에 원목 등이 소량 수입되고 있으며 건축목공품은 1999년 1백만 달러 수준에서 최근 10만 달러 이내로 급속하게 감소하였다. 최근 밤 수입은 소량이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3-2> 임산물 대일 수입 동향

단위 : 천 달러

품 목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관	12,596	9,898	5,436	4,725	3,226
단 관	1,910	2,633	1,351	1,487	1,522
목재케이스	1,461	2,336	1,958	65	685
원 목	562	470	243	517	181
로 진	286	146	105	74	141
밤	1	4	127	276	120
건축목공품	956	842	37	298	54
죽제품	21	13	7	12	6
수피류	32	26	-	39	-
대일 수입액 계	23,881	19,873	15,813	12,505	9,519
임산물 총수입액	1,521, 347	1,744,144	1,799,232	2,157,301	2,173,080
대일 수입비중	1.6%	1.1%	0.9%	0.6%	0.4%

자료 : 산림청, 「2003년도 임산물 수출입 동계」, 2004.

2. 한·일간 임산물 교역의 특징

2.1. 한·일 목재류 교역의 특징

일본은 산림면적이 전체 국토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지만 풍부한 산림자원의 부존으로 인한 목재류 생산이 많아서 1950년대 후반까지 산업용 목재 수요는 대부분 자급이 가능하였다. 1960년대 초반까지도 국내 산업용 목재 수요의 4분의 3은 국내 생산에 의존하였다. 이후 산업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목재류 자급률은 급격하게 하락하여 1980년대 35%, 1990년대 25%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도 목재류 자급률은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주요 산림자원 보유 국가

에 자국 기업이 합작 투자 또는 기술제휴 등을 통해 진출하여 산업용 목재류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목재류 자급률이 6%에 불과하며 해외조림과 임업개발 투자도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일본 목재류 수입시장 점유율은 약 0.2%에 불과한 낮은 수준으로 대부분 중간재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산림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실정으로 인해 원자재 수출이 어려운 대신 특수 용도로 쓰이는 가공제품들을 다품종, 소량 주문 형태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의 목재류 대일 교역은 섬유판과 제재목은 수출하고 단판은 수입하는 상호보완적(complementary) 관계로 볼 수 있다. 또한 합판과 목재케이스는 수출과 수입이 함께 이루어지는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 품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일 목재류 수출품목은 일본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품목이라기보다 특정 용도에서만 사용되는 규격이나 품질을 갖춘 품목으로 가격도 다른 나라 목재류보다 높은 편이다.

대일 수출용 한국산 섬유판은 대부분 cm^3 당 0.8g를 초과하는 고밀도 섬유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제재목은 대부분 가문비나무와 미송 등 침엽수 제재목이 수출되고 있다. 대일 수입품목도 합판은 기타 합판, 단판은 기타 단판 위주로 수입되고 있어 양국의 목재류 교역은 단기간내에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일본의 목재류 수입 동향

단위 : 천 m^3 , 백만엔

품목	2000		2001		2002		2003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4410(P/B)	384	13,390	387	14,309	405	14,493	415	15,196
4411(섬유판)	484	15,994	570	20,202	510	18,414	496	19,310
-44112(MDF)	(454)	(14,559)	(525)	(17,962)	(471)	(16,619)	(456)	(17,148)
4412(합판)	4,927	195,840	4,914	197,565	4,988	206,552	4,576	186,590

자료 : 일본합판공업조합연합회, 「합판관련통계월보」, 2004. 1.

일본은 합판과 보드 등 주요 목재류 제품 수입의 약 60~80%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단판 등 가공된 중간재는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2001~2003년간 한국산 목재류 수입관세율은 징수액 기준 2.7~2.9%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FTA가 체결되어도 한국산 목재류 중간재 또는 완제품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합판 가운데 6~12mm 규격과 일부 P/B, MDF와 특수 섬유판 등 특수 용도의 목재류 가공품목은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틈새시장 개척 차원에서 수출 증대 및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일본의 한국산 P/B 수입가격은 68.9 달러/m²로 평균 수입가격 36.6 달러/m²에 비해 88%나 높았다. 섬유판 가격도 평균 수입가격 38.9 달러보다 52.7% 비싼 59.4 달러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합판과 중질섬유판 등 한국산 목재류 가공제품의 가격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가격보다 대체로 높았다. 그러나 자가조립용 제품(DIY)이나 사전절단(Precut) 형태의 가구 및 목조주택용 제품 등은 오히려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가능성도 있다.

<표 3-4> 일본의 목재류 수입가격 비교

단위 : 천엔/m³

품목	2000		2001		2002		2003	
	평균	한국산	평균	한국산	평균	한국산	평균	한국산
4410(P/B)	34.8	-	36.9	50.2	35.8	63.6	36.6	68.9
4411(섬유판)*	33.0	-	35.4	56.5	36.1	59.3	38.9	59.4
-44112(MDF)*	32.1	-	34.2	52.8	35.3	58.3	37.6	60.4
4412(합판)	39.8	46.1	40.2	50.9	41.4	53.1	40.8	55.4

* 한국산 가격은 톤당 가격임

자료 : 일본합판공업조합연합회, 「합판관련통계월보」, 2004. 1.

일본 마루베니건설(주), 내부자료, 2004. 4.

2.2. 한·일 단기소득 임산물 교역의 특징

대일 임산물 수출은 밤, 송이, 표고버섯 등 단기소득 임산물의 비중이 커서 임산물 전체 수출액과 무역수지 규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일간 단기소득 임산물 교역은 밤, 송이, 표고 등을 수출하고 로진 등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임산물 단일 품목으로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밤이며 송이버섯과 표고버섯도 주요 수출품이다. 밤은 간밤 형태로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액은 1999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국내 생산량 감소와 수출용 밤의 품질 저하, 간밤 가공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국으로의 생밤 수출 증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송이버섯 수출도 크게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 중국산과 북한산, 그리고 미국산과 캐나다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 송이버섯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품질경쟁력이 있어 물량만 확보되면 수출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수입업체들도 한국산 밤과 송이버섯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보다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일본 소비자들의 한국산 밤과 송이버섯을 선호하는 소비형태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밤과 송이버섯 수출은 국내 생산 여건의 안정화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표고버섯은 주로 건표고 형태로 수출되고 있으며 연도별 수출액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고는 밤과 송이와는 달리 중국산에 비해 품질경쟁력이 높지 않아 생산비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하지 않는 한 수출 증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일본으로 수출되는 단기소득 임산물 가운데 대나무 제품은 비교적 꾸준히 유지되는 편이지만 수피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감 수출은 2000년 이후 중단되었으며 기타 산림수 종자와 올레오레진, 그리고 초피 등이 소액 수출되고 있다.

이러한 품목들을 포함하는 한국산 단기소득 임산물 대일 수출의 특징으로

는 먼저 수출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특정 품목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큰 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2003년 밤이 대일 임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6%, 송이버섯의 비중은 18.0%, 표고버섯은 4.3%로 이들 세 품목이 석재류를 제외한 대일 임산물 수출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일 임산물 수출의 또 다른 특징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외국산 임산물과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보한 품목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밤과 송이버섯처럼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차별화된 품목은 있지만 그 밖의 다른 품목들은 품질과 가격 모두 경쟁력이 약하고 특정 용도나 기호에 필요한 규격 또는 조건을 갖춘 품목만 수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시장 점유율도 상대적으로 낮고 수출 증대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기호의 변화나 대체품목이 출현할 경우 대일 수출이 감소 또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산 단기소득 임산물의 대일 수출은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이나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가격 인하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토질과 지형, 기후와 주변 환경적 요인 등 한국 고유의 토착적 천연자원에 의해 생산되는 임산물이 원형 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가공되어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가공도가 높을수록 부가가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임산물 수출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자본 또는 기술을 투입하여 가공도를 높이는 것이 수출액 증대 못지 않게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기소득 임산물의 대일 수출은 연도별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내 수요가 비교적 안정된 일본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가격은 물론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산구조가 자연조건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태풍이나 홍수 등 기상재해나 노동력 수급 불안정과 같은 외부적 충격에 취약하여 대일 수출량도 기복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일 임산물 수출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한·일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이 그만큼 하락한다 해도 그로 인해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품목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부분의 임산물에 대한 일본의 실행관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아 수출 증가보다 오히려 수입 증가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임산물 관세구조를 면밀히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제 4 장

한 · 일 임산물 관세체계 비교

1. 한국의 임산물 관세구조

1.1 단기소득 임산물의 품목분류와 관세체계

한국의 임산물 가운데 단기소득 임산물의 품목 범위는 HS 품목 분류에 따르면 1류와 5~8류, 11~14류, 그리고 20~23류까지의 농산물은 물론 목재류에서 파생된 38류와 45~46류, 그리고 48류까지 4자리 기준으로 36개를 포함한다. 이들 품목을 6자리 기준으로 분류하면 61개, 10자리 기준으로는 모두 126개로 세분된다. 4자리 기준으로 같은 번호를 갖는 품목이 10자리로 세분된 품목 수는 분재와 기타 나무(21개), 견과류(14개), 수피류(11개), 식물성 재료(7개), 대나무제품(6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피와 생칠, 충전용 식물성 재료, 조제저장 죽순, 조제저장 밤과 도토리분 및 오가피주, 로진과 목초액, 코르크 반제품은 전혀 세분되지 않아 품목 수도 한 개뿐이었다. 또한 맹금 및 앵무류, 새의 깃털, 칩뿌리, 신선 감과 대추, 건조 견과류, 사고뿌리, 울

레오레진, 설탕조제 죽순, 도토리 열매와 가공 코르크, 응집코르크 제품 등은 세분화 정도가 낮아 10자리로 세분된 품목 수가 두 개에 불과하였다.

한국의 단기소득 임산물 품목 분류는 가공도가 낮거나 품종이 다양하지 못한 품목의 세분화 정도가 낮은 반면 가공도가 높거나 품종이 다양한 품목은 세분화 정도가 높은 품목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가 수입 임산물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생산 품목을 보호할 수 있는 관세를 용이하게 부과하기 위한 사전 조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단기소득 임산물 품목별 양허관세율 범위는 최저 0%에서 최고 611.5%까지로 관세격차(Tariff Dispersion)가 61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자리 기준 36개 품목의 단순평균 세율도 75.8%로 높게 나타났다. 양허관세의 최고세율이 특히 높은 품목은 신선 감, 대추(611.5%)와 건조 견과류(611.5%) 및 견과류(566.8%)등이며 버섯류 일체와 조제저장 밤 및 도토리 열매(90%) 등 대부분 농산물에 속하는 품목들이었다. 반면에 무관세 품목은 종자류와 벽지류에 속하는 10자리 기준 6개 품목이며 무관세율은 4.8%로 낮았다. 또한 로진과 목초액, 새의 깃털과 충전용 식물성 재료, 수피류 등도 6.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는 농산물 등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가공용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도토리 열매(HS-2308)의 최고 양허세율이 90%인 반면 도토리분(HS-2106)의 세율은 54%로 낮아지는 것과 같이 가공도가 높은 품목의 세율이 가공도가 낮은 품목에 대한 세율보다 더 낮은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소득 임산물의 관세 구조는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의 형태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산물에 속하는 품목을 제외한 한국의 단기소득 임산물은 4자리 세번이 동일한 품목에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가 4자리 기준으로 13개 품목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9자리 세번이 다른 품목에 상이한 세율을 부과하는 품목도 모두 13개에 불과하여 단기소득 임산물의 양허관세는 비교적 단순한 관세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4-1> 한국 임산물 관세구조

HS 번호	품명	품목 수 (HS-6)	품목 수 (HS-10)	양허세율* (%)	단순평균 세율(%)	실행세율 (%)	무관세 품목
0106	맹금 및 앵무류	2	2	13.1	13.1	8.0	0
0505	새의 깃털	2	2	6.6	6.6	3.0~5.0	0
0602	나무(분재, 기타)	4	21	13.1	13.1	8.0	0
0604	이끼 및 은행잎	2	3	13.1	13.1	8.0	0
0709	버섯류(신선)	3	5	27.0~90.0	54.9	30.0~50.0	0
0710	버섯류(냉동)	1	3	27.0~90.0	48.0	30.0	0
0711	버섯류(일시저장)	2	4	27.0~90.0	42.8	30.0	0
0712	버섯류(건조)	3	6	27.0~90.0	57.0	30.0~50.0	0
0714	쑥쑤리	1	2	18.0~45.0	31.5	20.0~50.0	0
0802	견과류	8	14	21.0~566.8	136.5	8.0~50.0	0
0810	감, 대추(신선)	1	2	67.5~611.5	339.5	50.0	0
0811	견과류(냉동)	1	3	72.0	72.0	30.0	0
0813	견과류(건조)	1	2	90.0~611.5	350.7	50.0	0
1106	사과쑤리	1	2	19.7	19.7	8.0	0
1209	종자류	1	3	0	0	0	3
1211	초피	1	1	18.0	18.0	8.0	0
1301	올레오레진	1	2	13.1	13.1	3.0	0
1302	생칠	1	1	16.4	16.4	3.0	0
1401	식물성재료	3	7	9.0~13.1	11.3	8.0	0
1402	충전용식물성재료	1	1	6.6	6.6	3.0	0
1404	수피	2	11	6.6~9.0	8.3	3.0~5.0	0
2003	버섯류(조제저장)	2	3	30.0~47.2	41.5	20.0	0
2005	죽순(조제저장)	1	1	47.2	47.2	20.0	0
2006	죽순(설탕조제)	1	2	47.2~67.5	57.4	20.0~30.0	0
2008	밤(조제저장)	1	1	90.0	90.0	50.0	0
2106	도토리분	1	1	54.0	54.0	8.0	0
2208	오가피주	1	1	30.0	30.0	30.0	0
2308	도토리 열매	1	2	13.1~90.0	51.6	5.0	0
3806	로진	1	1	6.5	6.5	8.0	0
3807	목초액	1	1	6.5	6.5	8.0	0
4401	멜나무, 칩, 톱밥	4	4	2.0	2.0	0.0~2.0	0
4402	목탄	1	2	2.0	2.0	2.0	0
4403	원목	7	42	2.0~5.0	2.08	0.0 (할)	0

표 4-1. 한국 임산물 관세구조 <계속>

HS 번호	품명	품목 수 (HS-6)	품목 수 (HS-9)	양허세율* (%)	단순평균 세율(%)	실행세율 (%)	무관세 품목
4404	목재의 봉	2	4	10.0	10.0	5.0	0
4405	목모와 목분	1	1	10.0	10.0	5.0	0
4406	케도용 침목	2	2	10.0	10.0	5.0	0
4407	제재목	8	35	10.0	10.0	5.0	0
4408	단판	4	36	10.0	10.0	3.0	0
4409	성형목재	2	2	13.0	13.0	8.0	0
4410	파티클보드	3	7	8.0	8.0	8.0	0
4411	섬유판, 마루판	8	12	8.0	8.0	8.0	0
4412	합판	9	27	8.0	8.0	8.0~13.0(조)	0
4413	고밀도화 목재	1	1	13.0	13.0	8.0	0
4414	그림틀, 사진틀	1	1	13.0	13.0	8.0	0
4415	목재케이스, 팻릿	2	2	13.0	13.0	8.0	0
4416	목재통	1	1	13.0	13.0	8.0	0
4417	목재공구	1	1	13.0	13.0	8.0	0
4418	창문틀, 문틀	6	7	13.0	13.0	8.0	0
4419	목재식기	1	4	13.0	13.0	8.0	0
4420	목재장식품	2	10	13.0	13.0	8.0	0
4421	옷걸이, 이쑤시개	2	8	13.0	13.0	8.0	0
4501	코르크(가공)	2	2	13.0	13.0	8.0	0
4502	코르크(반제품)	1	1	13.0	13.0	8.0	0
4503	코르크(제품)	2	2	13.0	13.0	8.0	0
4504	웅집코르크 제품	2	2	13.0	13.0	8.0	0
4602	대나무제품	1	6	13.0	13.0	8.0	0
4814	벽지	1	3	0.0	0.0	8.0	0
9406	조립식 목재건축물	1	1	13.0	13.0	8.0	0
합계	합 계	134	336		33.5		3

* 미양허 품목은 기본세율임.

주 : (할)은 할당관세, (조)는 조정관세임.

자료 : 농림부, 「농림축산물품목분류」, 2003.

분재용 나무(HS-0602)의 경우 9자리 기준으로 세분된 품목이 21개지만 양허세율은 모두 13.1%이며 대나무제품(HS-4602)도 6개의 9자리 품목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세율은 일괄적으로 13.0%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농산

물 품목(1류~24류)은 4자리 세번이 같지만 9자리 세번이 다른 품목에 대하여 상이한 양허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실행세율 관세범위는 0~50%로 관세격차는 양허세율보다 작은 50% 포인트였지만 실행세율 역시 양허세율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4자리 분류 기준 37개 품목 가운데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맹금 및 앵무류(HS-0106)를 비롯하여 30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9자리 세번이 다른 품목인데도 단일세율이 부과되는 품목 수가 4자리 기준 20개나 되었다. 분재용 나무는 9자리 기준 21개 품목에 일률적으로 실행세율 8%가 적용되고 있으며 대나무제품도 6개의 9자리 품목에 대해 단일세율 8%가 부과되고 있다.

단기소득 임산물은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종자류와 벽지류 6개(HS-10자리 기준)가 전부였다. 따라서 단기소득 임산물의 무관세 비율은 4.8%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었다. 대부분 품목에 대한 실행세율은 양허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버섯류와 칩뿌리, 일부 견과류와 로진 및 목초액은 양허세율이 실행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단기소득 임산물 37개 품목(4자리 기준)의 단순평균 실행세율은 14.4%로 양허세율 평균 75.8%보다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목재류 품목분류와 관세체계

한국의 임산물 가운데 목재류의 품목 범위는 HS-4자리 기준으로 44류 21개와 94류 1개(조립식 목재건축물)의 22개이며 6자리 기준으로는 44류 68개와 94류 1개를 합쳐 69개, 그리고 10자리 기준으로는 모두 210개로 나타났다. 4자리 기준으로 같은 번호를 갖는 품목이 10자리로 세분된 품목 수는 원목(41개), 제재목(35개), 단판(32개), 합판(27개)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목모와 목분(HS-4405), 고밀도화 목재(HS-4413), 그림틀과 사진틀(HS-4414), 목재 통(HS-4416) 및 목재공구(HS-4417) 및 조립식 목재건축물(HS-9406) 등은 전혀 세

분되지 않고 품목 수도 한 개에 불과했다. 또한 목탄(HS-4402), 궤도용 침목(HS-4406), 성형목재(HS-4409) 및 목재케이스와 펠릿(HS-4415) 등은 세분된 품목 수가 두 개에 불과하여 세분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목재류 품목 분류는 원자재용 품목 또는 가공도가 낮은 품목의 세분화 정도가 높은 반면 가공도가 높거나 최종 소비재용 품목은 세분화 정도가 낮은 품목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도가 낮은 품목을 세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나 가공도 높은 품목 가운데 국내산과 경쟁하게 되는 품목에 대해 차등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한편 한국의 목재류 품목별 양허관세율 범위는 최저 2.0%에서 최고 13%까지로 관세격차(Tariff Dispersion)가 11.0% 포인트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티클보드(HS-4410)와 섬유판(HS-4411) 및 합판(HS-4412)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양허하지 않은 품목으로서 아직도 국내 산업의 필요에 따라 높은 관세장벽을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이다.

또한 한국의 목재류는 4자리 분류 기준으로 동일한 세번을 갖는 품목에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단순한 관세구조를 보이고 있다. 4자리 세번이 같은 품목에 대하여 상이한 양허세율 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원목(HS-4403) 뿐이며 나머지 품목들은 4자리 세번만 같으면 10자리 세번이 달라도 모두 동일한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더구나 그나마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원목의 종류도 10자리 분류 기준 ‘방부처리 침엽수’ 한 품목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목재류 양허관세구조는 전반적으로 가공도가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궤도용 침목과 제재목, 단판, 성형목재 등 가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의 세율이 파티클보드와 섬유판, 합판류 등 가공도가 높은 품목에 비해 세율이 더 높은 역누진적 형태도 공존하고 있다.

양허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최고세율인 13%가 부과되는 품목은 성형목재, 고밀도화 목재, 그림틀, 케이스, 목재공구, 식기 및 목재장식품과 옷걸이 및

조립식 목재건축물 등 4자리 기준 11개로 나타났다. 반면에 최저세율인 2.0%가 적용되는 품목은 땔나무와 톱밥, 목탄, 그리고 원목의 3 품목으로 대부분 원자재용 품목이었다. 한국의 목재류 단순 평균 양허세율은 4자리 기준 10.1%로 나타났다.

한국의 목재류 실행세율도 양허세율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4자리 분류 기준 22개 품목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땔나무와 칩 등(HS-4401)과 합판(HS-4412)의 두 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판의 경우 실행세율이 대부분 양허세율과 같은 8%가 적용되지만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만 조정관세 13%(2003년 기준)를 부과하고 있어 관세의 산업정책적 기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목재류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칩상 또는 삭편상 활엽수 (HS-4401220000)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원목류(HS-4403) 42개를 합하여 43개 뿐이었다. 따라서 목재류 무관세율은 20.5%로 나타났다. 대부분 임산물에 대한 실행세율은 양허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목재의 봉(HS-4404), 목모와 목분(HS-4405), 궤도용 침목(HS-4406) 및 제재목(HS-4407)은 5.0%, 단판(HS-4408)은 3.0%로 양허세율 10.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고밀도화 목재 등 13.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들에도 8.0%의 실행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파티클보드(HS-4410)와 섬유판(HS-4411) 등은 양허세율과 같은 8.0%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의 목재류에 대한 단순 평균 실행세율은 4자리 기준 6.3%로 양허세율보다 낮았다.

2. 일본의 임산물 관세구조

2.1. 특용 임산물의 품목분류와 관세체계

한국의 단기소득 임산물에 해당하는 일본의 특용 임산물 가운데 임야청에

서 관장하고 있는 품목은 버섯류와 목탄 등 기타품목에 불과하며 밤과 대추 등은 과실류로 취급하여 농림수산성에서 취급하고 있다. 여기서는 품목 관할 부처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을 기준으로 품목분류 체계와 관세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본의 HS 품목 분류는 9자리까지 되어 있으며 6자리까지는 품목을 나타내지만 나머지 3자리는 통계용으로 부여한 번호이다. HS-10자리까지 세분하고 있는 한국과 관세구조를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관세율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우선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국의 양허안을 작성하고 검토할 때도 품목 번호와 품목을 일치시킨 관세율일치표(Concordance Table)가 요구된다.

일본의 특용 임산물 품목 범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1류와 5~8류, 11~14류, 그리고 20~23류까지의 농산물과 목재류에서 파생된 38류와 45~46류, 그리고 48류까지 4자리 기준으로 36개이다. 이들 품목을 6자리 기준으로 분류하면 65개, 9자리 기준으로는 모두 94개로 세분된다. 4자리 기준으로 같은 번호를 갖는 품목이 9자리로 세분된 품목 수는 견과류(14), 수피류(9), 식물성 재료(5)와 조제저장 버섯류(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분재용 나무와 조제저장 밤 및 대나무 제품이 각각 4개씩 세분되어 있다.

반면에 일본의 특용 임산물 품목이 9자리까지 전혀 세분되지 않고 있는 품목은 냉동 버섯류(HS-0710)와 신선 감, 대추(HS-0810), 건조 견과류(HS-0813), 그리고 산림수 등의 종자류(HS-1209)와 초피(HS-1211), 충전용 식물성 재료(HS1402), 도토리분(HS-2106), 오가피주(HS-2208), 도토리 열매(HS-2308), 로진(HS-3806), 목초액(HS-3807), 반제품 코르크(HS-4502), 벽지(HS-4814) 등 모두 1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일본 임산물 관세구조

HS 번호	품명	품목 수 (HS-6)	품목 수 (HS-9)	실행세율(%) (HS-9 단위)	단순평균 세율(%)	무관세품목	
						HS-6단위	HS-9단위
0106	맹금 및 앵무류	2	2	0	0	2	2
0505	새의 깃털	2	2	0	0	2	2
0602	나무(분재, 기타)	4	4	0	0	4	4
0604	이끼 및 은행잎	2	2	3.0	3.0	0	0
0709	버섯류(신선)	3	3	3.0~4.3	3.4	0	0
0710	버섯류(냉동)	1	1	6.0	6.0	0	0
0711	버섯류(일시저장)	3	3	9.0~12.0	10.0	0	0
0712	버섯류(건조)	3	3	9.0	9.0	0	0
0714	쑥쑤리	2	2	9.0~12.0	10.5	0	0
0802	견과류	9	14	0~12.0	4.8	1	3
0810	감, 대추(신선)	1	1	6	6	0	0
0811	견과류(냉동)	1	2	12.0	12.0	0	0
0813	견과류(건조)	1	1	9.0	9.0	0	0
1106	사과쑤리	1	3	0~21.3	12.1	0	1
1209	종자류	1	1	0	0	1	1
1211	초피	1	1	2.5	2.5	0	0
1301	올레오레진	1	2	0	0	1	2
1302	생칠	1	2	0~6.0	3.0	0	1
1401	식물성재료	3	5	0~8.5	4.6	1	1
1402	충전용식물성재료	1	1	6.6	6.6	0	0
1404	수피	3	9	0~6.0	3.0	2	4
2003	버섯류(조제저장)	2	5	9.6~13.4	10.7	0	0
2005	죽순(조제저장)	1	2	13.4~13.6	13.5	0	0
2006	죽순(설탕조제)	1	2	12.6~18.0	15.3	0	0
2008	밤(조제저장)	1	4	10.0~21.0	14.7	0	0
2106	도토리분	1	1	15.0	15.0	0	0
2208	오가피주	1	1	0	0	1	1
2308	도토리 열매	1	1	0	0	1	1
3806	로진	1	1	0	0	1	1
3807	목초액	1	1	0	0	1	1
4401	멜나무, 칩, 톱밥	4	4	0	0	4	4
4402	목탄	1	2	0	0	1	2

표 4-2. 일본 임산물 관세구조 <계속>

HS 번호	품명	품목 수 (HS-6)	품목 수 (HS-9)	실행세율(%) (HS-9 단위)	단순평균 세율(%)	무관세품목	
						HS-6단위	HS-9단위
4403	원목	7	31	0~3.5	0.1	6	30
4404	목재의 봉	2	6	0~7.5	4.8	0	2
4405	목모와 목분	1	1	2.5	2.5	0	0
4406	케도용 침목	2	2	0	0	2	2
4407	제재목	8	39	0~6.0	1.6	3	26
4408	단판	4	27	0~6.0	5.0	0	3
4409	성형목재	2	11	0~7.5	2.9	0	4
4410	파티클보드	7	14	5~7.9	5.8	0	0
4411	섬유판, 마루판	8	8	2.6	2.6	0	0
4412	합판	9	38	6.0~10.0	6.6	0	0
4413	고밀도화 목재	1	1	7.0	7.0	0	0
4414	그림틀, 사진틀	1	1	3.2	3.2	0	0
4415	목재케이스, 펠릿	2	2	2.8~3.9	3.4	0	0
4416	목재통	1	1	2.2	2.2	0	0
4417	목재공구	1	2	2.2~2.8	2.5	0	0
4418	창문틀, 문틀	6	10	0~5.0	2.2	2	3
4419	목재식기	1	2	2.7~4.7	3.7	0	0
4420	목재장식품	2	3	0~10.0	4.2	1	1
4421	옷걸이, 이쑤시개	2	6	0~10.0	4.1	0	1
4501	코르크(가공)	2	2	0	0	2	2
4502	코르크(반제품)	1	1	0	0	1	1
4503	코르크(제품)	2	2	0	0	2	2
4504	응집코르크 제품	2	2	0	0	2	2
4602	대나무제품	1	4	3.3~7.9	5.6	0	0
4814	벽지	1	1	0	0	1	1
9406	조립식목재건축물	1	1	0	0	1	1
합 계		138	306		4.2	46	112

자료 : 일본 임야청, 「임산물관세율일람표」, 2003.

일본의 특용 임산물 품목 분류는 한국에 비해 6자리까지는 약간 더 세분되어 있지만 9자리에서는 94개로 한국의 126개에 비해 현저하게 세분화 정도

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분화 정도의 차이가 큰 품목은 분재용 나무(HS-0602)가 한국은 21개인데 비해 일본은 4개에 불과하였으며 건조 버섯류(HS-0712)는 한국이 6개인데 비해 일본은 3개, 신선버섯류(HS-0709)는 한국 5개, 일본 3개, 냉동버섯류(HS-0710)와 산림수 종자류(HS-1209)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3개와 1개씩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수피(HS-1404)도 한국이 11개인데 비해 일본은 9개였으며 식물성 재료(HS-1401)는 각각 7개와 5개, 대나무 제품(HS-4602)도 6개와 4개로 한국의 세분화 정도가 더 높았다.

반면에 일본의 세분화 정도가 더 높은 품목은 사고뿌리(HS-1106)가 한국 2개, 일본 3개였으며 조제저장 버섯류(HS-2003)는 일본과 한국이 각각 5개와 3개, 조제저장 죽순(HS-2005)은 2개와 1개, 조제저장 밤(HS-2008)은 4개와 1개 등이었다. 일본의 단기소득 임산물 품목 세분화가 전체적으로 한국에 비해 덜 세분된 가운데 가공도가 높은 조제저장 처리 품목 등은 한국보다 더 세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특용 임산물 품목별 실행관세율 범위는 최저 0%에서 최고 21.3%까지로 관세격차(Tariff Dispersion)가 21.3%였다. 따라서 4자리 기준 36개 품목의 단순평균 세율은 5.0%로 한국의 14.4%에 비해 약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실행관세 최고세율 21.3%가 부과되는 품목은 기타 사고뿌리(HS-110620200)이며 조제저장 밤(HS-2008)도 21.0%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 밖에 버섯류와 죽순의 설탕 조제 또는 조제저장 처리된 품목들의 세율이 18.0%~13.0%까지 높았으며 도토리 분도 15.0%로 높은 실행세율이 부과된다. 또한 냉동 칩뿌리와 냉동 밤, 잣, 대추 등에 각각 12.0%의 비교적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들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들은 대부분 농산물에 속하는 품목들로서 같은 농산물이라도 냉동 밤은 12.0%, 조제저장 밤은 21.0%로 가공도가 높을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본의 특용작물 가운데 무관세 품목은 망금 및 앵무류와 새의 깃털, 분재용 나무, 아몬드, 사료용 사고뿌리, 종자류, 올레오레진, 생칠과 식물성 재료 일부, 그리고 도토리 열매와 로진, 목초액, 코르크 제품 및 반제품과 벽지류와 조립식 목재건축물 등 모두 33개 품목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특용 임

산물 무관세 비율은 9자리 기준 35.1%로 한국의 단기소득 임산물 무관세 비율 4.8%의 일곱 배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특용 임산물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국내 생산품목의 경쟁력이 충분히 높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가공용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무관세를 적용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버섯류(신선 3.4%, 일시저장 10.0%, 조제저장 10.7%)와 밤(건조 견과류 9.0%, 조제저장 밤 14.7%) 및 도토리(열매 0%, 가루 15.0%)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공도가 높을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관세(Tariff Escalation)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특용 임산물은 농산물에 속하는 품목을 포함하여 4자리 세번이 동일한 품목에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9자리 세번이 다른 품목에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의 단기소득 임산물에 비해 복잡한 관세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자리 세 번은 다르지만 단일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은 맹금 및 앵무류와 새의 깃털 분재용 나무 등 4자리 기준 10개 품목에 불과하여 한국의 13개 보다 적었다. 반면 상이한 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은 신선 및 일시저장 버섯류를 비롯하여 모두 13개로 10자리 세 번을 갖는 품목 수가 일본보다 훨씬 많은 한국과 같았다. 특히 한국의 실행세율 구조가 9자리 세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수가 4자리 기준 20개나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특용 임산물 관세구조가 한국에 비해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2.2. 목재류의 품목분류와 관세체계

일본의 임산물 가운데 목재류는 2자리 기준으로 44류와 94류이며 4자리로는 HS-4401부터 HS-4421까지 21개와 HS-9406 한 개를 합해 모두 22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6자리 기준으로는 HS-440110부터 HS-442190까지 72개와 HS-940600 1개인 73개이며 9자리 기준으로는 HS-440110000부터 HS-442190099

까지 211개와 94류 2개 등 모두 213개의 품목으로 분류되어 한국의 HS-10 단위 209개와 비교할 때 세분화된 정도가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HS 분류상 4자리 품목 한 개가 여러 개의 9자리 품목으로 세분된다. 일본의 품목 분류에서 9자리로 세분된 품목 수는 제재목(HS-4407)과 합판(HS-4412)이 각각 39개와 38개로 가장 많았다. 또한 원목(HS-4403)은 31개, 단판(HS-4408)은 27개로 품목의 세분 정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목모와 목분(HS-4405), 고밀도화 목재(HS-4413), 그림틀과 사진틀(HS-4414), 목재통(HS-4416)은 4자리 분류 품목 한 개가 9자리 품목 한 개와 동일하여 세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궤도용 침목(HS-4406)과 목재케이스 및 팻릿(HS-4415), 목재공구(HS-4417), 목재식기(HS-2219) 등은 4자리 한 개가 9자리 두 개로 분류되는데 그쳐 역시 세분화 정도가 낮았다.

일본의 임산물 품목 세분화 정도가 한국보다 낮은 품목은 원목과 단판, 섬유판과 마루판, 목재 식기와 목재장식품, 그리고 옷걸이와 보빈 등이었다. 반면 일본의 품목 세분화 정도가 한국에 비해 높은 품목은 제재목,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합판, 문틀과 창문틀 등으로 나타났다. 관세율은 세분된 품목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일본의 경우 9자리로 세분된 목재류의 품목별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실행세율 범위는 최저 무관세(0%)에서 최고 10%로 관세격차(Tariff Dispersion)는 10% 포인트로 나타났다. 따라서 목재류 관세격차는 한국의 13%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자리 기준으로 같은 세번을 갖는 품목 전체에 최저세율인 무관세가 적용된 품목은 땃나무, 칩, 톱밥(HS-4401), 목탄(HS-4402), 그리고 궤도용 침목(HS-4406)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4자리 기준 품목 전체에 최고세율 10%가 부과된 품목은 하나도 없었다. 합판(HS-4412)과 목재장식품(HS-4420), 옷걸이와 이쭉시개(HS-4421)에 최고세율 10%가 적용되는 품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이들 품목을 여러 개의 9자리 품목으로 세분하여 그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최고세율을 부과한 것이다. 대부분 품목은 9자리로 세분한 품목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목재류 관세구조는 대체로 가공도가 낮을수록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반면 가공도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관세 체계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HS 분류상 4자리 기준으로 같은 품목이지만 6자리나 9자리 등 보다 세분된 품목에는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품목을 세분하는 이유는 품목별로 국내 경제와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다르므로 관세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목재류 실행관세 체계는 4자리 분류 기준으로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비교적 복잡한 관세구조를 보이고 있다. 4자리 세번이 같은 품목에 대하여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땔나무와 목탄 등 9개였다. 반면에 동일한 4자리 세번의 품목에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원목(0~3.5%)과 목재의 봉(0~7.5%), 제재목과 단판(0~6.0%), 성형목재(0~7.5%), 파티클보드(5~7.9%), 합판(6.0~10.0%), 목재케이스 등(2.8~3.9%), 창문틀 등(0~5.0%), 목재식기(2.7~4.7%), 목재장식품(0~10.0%)과 옷걸이 등(0~10.0%) 모두 13개로 목재류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최고세율인 10%가 부과되는 품목은 목재장식품과 옷걸이 및 합판 등 대체로 가공도가 높은 품목인 반면 최저세율인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땔나무와 칩상 삭편, 목탄, 그리고 대부분의 원목(HS-4403), 궤도용 침목(HS-4406), 여러 가지 제재목(HS-4407) 등 대체로 가공도가 낮거나 원자재로 사용되는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HS 분류상 4자리 기준 목재류 품목의 평균 실행세율은 2.9%였으며 고밀도화 목재(HS-4413)가 7%로 가장 높고 합판(HS-4412) 6.62%, 파티클보드(HS-4410) 5.75%, 단판(HS-4408) 5.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무관세 품목(땔나무와 톱밥, 목타, 궤도용 침목) 외에도 원목(HS-4403) 0.11%, 제재목(HS-4407) 1.6%, 창문틀과 문틀(HS-4418) 2.17%, 목재통(HS-4416) 2.2% 등은 평균 실행세율이 낮은 편이었다.

무관세 품목의 비중은 6자리 기준으로 27.4%인 20개에 불과했지만 보다 세분된 9자리 기준으로는 37.1%인 79개로 높게 나타났다. 무관세 품목 세번(9자리)의 수는 원목이 30개, 제재목이 26개였으며 땔나무와 성형목재가 4개씩이었다. 그 밖에 단판과 창문틀 등은 3개씩이었으며 목탄과 목재의 봉, 궤도

용 침목은 두 개씩 포함되어 있다. 목재 장식품과 옷걸이 및 이쭈시개는 각각 한 개씩만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합판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공구와 케이스 등에는 무관세 품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판은 전 품목의 세율이 6% 이상이며 파티클보드도 모두 5%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다. 가공도가 높거나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품목에는 무관세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일 임산물 관세구조 비교

한·일 양국의 임산물 특히 목재류의 품목분류와 관세구조를 비교할 때 품목세분화 정도는 양국이 HS-10단위 209개와 HS-9단위 213개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이 세번별로 차등화되어 있지 않아 관세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따라서 특정 품목을 보호하기 위한 차등과세 기능이 취약한 편이다. 일부 합판류(HS-4412)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조정관세는 일종의 산업피해구제제도로서 매년 대통령령에 의해 경신해야 하므로 교역상대국과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일본은 상이한 세번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적고 대부분 차등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임산물 특히 목재류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품목 세분화 정도가 서로 달라 한국이 원목(41개)과 제재목(35개), 단판(32개) 그리고 합판(27개) 순으로 품목을 세분화한데 비해 일본은 제재목(39개), 합판(38개), 원목(31개) 그리고 단판(27개)의 순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품목을 세분화하는 목적이 세분화된 품목별로 차등 과세를 하기 위함이므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거나 민감한 품목일수록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원목과 단판 수입이 일본보다 민감한데 비해 일본은 합판과 제재목 수입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목재류 관세체계는 무관세 비율이 높고(HS 분류상 9자리 기준

37.1%) 평균관세율도 2.9%로 낮아 외견상 관세장벽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면서도 세번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관세구조가 복잡하여 자국의 취약 산업이나 품목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목재류 관세 체계는 양허세율이 비교적 높고(평균 세율 10.0%, 최고세율 13.0%) 무관세 품목도 없어 관세장벽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무관세 품목이 43개나 있어 평균 실행세율은 평균 양허세율보다 크게 낮은 6.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일 양국간 관세구조 분석을 통해 볼 때 일단 예외없는 관세철폐 원칙이 적용될 경우 전반적인 실행관세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한국의 수입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관세 품목이 많은 일본은 관세철폐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대일 임산물 교역수지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상대가격의 변화와 소득 수준별 소비자 기호 등에 따라 양국간 임산물 교역패턴이 변화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제 5 장

한·일 FTA 체결의 파급효과 계측

1. 한·일 임산물 경쟁력 분석

1.1. 품목별 수입시장 점유율

특정 시장에서의 국가간 경쟁력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와 국별 비교우위의 변화, 그리고 국가간 수출경합도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산출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시장점유율은 국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때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국별 임산물 수입시장 점유율의 변화 추이를 계측함으로써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먼저 1999~2003년 기간에 한국산 임산물이 일본의 임산물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밤이 평균 47.6%로 가장 높았으며 $0.8\text{g}/\text{cm}^2$ 이상의 섬유판이 38.4%, 기타 섬유판이 26.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마루판(10.5%)과 기타 산

림수 종자(8.9%)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 밖에 $0.8\text{g}/\text{cm}^3$ 이하 섬유판(4.9%), 목재케이스와 포장용기(4.2%), 초피(3.8%), 송이(3.1%), 그리고 페렛과 박스페렛 및 표고버섯(각 2.7%)의 순으로 점유율이 낮아졌다. 나머지 임산물들의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은 2% 미만이었으며 열대산 제재목과 열대산 합판의 비중은 0.01%에 불과하였다.

일본의 임산물 수입시장 점유율의 변화 추세는 품목별 경쟁력 변화를 잘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산 대일 수출 주요 임산물 25개(HS-6 단위 기준) 가운데 1999년~2003년 기간 일본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품목은 4개뿐인 반면 감소한 품목은 1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개는 증감 폭이 작으면서 거의 일정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의 임산물 수입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품목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기타 산림수, 목재류에서는 침엽수 합판과 기타 적층 목제품, 목재케이스와 포장용기 등이었다. 점유율이 감소한 품목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송이, 초피, 저피와 삼아피 등이 있으며 목재류 가운데는 $0.8\text{g}/\text{cm}^3$ 이상 섬유판과 기타 섬유판, 그림틀 등, 건축용 목재건구, 목재조상과 장식품, 기타 칠기, 부채와 그 살 및 기타 죽제품 등이었다. 일본의 임산물 수입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밤과 기타 산림수 종자, 침엽수제재목, 마루판, $0.8\text{g}/\text{cm}^3$ 이하 섬유판, 페렛, 창문틀, 문틀과 문지방 등은 큰 변화없이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산 임산물의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품목보다 감소하는 품목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은 임산물 대일 수출이 감소하는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액이 가장 많은 밤의 점유율은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단기소득 임산물은 수출금액도 적고 점유율 자체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한국산 임산물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목재류도 주력 수출품인 $0.8\text{g}/\text{cm}^3$ 이상 섬유판과 기타 섬유판을 포함한 대부분 품목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어 대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1> 한국 임산물의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

HS번호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060290	기타 산림수	0.36	1.06	1.38	1.46	1.98	1.3
080240	밤	38.60	52.76	56.22	50.53	39.78	47.6
070959	송이				5.51	0.64	3.1
071239	표고				1.85	3.53	2.7
120999	기타 산림수 종자	9.26	9.63	8.37	8.69	8.59	8.9
121190	초피	4.64	4.17	4.44	2.85	2.80	3.8
130190	올레오레진			0.18			0.2
140490	저피, 삼아피		0.50	0.08			0.6
440710	침엽수 제재목	0.13	0.27	0.21	0.16	0.18	0.2
440729	열대산 제재목			0.01			0.01
441111	섬유판(0.8g 이상)	57.62	58.29	30.98	28.14	17.12	38.4
441119	마루판	11.11	3.97	9.42	17.11	10.73	10.5
441121	섬유판(0.8g 이하)	5.54	4.65	4.28	4.90	4.90	4.9
441199	기타 섬유판	11.33	27.83	71.76	14.68	4.74	26.1
441213	열대산 합판			0.01	0.01	0.00	0.01
441219	침엽수 합판	0.08	0.11	1.68	1.05	2.33	1.1
441299	기타 적층목제품	0.09	0.90	1.10	1.34	0.29	0.7
441400	그림틀, 사진틀	1.08	0.73	0.49	0.40	0.27	0.6
441510	목재케이스, 포장용기	2.11	4.07	5.69	3.11	5.76	4.2
441520	페렛, 박스페렛	2.81	2.78	2.09	2.84	3.09	2.7
441810	창문, 창문틀	0.37	0.32	0.80	0.22	0.44	0.4
441820	문틀, 문지방	1.00	1.00	1.10	1.06	0.63	1.0
441890	건축용 목재건구	0.08	0.05	0.08	0.05	0.03	0.1
441900	젓가락, 주방용품	0.18	0.21	0.25	0.14	0.10	0.2
442010	목재조상, 장식품	2.18	1.34	0.65	0.72	0.65	1.1
442090	기타 칠기	2.23	2.00	1.16	1.87	1.57	1.8
442190	부채와 살	0.87	1.01	0.62	0.47	0.48	0.7
460210	기타 죽제품	0.69	0.48	0.26	0.18	0.11	0.4

한편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일본산 임산물의 점유율도 하락하고 있다. 1999~2003년 기간에 일본산 임산물이 한국의 임산물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침엽수 합판으로 5년간 평균 수입 시장점유율 33.4%로 나타났다. 또한 목재케이스와 포장상자는 32.2%, 기타 적층목제품은 19.3%로 역시 높은 편이었다. 그 밖에 기타 산림수(14.7%)와 밤(10.4%), 페렛 및 박스페렛(6.7%), 건축용 목재건구(5.6%) 등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임산물들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5% 미만으로 낮았으며 침엽수 제재목과 열대산 합판의 비중은 1% 미만에 머물렀다.

한국 임산물 수입시장 점유율의 변화 추세는 품목별 경쟁력 변화를 잘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의 일본산 주요 수입 임산물 22개(HS-6 단위 기준) 가운데 1999년~2003년 기간 한국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품목은 7개, 감소한 품목은 8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7개는 증감 폭이 작거나 일정한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임산물 가운데 한국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 품목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기타 산림수와 밤, 저피와 삼아피 등 세 품목이며 목재류로는 기타 섬유판과 침엽수 합판, 창문 및 창문틀, 그리고 부채와 살 등 네 품목이었다. 특히 침엽수 합판은 2003년 한국의 침엽수 합판 수입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감소한 품목은 단기소득 임산물 가운데는 하나도 없고 목재류 가운데 기타 적층목제품과 그림틀 등, 목재케이스와 포장용기, 페렛 및 박스페렛, 그리고 건축용 목재건구와 젓가락 및 주방용품, 기타 칠기 등의 점유율이 감소하였다. 그 밖에 기타 산림수 종자와 올레오레진, 마루판과 목재조상 및 장식품 등의 시장점유율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5-2> 일본 임산물에 대한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

HS번호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060290	기타 산림수	27.27	4.73	4.76	14.85	26.09	14.7
080240	밤			3.13	20.07	8.05	10.4
120999	기타 산림수 종자	0.33	3.30	0.42	0.21	0.28	0.9
130190	올레오레진	4.12	5.97	3.94	6.13	4.49	4.9
140490	저피, 삼아피	0.89	3.51	3.81	4.56	3.97	3.3
440710	침엽수 제재목	0.15	0.00	0.08	0.20	0.07	0.1
441119	마루판		1.35	0.09	0.15	0.69	0.4
441199	기타 섬유판	0.51		0.65	1.56	6.44	1.8
441213	열대산 합판	0.42	0.10	0.13	0.03	0.07	0.2
441219	침엽수 합판	49.18	17.45	16.92	30.99	52.31	33.4
441299	기타 적층목제품	47.15	26.58	11.54	8.08	3.15	19.3
441400	그림틀, 사진틀	4.46	0.73	0.68	0.43	0.29	1.3
441510	목재케이스, 포장용기	46.62	49.98	47.75	1.75	14.85	32.2
441520	페렛, 박스페렛	21.31	9.11	2.30	0.60	0.13	6.7
441810	창문, 창문틀	0.03		1.04		1.26	0.8
441820	문틀, 문지방	1.25	0.37		0.39	0.02	0.5
441890	건축용 목재건구	7.69	16.17	0.25	3.47	0.40	5.6
441900	젓가락, 주방용품	3.85	2.60	4.03	1.79	1.75	2.8
442010	목재조상, 장식품	1.33	0.96	3.49	1.44	2.98	2.0
442090	기타 칠기	2.82	1.42	0.95	1.17	0.85	1.5
442190	부채와 살	1.36	2.67	2.92	2.91	2.97	2.6
460210	기타 죽제품	0.22	0.16	0.29	0.24	0.22	0.2

한국산 임산물은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품목이 더 많은데 비해 일본 임산물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증가하는 품목과 감소하는 품목의 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침엽수 합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수출품인 목재케이스와 포장용기, 기타 적층목제품 등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어 일본 전체 임산물의 한국 수출 감소 추세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산 임산물의 대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일본산 임산물의 대한 수출경쟁력도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특정 품목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별 품목별 생산비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양국의 품목별 생산비 계측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생산비 계측 대신 시장에 현시된 정보, 즉 수출액과 시장점유율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실현된 경쟁력을 계측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⁴⁾ 따라서 국별 품목별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계측하면 시장에 나타난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대상 품목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거나 중요성이 낮은 경우 RCA 지수는 의미있는 경쟁력 분석 지표로 이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특정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비교를 위해서는 세계 전체의 수출총액과 특정 품목의 세계 전체 수출액을 계측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arket Comparative

4) B. Balassa와 K. Kojima등은 수출성가에 따른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 RC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RCA_i = (X_i/X) \div (WX_i/WX)$$

단, X_i 는 수출국의 i 품목 수출액, X 는 수출국 총수출액, WX_i 는 세계 전체의 i 품목 수출액, 그리고 WX 는 세계 전체의 총 수출액임.

Advantage ; MCA)를 활용할 수 있다. MCA 지수는 세계 전체가 아닌 목표시장의 수입총액과 특정 품목의 수입액에 관한 자료만 있으면 계측이 가능하므로 한·일 임산물 경쟁력 분석을 위해서도 유용한 개념이다.

MCA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⁵⁾ ;

$$MCA_j^i = (X_j^i / TX_j^i) \div (X_j / TX_j)$$

여기서 X_j^i 는 수출국의 j국에 대한 i상품 수출액, TX_j^i 는 j국 시장에 대한 i품목의 세계 수출총액, X_j 는 수출국의 j국 시장에 대한 수출총액, 그리고 TX_j 는 j국 시장에 대한 세계 전체의 수출총액을 나타낸다.

즉, 어떤 국가의 i품목에 대한 MCA 지수는 그 국가가 특정시장(j국)에 수출한 i품목의 비중이 그 나라의 j국 시장 평균 점유율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MCA 지수는 RCA 지수와 비슷한 개념이나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MCA 지수가 1 이상이면 특정 시장(j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1999년~2003년 기간에 계측한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계측 결과는 <표 5-3> 및 <표 5-4>와 같다. 분석 기간에 수출입 실적이 있는 한국의 임산물 가운데 일본시장에서 평균 MCA 지수가 1보다 높은 단기소득 임산물은 밤(17.8), 송이버섯(1.3), 건조 표고(1.2), 산림수 종자(3.3), 수피류(1.9) 등이 포함된다.

5) 김남두 외(1997) 47쪽.

<표 5-3> 한국 임산물의 일본시장에서의 MCA 지수

HS 번호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060290	기타 산림수	0.1	0.4	0.5	0.6	0.9	0.5
080240	밥	12.9	17.5	20.1	21.0	17.7	17.8
070959	송이	-	-	-	2.3	0.3	1.3
071239	표고(건조)	-	-	-	0.8	1.6	1.2
120999	기타 산림수 종자	3.1	3.2	3.0	3.6	3.8	3.3
121190	초피	1.5	1.4	1.6	1.2	1.2	1.4
130190	올레오레진			0.1			0.1
140490	저피, 삼아피	2.6	2.3	2.1	1.6	1.0	1.9
440710	침엽수재목	2.1	2.7	2.5	3.4	4.7	3.1
440729	열대산재목			0.04			0.04
441111	섬유판(0.8g이상)	19.2	19.3	11.1	11.7	7.6	13.8
441119	마루판	3.7	1.3	3.4	7.1	4.8	4.1
441121	섬유판(0.5~0.8g)	1.8	1.5	1.5	2.0	2.2	1.8
441199	기타 섬유판	3.8	9.2	25.6	6.1	2.1	9.4
441213	열대산 합판	0	0	0.3	0.1	0.1	0.1
441219	침엽수 합판	6.0	1.1	0.1	12.5	23.9	14.6
441299	기타 적층목제품	0.0	0.3	0.4	0.6	0.1	0.3
441400	그림틀, 사진틀	0.4	0.2	0.2	0.2	0.1	0.2
441510	목재케이스, 포장용기	0.7	103	2.0	1.3	2.6	1.6
441520	페렛, 박스페렛	0.9	0.9	0.7	1.2	1.4	1.0
441810	창문, 창문틀	0.1	0.1	0.3	0.1	0.2	0.2
441820	문틀, 문지방	0.3	0.3	0.4	0.4	0.3	0.4
441890	건축용 목재건구	8.7	3.0	3.2	0.3	-	3.8
441900	젓가락, 주방용품	0.2	0.2	0.3	0.2	0.1	0.2
442010	목재조상, 장식품	0.7	0.4	0.2	0.3	0.3	0.4
442090	기타 칠기	1.4	0.7	0.8	0.8	2.0	1.4
442190	부채와 살	0.3	0.3	0.2	0.2	0.2	0.3
460210	기타 죽제품	7.4	7.8	7.3	7.9	7.0	7.5

목재류는 섬유판(13.8), 침엽수 합판(14.6), 침엽수제재목(3.1), 마루판(4.1), 케이스, 포장용기(1.6), 건축용 목재건구(3.8), 기타 죽제품(7.5) 등의 MCA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한국 농산물의 일본시장 평균 점유율보다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아 일본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품목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기타 산림수(0.5), 올레오레진(0.1) 등 단기소득 임산물과 열대산 제재목(0.04), 열대산 합판(0.1), 기타 적층목제품(0.3), 그림틀(0.2), 문틀(0.4), 목재장식품(0.4) 등 목재류는 MCA 지수가 1보다 낮았다. 이들 품목은 분석 기간에 일본으로 수출은 되고 있으나 수출액이 적고 일본시장 점유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비교우위가 없는 품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으로의 수출 실적이 있는 일본산 임산물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로진과 목재류의 조립식건축물, 기타 칠기 등 세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한국시장 MCA 평균 지수가 1보다 큰 것으로 계측되었다. 특히 단기소득 임산물의 철쪽속 식물(33.1)과 기타 분재용 나무(22.3), 사고뿌리(25.7), 생칠(20.9), 마롱글라세(26.6) 등은 MCA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목재류 가운데서도 흑단 원목(31.1), 단판(26.0) 등의 한국시장 MCA 지수가 높았다.

일본이나 한국의 상호 임산물 수출액이 대체로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극도로 높게 나타난 것은 농림산물 전체의 대일 및 대한 수출액과 수입시장 점유율이 더욱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2002년 한국과 일본의 양국간 전체 농림산물 수입시장 점유율은 각각 1.6%와 2.1%에 불과하였다. 전반적으로 상대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가운데 특정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상대국 시장 비교우위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일본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수출 확대 또는 유지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MCA 크기를 비교하기보다 지난 5년간 MCA 변화 추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산 임산물 가운데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증가하는 품목은 기타 산림수 종자와 침엽수 제재목, 섬유판, 침엽수 합판, 목재케이스와 포장용기 및 페렛과 박스페렛 등이다. 이들 품목은 일본시장 비교우위가 있으면서

그 크기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일본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갖는 품목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송이와 수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과 그림틀, 사진틀, 건축용 목재건구 등 목재류가 있다. 노동집약도가 높은 목재가공품들은 점차 일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어가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 밖에 밤과 표고, 초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과 마루판, 기타 칠기류, 기타 죽제품 등은 일정한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산 임산물 가운데 한국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증가하는 품목은 기타 분재용 나무와 사고뿌리, 생칠과 수피류, 기타 벽지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과 활엽수 칩상, 흑단 원목, 단판 등 목재류가 있다. 이들 품목은 한국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면서 그 크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올레오레진과 검류, 그리고 식물성 염색원료 등 단기소득 임산물과 방부처리 침엽수 원목, 흑단 제재목, 침엽수 합판, 마루판 및 페렛과 박스페렛, 목재의 통, 대나무 젓가락 등이다. 이들 품목은 장기적으로 대한국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밤(탈각 및 미탈각)과 기타 칠기, 보빈과 스푼, 콧응집코르크 등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일본 임산물의 한국시장에서의 MCA 지수

HS 번호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060230	철쭉속 식물	32.2	8.5	29.1	33.1	2.3	33.1
060290	기타 분재용 나무	8.7	12.5	5.3	33.1	11.5	22.3
080240	밤(탈각/미탈각)	-	-	0.9	29.5	3.8	15.9
110620	사고뿌리(쪼뿌리)	-	15.0	29.1	33.1	-	25.7
130190	올레오레진/검류	8.7	25.0	0.4	2.2	1.6	7.6
130219	생칠	16.1	17.4	26.0	18.4	26.8	20.9
140410	식물성 염색원료	8.7	1.8	6.9	1.3	4.6	4.6
140490	수피류	5.1	2.9	5.6	14.5	-	7.0
200600	마롱글라세	32.3	25.0	26.5	22.9	-	26.6
200819	밤(조제저장처리)	0.7	1.7	0.4	15.7	2.4	4.2
380610	로진	0.6	0.3	0.2	0.2	0.3	0.3
440121	침상(활엽수)	-	4.3	7.4	19.2	3.6	8.6
440320	원목(방부처리침엽수)	2.7	1.9	0.9	2.7	0.6	1.8
440399	흑단(원목)	-	-	29.1	33.1	-	31.1
440799	흑단(제재목)	18.9	7.8	7.5	-	-	11.4
440839	단판	-	-	-	17.8	34.2	26.0
441129	기타 섬유판	2.9	0.8	1.8	0.8	3.2	1.9
441219	침엽수 합판	16.7	4.5	5.1	1.8	2.8	6.2
441229	마루판	4.5	4.9	2.4	2.5	0.5	2.9
441510	목재케이스, 포장용기	14.9	12.5	13.9	0.6	5.8	9.5
441520	페렛, 박스페렛	6.8	2.3	0.7	0.2	0.4	2.1
441600	목재의 통 등	3.2	0.9	0.3	3.4	0.7	1.7
441900	대나무젓가락	7.0	3.7	2.1	1.4	0.9	3.0
442090	기타 칠기	1.7	0.8	0.5	0.6	1.6	1.0
442190	보빈, 스폴, 콕	3.5	2.4	1.3	0.5	3.4	2.2
450490	웅집코르크	0.1	0.4	3.6	2.3	0.2	1.3
481430	기타벽지	1.3	2.5	3.8	7.8	3.9	3.9
940600	조립식 건축물(목재)	0.1	0.1	-	0.3	0.3	0.3

2. FTA의 수입전환효과 : 양국간 잠재교역액(PBT)

일반적으로 FTA 체결의 파급효과 계측은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한다. CGE 모형은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고 FTA 체결로 인해 관세철폐라는 외부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경제의 각 부문이 이러한 충격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 다시 균형을 회복하였을 경우 각종 지표와 파라미터(parameter)의 변화를 계측, 비교하기 위한 모형이다. CGE 모형에 의한 모의시험(simulation)에는 국가 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이 사용된다. 투입산출표는 일년간 국가 경제의 모든 부문이 생산하고 소비 및 투자, 저축한 금액을 기록한 정태(Static)적 자료이다. 따라서 투입산출표에 의해 관세철폐의 효과를 계측하는 CGE 모형은 정태적 접근방법의 하나로서 특히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기 이전과 이후의 각종 지표를 비교하는 비교정태적 분석(Comparative Static Analysis)이라 할 수 있다.

CGE 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는 GDP나 전체 수출입, 국민 후생(Welfare)의 변화와 같은 거시 지표(Macroeconomic Indicators)를 계측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그러나 세부 품목별 생산과 소비, 수출입 변화와 같은 미시지표(Microeconomic Indicators) 계측을 위해서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세부 품목별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경우 CGE 모형의 용도는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과 일본간 FTA 체결시 임업부문에 미치는 교역효과를 계측하기 위한 것이므로 CGE 모형 대신 양국간 잠재교역액(Potential Bilateral Trade: PBT) 지표를 이용하여 부문별 또는 세부 품목별 수출입 효과를 계측한다.

양국간 잠재교역액(PBT)은 양국간 완전한 무역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의 생산 및 수입 능력하에서 증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출액을 나타낸다. 따라서 PBT는 현재 수입국이 제3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상대국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수출 증가액인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PBT는 다음 공식에 의해 계측할 수 있다⁶⁾ :

$$PBT_i = \min (AX_i, BM_i) - ABM_i$$

여기서 AX_i 는 수출국 A의 i 품목 총수출액, BM_i 는 수입국 B의 i 품목 총수입액, ABM_i 는 A국이 B국으로 현재 수출하는 금액임.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양국간 잠재교역액(PBT)을 계측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임산물 354개 품목을 HS-6단위로 분류하여 양국간 품목별 교역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의 대일 잠재수출액을 계측하기 위해 일본의 수입총액과 한국의 수출총액, 그리고 한국의 대일 수출액을 품목별로 수집, 정리하였으며 일본의 대한국 잠재수출액을 계측하기 위해 한국의 수입총액과 일본의 수출총액, 그리고 일본의 대한 수출총액을 품목별로 수집하였다.

PBT 계측을 위한 자료 수집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품목 분류 기준이 서로 달라 세번별로 일치시키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수출입 자료에 다른 품목의 교역액이 포함되거나 같은 품목의 교역액이 다른 품목으로 집계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⁷⁾ HS-6 단위에 의한 교역 자료에는 임산물 아닌 품목의 교역액도 포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의 5년간 임산물 수출입 자료에 의해 계측한 PBT 평균치에 의하면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대일 임산물 수출액은 약 1억 9백만 달러, 대일 수입액은 약 94백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는 약 15백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치는 같은 품목이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일한 세번(HS-6 단위 기준)을 갖고 있어 상호 완전 대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계측한 결과이다. <표 5-5>는 분석대상 354개 품목(한국의 HS-10 단위 기준)을 HS-6단위 149개로 재분류한 품목 가운데 석재류를 제외하고 PBT가 일정액 이상인 품목만을 정리한 것이다.

6) 어명근 외(2003), 56~64쪽 참조.

7) 품목 세분 기준이 한국은 HS-10 단위인데 비해 일본은 HS-9단위였으며 같은 품목이라도 세분되는 정도가 달라 한국은 세번이 하나뿐인데 비해 일본은 여러 개인 경우가 많았음. 특히 기타 침엽수류 제재목은 한국의 HS 번호가 4407109000인데 일본은 440710110부터 440710399까지 열아홉개나 되는 경우도 있음.

<표 5-5> 주요 임산물 양국간 잠재교역액

단위 : 천 달러

HS 번호	품 명	대일 수출	대일 수입	무역수지 변화	비고
050510	새의 솜털 및 깃털	15,048	891	14,157	
071239	표고버섯(건조)	996	2,940	-1944	
071290	고사리, 고비(건조)	504	1,213	-709	
080240	밤(탈각/미탈각)	9,342	266	9,076	
081090	감, 대추(신선)	1,153	611	542	
120999	기타 산림수 종자	187	2,475	-2,288	
121190	초피	1,144	1,700	-556	
200590	죽순(조제저장)	10	1,373	-1,363	
200819	밤(조제저장)	1,063	5,145	-4,082	
210690	도토리분	58	1,416	-1,358	
220870	오가피주	401	4,926	-4,525	
380610	로진	98	1,870	-1,772	
440200	목탄	44	1,454	-1,410	
440710	침엽수 제재목	852	2,156	-1,304	
440799	기타 제재목	2,005	5,340	-3,335	
440839	열대산 목재의 단판	73	1,455	-1,382	
440890	단판(기타)	1,089	8,849	-7,760	
441111	섬유판(0.8g/cm ² 초과)	1,448	55	1,393	
441119	마루판	3,109	287	2,822	
441121	섬유판(0.5~0.8g/cm ²)	3,993	196	3,797	
441129	마루판, 기타	30	1,300	-1,270	
441213	열대산 합판	443	1,734	-1,291	
441214	활엽수 합판	1,612	3,627	-2,015	
441219	침엽수 합판	2,492	470	2,022	
441229	기타 합판	25,854	465	25,389	
441510	목재케이스, 포장용기	3,722	685	3,037	
441520	페렛, 박스페렛	1,191	2,114	-923	
441830	파아켓 패널	2,499	320	2,179	
441890	건축용 목재건구	1,390	4,115	-2,725	
441900	목재 식기	761	4,813	-4,052	
442090	칠기제품	1,263	940	323	
442190	보빈, 스폴, 콕	4,416	7,973	3,557	
940600	조립식 건축물(목재)	12,811	5,442	7,369	
	전체 합계	109,103	93,843	15,260	

주 : 1. 2002년 평균 환율(¥125.14/US\$)을 적용하였음.

2. 석재류는 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실 (//kotis.kita.net).

한국산 임산물의 품목별 잠재교역액은 기타 합판이 약 26백만 달러, 새의 숨털과 깃털 15백만 달러, 조립식 건축물 13백만 달러, 밤 10백만 달러, 섬유판 8백만 달러, 보빈과 스폴 등 4백만 달러, 그리고 목재케이스 등 각각 4백만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대일 임산물 수출이 단기소득 임산물 위주인데 비해 FTA 체결 이후 잠재교역액은 주로 목재류를 중심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현재 수출 가능한 물량이 대부분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출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산 임산물의 잠재교역액은 단판 11백만 달러, 제재목 8백만 달러, 보빈과 스폴 등 8백만 달러, 조립식 건축물 5백만 달러, 합판류 5백만 달러, 그리고 밤(조제저장처리)과 오가피주가 각각 5백만 달러씩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목재식기도 5백만 달러, 건축용 목재 건구와 목공품 4백만 달러, 건조 버섯과 산림수 종자가 각각 3백만 달러, 그리고 펠렛 및 박스펠렛과 로진이 각각 2백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산 임산물의 대한국 잠재수출액은 한국의 수입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품목별 PBT가 한국에 비해 소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백만 달러를 넘는 품목 수는 일본이 한국보다 더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몇 개 주력 수출품 위주로 임산물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듯이 일본과의 FTA 체결 후에도 소수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교역형태를 보이는 반면 일본은 비교적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 6 장

결론 : 한 · 일 FTA 임업부문 대응방안

1. 한국과 일본의 FTA 체결 사례

1.1 한국의 FTA 체결 사례: 한 · 칠 FTA

칠레는 과일류 경쟁력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원목과 제재목 등 임산물 분야의 경쟁력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수출량도 많은 주요 임산물 수출국이다. 2002년 한국의 대칠레 임산물 수입액은 약 27백만 달러, 수출은 13천 달러로 27백만 달러의 임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대칠레 수입액은 한국의 2002년 임산물 수입총액 21억 57백만 달러의 1.3%에 해당한다. 2001년도에 비해 임산물 수입액은 62%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80% 감소하여 양국간 임산물 교역은 최근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2년 주요 수입품목은 원목 10백만 달러, 제재목 7.4백만 달러, 파티클보드 5.2백만 달러, 섬유판 2.9백만 달러 등이다. 수출품목은 페렛이 약 12천 달러 수출되었을 뿐이다.

한국과 칠레간 FTA 협정은 199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진행된 후 2001년

10월 타결되었다. 양국 정부간 공식 협상과 국회 비준 과정에서 과수농가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포도와 사과, 배 등 과실류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와 계절관세 부과 등 예외적인 조치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피해예상 품목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피해보상 대책도 충분할 정도로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산물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으며 목재류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양허하지 않은 품목들까지 10년내 관세철폐 대상 품목에 대거 포함시켰다. 임업부문의 대상 품목은 HS 10자리 기준으로 모두 354개였으며 기준세율은 탄력관세를 포함하는 2003년 실행세율로 정했다. 한·칠레 FTA 협정문은 총칙과 상품무역, 투자와 서비스 등 모두 7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허안은 부속서 1의 현행조치를 위한 유보와 자유화 약속에 명시되어 있다.

임산물 분야의 양허안은 관세철폐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DDA 협상 이후 재협상, 10년후 철폐, 7년후 철폐, 5년후 철폐, 그리고 즉시 철폐 등 모두 다섯 개 범주로 구분된다. 먼저 단기소득 임산물은 108개 가운데 밤과 잣, 대추 등 21개 민감품목은 일단 DDA 협상이 타결되는 추이를 지켜보며 재협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송이, 감, 표고 등 10개 품목은 10년내 관세철폐 대상품목에 포함시켰으며 호도 등 2개 품목은 7년간 철폐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몬드와 산림수를 비롯하여 가장 많은 61개 품목을 5년내 철폐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산림수 종자와 수피 등 15개 품목은 즉시 철폐기로 합의하였다.

목재류 246개 품목은 DDA 협상 이후 재논의 품목은 하나도 없으며 파티클보드와 섬유판, 합판 등 32개 품목은 10년간 균등 비율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제재목과 웨이퍼보드 등 71개 품목은 5년후 철폐 범주에 포함되었으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목과 단판, 칩 등 143개 품목은 즉시 철폐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 결과가 <표 6-1>에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임업부문의 경쟁력을 가진 칠레와의 FTA 체결에서 어느 정도 수입전환효과가 예상되는 임산물, 특히 목재류 분야의 예외없는 관세철폐라는 양허 원칙을 명시한 것은 일단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FTA는 체결당사국간의 약속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 등 추후 추진될 다른 FTA의 전례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FTA 협상에 따른 양허안을 작성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칠레와의 FTA 양허안이 기준으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과 칠레는 산업과 경제적 환경이 완전히 다른 국가이므로 품목별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혀 별개의 양허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1> 한·칠레 FTA 임산물 양허 내용

양허유형(354개)	단기소득임산물(108개)	목재류(246개)
DDA 협상이후논의(21)	밤, 잣, 대추 등(21)	-
10년내 철폐(42)	송이, 감, 표고 등(10)	PB, 섬유판, 합판 등(32)
7년내 철폐(2)	호도 (2)	-
5년내 철폐(131)	아몬드, 산림수 등(60)	제재목, 웨이퍼보드 등(71)
발효시 철폐(158)	산림수종자, 수피 등(15)	원목, 단판, 칩 등(143)

주 : ()속은 HS 10자리 기준 해당 품목 수입.

1.2. 일본의 FTA 체결 사례: 일·싱 FTA

일본은 2001년 3월부터 9월까지 싱가포르와의 산·관·학 공동연구를 거쳐 2001년 12월 양국 정부간 공식 협상을 완료하고 2001년 1월 “일본-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대협정(JSEPA)”을 체결하였다. 2002년 5월 양국 국회 비준을 거쳐 2002년 10월 31일 발효된 일본과 싱가포르간 FTA 협정문 부속서(Annex) 1에 있는 일본의 상품 양허안(Schedule of Japan)은 관세철폐 및 감축 시기에 따라 모두 여섯 가지 범주(Category)로 구분된다. 양허계획표(C/S) 제3열(Column 3)에 표시된 알파벳에 따라 “A”는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을 의미하며 “B”로 표시된 품목은 2006년 4월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편 “C1”으로 표시된 품목은 협정 발효시 2.8%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 8년간 관세를 균등 감축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하며 “C2”는 협정 발효시 3.1%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 매년 균등 감축하여 2010년 1월 1일 관세가 철폐된다. “C3”은 협정 발효시 3.9%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 매년 균등 감축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품목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D”는 2004년 1월 1일 6.5%에서 시작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 매년 균등 감축을 거쳐 완전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여섯 가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들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예외 품목”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양허계획서에서 임산물 관련 품목은 HS-9자리 기준 112개가 “A” 범주로 분류함으로써 전체 임산물 306개 품목의 36.6%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A” 범주로 분류된 품목들은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 이전부터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던 품목들이다. 나머지 63.4%인 194개 품목들은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본과 싱가포르간 FTA 협정의 일본 양허계획서에서 임산물은 단 두가지 범주인 “협정 발효 즉시 관세철폐”와 “관세철폐 예외”로만 분류되며 “협정 발효 즉시 철폐” 품목들도 사실상 이미 관세가 철폐된 품목들이므로 FTA 체결에 따라 관세를 철폐하게 되는 품목은 하나도 없는 셈이다.

일본과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협정 발효 즉시 관세철폐” 품목의 특징은 이미 국내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들이다. 단기소득 임산물 가운데 묘목류(HS-0602), 아몬드, 피스타치오, 은행 등 견과류(0802), 산림수종자, 등나무, 생칠, 수피류, 도토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목재류에서는 원자재 또는 가공도가 낮은 중간재로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땔나무, 톱밥, 목탄, 원목, 목봉(4401~4404), 침목과 제재목, 단판, 성형목재(4406~4409)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 밖에 가공도가 높은 창문틀(4418)과 목재조상(4420), 옷걸이와 보빈(4421) 등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관세철폐 예외” 품목들은 자급률이 높고 국내 산업의 중요성이 높은 은행잎(0604), 송이와 표고버섯(0709), 죽순(0710), 밤(0802), 감, 대추(0810), 대나무(1401), 송로(2003), 로진(3806)과 목초액(3807)등이 포함된다. 목재류 가운데 예외 품목은 목모와 목분(4405), 라왕 등 열대산 제재목(4407), 적층목재단판(4408) 및 파티클보드(4410), 섬유판(4411), 합판(4412) 등 대부분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들이다. 그 밖에 가공도가 높은 품목인 고밀도화목재, 목재 그림틀, 목재 케이스와 페렛, 목재통과 목재공구(4413~4417) 등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결국 일본은 임산물 수출 능력이 거의 없는 싱가포르와의 FTA 협정에서 조차 자국의 임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들을 대거 예외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싱가포르산 임산물의 수입 급증을 우려해서라기보다 향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임산물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을 포함한 ASEAN과의 FTA 협상에서 자국의 민감 품목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싱가포르의 양허계획서(Schedule of Japan)는 일체의 예외없이 “본문 제14조 첫 번째 문단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싱가포르는 일본을 원산지로서 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는 단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FTA 협상을 진행중인 우리나라로서는 임업부문의 양허안 작성에 있어서 칠레와의 FTA 체결시 제시했던 양허안을 전례로 삼아 작성하되 일본이 싱가포르와의 FTA 협정에 양허한 내용을 백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싱가포르와의 협상 못지 않은 예외 인정과 다양하고 복잡한 범주 구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수용 또는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분석 결과 요약

한국의 일본 목재류 수입시장 점유율은 약 0.2%에 불과한 낮은 수준으로 대부분 중간재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들 품목들은 광범위하게 소비되는 품목이라기보다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소량 주문형 수출품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일반 합판과 일반 섬유판보다는 기타 합판, 기타 섬유판 등 특수 가공목재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수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틈새시장 확보 차원에서는 일본과의 FTA 체결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어도 대일 목재류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목재류 교역은 규모는 작지만 상호보완적 관계와 동시에 산업내 무역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은 섬유판과 제재목을 수출하는 대신 일본산 단판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complementary) 관계에 있으면서 합판과 목재케이스는 서로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산업내 무역 관계도 있어 FTA 체결시 상호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산 단기소득 임산물의 대일 수출은 수출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외국산 임산물이나 일본산 임산물과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보한 품목이 거의 없다. 따라서 한국산 단기소득 임산물은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이나 생산비 절감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자연조건에 제약을 받고 있어 대일 수출량이 연도별로 크게 변동하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과 일본의 관세구조 분석 결과 품목세분화 정도는 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한국은 세율이 세번별로 차등화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목재류 평균 실행세율은 6.3%로 일본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높고, 무관세율은 19.5%로 일본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 외견상 관세장벽이 높게 나타나지만 관

세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민감 품목을 보호하기 위한 차등과세 기능이 취약하다. 반면에 일본은 실행세율이 평균 2.9%로 낮고 무관세 비율도 목재류는 37.1%, 단기소득 임산물은 35.1%로 높아 외견상 관세 장벽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세분화된 품목들의 가공도에 따라 차등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민감품목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품목 세분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은 합판과 제재목의 세분화 정도가 높고 한국은 원목과 단판의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은 세분된 품목에 대해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원목 일부 품목에 할당세율을 적용하고 있을 뿐 품목 세분화와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FTA 체결시 예외없는 관세철폐 원칙이 적용될 경우 전반적인 임산물 실행관세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한국의 수입 증가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관세 품목이 많은 일본은 관세철폐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한국산 임산물의 대일 신규 수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수출품목의 수출액도 크게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임산물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계측한 결과 한국은 밤과 섬유판, 마루판, 산림수 종자, 목재케이스, 초피류, 송이 등의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침엽수 합판, 목재케이스, 기타 적층목제품, 기타 산림수, 밤과 페렛 및 박스 페렛, 건축용 목재건구 등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았다. 또한 세계 각국의 평균 시장점유율에 대한 상대적인 시장점유율인 시장별 비교우위(MCA)를 계측한 결과 한국이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품목은 밤, 송이, 포고(건조), 산림수 종자, 수피류, 섬유판, 침엽수합판, 침엽수제재목, 목재케이스, 건축용 목재건구, 죽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이 한국의 임산물 수입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품목은 분재용 나무, 사고뿌리(취뿌리), 올레오레진, 생칠, 식물성염색원료, 마롱글라세, 삭편상(활엽수), 방부처리원목(침엽수), 단판, 침엽수 합판, 목재케이스, 보빈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 가운데 비교우위도 높은 품목은 한국의 경우 밤과 섬유판, 산림수 종자, 목재케이스, 송이 등이며 일본은 침엽수 합

판과 목재케이스 등이었다.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별 비교우위가 높은 것은 세계 전체의 시장점유율에 비해 당사국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상호 시장별 비교우위를 갖는 침엽수 합판과 목재케이스 가운데 침엽수 합판은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규격과 용도가 일본의 비교우위 규격 및 용도와 서로 달라 사실상 같은 품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이 모두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이 거의 없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양국간 임산물 교역은 상호보완적이라는 특징이 확실하게 드러난 반면 임업 부문에서의 산업내 무역 관계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간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의 교역전환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잠재 교역액(PBT)을 계측한 결과 한국의 대일 임산물 수출액은 약 1억 9백만 달러, 대일 수입액은 약 94백만 달러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도 약 15백만 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임산물 대일 수출은 1999~2003년 기간 평균 대일 임산물 수출액(약 1억 4천 9백만 달러)의 약 73%가 증가하고 수입은 5년간 평균 수입액(약 1천 7백만 달러)의 45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에 따라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겠지만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양국간 임산물 교역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일본의 임산물 수출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일본산 임산물의 한국 수출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 탓이라 할 수 있다. 품목별 한국의 대일 수출 증가 예상액은 기타 합판 26백만 달러, 새의 솜털과 깃털 15백만 달러, 조립식 건축물 13백만 달러, 밤 10백만 달러, 섬유판 8백만 달러, 보빈과 스폴 4백만 달러, 목재케이스 4백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품목별 대일 수입 증가 예상액은 단판이 10백만 달러, 보빈과 스폴 8백만 달러, 제재목 7백만 달러, 조립식 건축물 5백만 달러, 합판류 5백만 달러, 오가피주 5백만 달러, 목재식기 5백만 달러, 건축용 목재건구 4백만 달러 등이었다.

이러한 전망은 양국의 관세가 일시에 철폐될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체결된 FTA는 대부분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과 5년 내지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양허계획표(C/S)를 첨부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철폐 기간이 길어지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교역액 증가는 앞서의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이다. PBT는 수입전환효과에 의해 교역액이 증가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FTA 체결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일본은 임산물 수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싱가포르와의 FTA에서조차 기존의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로 분류한 바 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FTA에서 임산물 관세를 일시에 철폐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대일 임산물 수출도 앞서 계측한 만큼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가공도가 높은 품목들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능한 한 장기간에 걸쳐 인하하는 다양한 관세철폐 범주(Category)를 포함하는 양허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와의 FTA 협정에 제시한 우리나라의 임산물 양허안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양허하지 않은 품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칠레가 세계 주요 임산물 수출국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양허안은 상당히 개방적인 입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FTA는 원칙적으로 당사국간의 약속이므로 제3국과의 협상에 구속력이 없지만 칠레와의 FTA 양허안이 일본과의 FTA를 포함한 다른 FTA 협정에 전례로 원용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네 차례의 정부간 실무협상이 진행된 한·일 FTA 협상에서 임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임산업 피해를 극소화하는 동시에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칠레와의 FTA 협상 경험과 우리나라 임산물의 품목별 경쟁력 및 FTA 체결의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대일 양허안(Offer) 마련에 임하는 임업부문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임업부문 실태와 민감 품목 및 협상 전략을 파악하여 대일 양허요청서(Request) 작성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3. 임업부문의 한·일 FTA 협상 전략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분석 결과 일본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대부분의 품목들은 수출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관세철폐는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임산물의 품목 세분화 정도가 높고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관세철폐시기와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주(Category)로 구분된 복잡한 양허계획서(C/S)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임산물 관세구조는 무관세 품목이 많고 평균세율도 낮아 관세철폐시 수입증가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일 FTA 협상전략은 우리나라의 양허안(Offer)과 대일 양허요청서(Request)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양허안 작성의 기본 원칙은 관세철폐시 대일 수입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충격이 작은 품목부터 “관세 즉시 철폐” 또는 “단기간 내 철폐”로 향허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양허안 작성 기준으로 현행 실행세율 수준을 참고하되 칠레와의 FTA 협정에 제시한 양허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열대산 원목류와 같이 할당관세 등에 의해 사실상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철폐하고 중간재로 사용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단기간에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는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 생산이 어렵거나 경쟁력이 낮고 실행세율 3.0% 이하인 칩상 및 삭편상과 일부 단판류들이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칠레와의 FTA 협정 양허안에서 “5년 이내 철폐”에 포함된 단기소득 임산물 품목들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양허세율 수준에 관계없이 실행세율이 10년 이상 5% 이하로 낮게 유

지된 품목들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 사실상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품목들도 품목별 생산자들과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실행세율이 8% 수준인 품목들은 개별 품목별로 현재까지의 수입 동향과 시장 점유율, 그리고 국내산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장단기 시기별로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품목별 생산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UR에서 양허하지 않은 목재류 품목들은 국내 수급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6mm 이상 합판류는 일단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분류하되 한·칠레 FTA 양허안을 기준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칠레와의 FTA에서는 “DDA 협상 이후에 논의” 범주에 속하는 목재류가 없었지만 사실상 DDA 협상 결과에 따라 한·일 FTA에서의 양허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주에 포함되는 목재류 품목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허세율이 100% 이상으로 높은 품목들 가운데 실행세율도 50% 이상으로 높은 품목들은 “관세철폐 예외” 또는 장기간에 걸친 감축 대상 품목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칠레 FTA에 없었던 10년 이상 15년 내지 18년간의 장기간 관세철폐 범주를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단기 소득 임산물들은 생산 농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일 양허요청서(Request)에는 일본의 임산물 수입시장 점유율과 시장비교우위(MCA)가 높은 품목, 그리고 대일 잠재수출액(PBT) 등 각종 경쟁력 지표를 기초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관세철폐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일 수입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품목 및 한국시장 비교우위(MCA)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양허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대일 양허 요청시 관세철폐에 따른 실익이 작거나 불분명한 품목 또는 일본이 민감 품목으로 분류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관세철폐 요구보다는 향후 중국이나 ASEAN과의 FTA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현행 실행 세율이 5% 이하로 낮은 품목은 관세철폐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품목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준세율이 30~50% 이상으로 높은 품목은 대일 양허요청서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이다. 명시적으로 ‘관세철폐 예외’ 품목이라 표시하지 않아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측과 협의를 거쳐 신축적인 FTA 협상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관세철폐 예외”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비관세 장벽과 원산지 규정, 식물검역 등에 관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출입업체, 생산자, 가공업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군호, “FTA 협상 국제동향,” 농림부 「국제농업소식」, 152-168, 2003.
- 김남두, 원용걸, 전재욱, 정훈, 「동아시아 무역, 투자의 구조변화와 향후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7-09, 1997.
- 신동천 외, 「한·일 FTA 체결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CGE 모형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46, 2001.
- 어명근 외, 「임업분야 WTO 뉴라운드 대응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 C2000-29, 2000.
- 어명근 외, 「방곡협정에 대한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3-27, 2003.
-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한·일 FTA와 한국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집, 5-42, 2004.
- _____, “한·일, 한·싱가포르 FTA 추진동향과 대응방안” 「나라경제」 제157호, 18-22, 2003.12.
- 최세균, “한·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과 과제” 「한·일 FTA와 한국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집, 43-94, 2004.
- _____, 외,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 C2001-25.
- 산림청, 「2003년도 임산물 수출입 통계」, 2004.
-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 통계」, 2003.
- _____, 「제재 기초통계」, 각 년도.
- _____, 「합관 통계」, 각 년도.
- 일본 임야청, 「목재수급표」, 각 년도.
- 일본 임야청, 「임산물 관세율 일람표」, 2003.
- 일본 합관공업조합 연합회, 「합관관련 통계월보」, 2004. 1.
- 일본 재무성, 「일본무역 통계」, 2003.
- 농림부, 「농림축산물 품목분류」, 2003.

<부록 1> 일본의 임산물 비관세 장벽 현황⁸⁾

1. 목재류

1.1. 제재목

일본은 제재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으나 수피가 일부 남아 있는 목재는 식물방역법에 의거 식물방역소의 검사가 필요하다. 제재 등 가공처리된 것은 기본적으로 검역대상이 아니지만 통나무 등은 수입시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사가 필요하다. 식물방역소 검사 신청은 식물검사전청서에 수출국의 식물무역기관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검사 결과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 훈증, 소독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워싱턴 조약에서 거래가 규제되고 있는 수종의 제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의해 수입승인이 필요하다.

제재목의 일본내 판매시 일본농림규격(JAS)에 적합해야 한다. 이 규격은 시공의 합리화, 목조주택, 목조건축의 진행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류의 유통치수의 표준화, 간소화, 목조주택의 고품질화를 위한 건조재의 공급 확대, 목조의 삼층건물 주택이나 중·대규모 목조건축의 증가 등에 대응한 제재의 강도성능의 명확화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구조부분의 용도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

JAS에서는 제재를 구조재, 내장재 등 사용부위, 침엽수, 활엽수 등 수종, 공법 등으로 분류하고 재면의 품질, 보존처리, 치수 등에 대해 규격이 설정되어 있다. 즉 침엽수의 조작용 제재, 침엽수의 기초용 제재, 침엽수의 구조, 활

8) 비관세장벽은 산림청. 2003. 「임산물 해외시장 동향」, www.kati.net, www.foa.go.kr, www.kita.net, 임업연구원·(사)한국합판보드협회. 2003. 「제3회 한국 합판·MDF·파티클보드 심포지엄」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업수의 제재, 활업수의 기초용 제재, 보존처리제재 등으로 JAS마크에는 이러한 종류별로 검사기관 명이나 등급 등을 기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0. 6월 시행된 개정 JAS법에서는 국내외의 민간영리법인도 검사기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국내외의 제재공장자체가 등록인정기관에 인정신청을 하고 승인 받으면 자체 검사를 하고 JA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었다.

1.2. 합판

합판수입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제가 없지만 수입합판이 일본 현지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건축기준법」, 「소방법」, 「노동안전위생법」 등의 규제를 받는다.

1.2.1. 건축기준법

건축기준법이 1998년 대폭 개정되면서 합판에 대한 사양 및 성능규정에 대한 조항이 도입되었으며, 불연소재 및 연소억제가공처리 등의 세부규정에 따라 지정기관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 건축기준법에서 정한 내장제한의 지정개소에는 동 법에서 정한 불연재료, 준 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합판중에서 타기 어렵도록 난연(難燃) 등으로 처리하고 하기의 성능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또는 국토교통대신지정의 성능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난연합판 이라 하고 난연재료의 하나로 정해져 있다. 내장제한의 지정개소(난연재료 이상의 것)에는 이 난연합판만 사용이 가능하다.

난연재료의 성능규정으로서는 통상화재에 의한 火熱이 가해진 경우 가열개시후 5분간, ① 연소하지 않을 것, ② 방화상 유해한 손상을 나타내지 않을 것. ③ 피난상 유해한 연기 또는 가스를 발생하지 않을 것 등이다.

1.2.2.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동 법에 따라 2000년4월1일 이후의 신축주택의 취득계약에 대해서는 기본 구조부분(기둥, 벽, 마루바닥, 지붕 등 주택에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 비의 침입을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10년간의 하자담보 책임이 의무화되었다. 완성 인도한 후 10년간의 판매자는 보수·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1.2.3. 소방법

동법에서 정한 「방염방화대상물」(불 특정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적 건축물등)에는 동법에서 정한 「방염물품(防炎物品)」(동법에서 정한 방염 성능(타기 어려운 성질)기준을 만족하는 것)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전시회장 등에서 이용하는 전시용합판 등은 방염물품인 방염합판이 아니면 안된다. 방염합판의 인정을 받은 것은 판매시에 정해진 표시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1.2.4. 노동안전위생법

동법은 건축현장 등에서 이용하는 「합판족장판(合板足場板)」은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규격을 구비해야만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2.5. 품질 규격과 비관세 장벽

합판의 수입에 있어서 특별한 규제는 없지만 상기 관련법에 의거 판매시 제재를 받게 됨으로써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합판 수출업체에게 합판의 수입 시 요구되는 “농림물질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JAS마크)”인 일본농림규격(JAS)에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02. 7월 보통합판 등의 JAS 규격 검토시 포름알데히드의 규제에 대해 개정

을 하였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기준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의 구분	평균치(mg/L)	최대치(mg/L)
F☆☆☆☆	0.3	0.4
F☆☆☆	0.5	0.7
F☆☆	1.5	2.1
F☆	5.0	7.0

주 :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하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등록인증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합판 등의 JAS규격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재)일본합판검사회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일본합판검사회 산하에 7개 사업소(북해도검사소, 동북검사소, 동경검사소, 나고야검사소, 오오사카검사소, 주고쿠검사소, 규슈검사소)를 두고 있다. JAS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 신청접수 → 시료 추출 → 시험(이화학적 시험) → 시험(외면검사) → 합격 및 불합격 판정 → 마크표시 순이다.

한편 JIS(일본공업표준규격) 인증 절차는 JAS 인증 절차와 비슷하며 국내의 한국표준협회에서도 받을 수 있어 한 품목에 대한 인증 비용은 5,000,000원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JAS 인증을 받기 위해 해외업체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으로 한 품목당 20,000,000원(2,115,000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부표 참조). 따라서 일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한국 내에서도 JA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JAS 인증의 경우 JIS 인증과 마찬가지로 한국표준협회 등 한국내 인증기관에서도 인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3. 섬유판

섬유판도 제재목이나 합판과 같이 수입시 법적인 규제는 없다. 다만 제재목과 같이 수피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거 식물방역소의 검

사가 필요하다. 섬유관의 일본내 판매시 「일본공업규격(JIS)」과 「일본공업규격표시제도(JIS마크표시제도)」의 제약을 받게 된다. JIS마크표시제도는 인정을 받은 뒤에 생산자가 자기책임 아래 제품에 JIS마크 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JIS마크의 표시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JIS에 적합한 상품을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제조하고 얻는 능력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최근 경제활동의 국제화 일환으로서 규격 및 인증제도가 무역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 3. 26일부로 공업표준화법의 개정이 공포되어 1997. 9. 26일에 시행되게 되었는데 개정내용에서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민간에 의한 지정 인정기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무대신에 인정(인정서는 주무대신명이 됨) 또는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에서 인정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은 지정인정기관의 인정(인정서는 지정인정기관의 대표자명이 됨)의 어느 쪽을 받을지는 제조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기로 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규격협회는 1998년 5월 11일에 통상산업대신(현 경제산업대신)으로부터 민간단체의 제1호로서 인정기관의 지정을 받았다. 단지, JIS마크 인정공장에 관한 관보공시, 생산(가공)조건 등 변경보고·각종신고서, 방문검사/검사결과의 통지, 인정취소 등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주무대신이 행한다.

둘째, 지정 검사기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래는 정부에 의해 지정된 「검사기관」이 정부가 지정한(관보로 공시함) 지정상품에 대해서 정부 대신으로 공시검사를 하여 왔으나 이것을 주무대신이 지정을 한 민간검사기관에 공시검사를 전면적으로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일본규격협회는 1998. 3.3일 통상산업대신(현 경제산업대신)의 지정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JIS(일본공업표준규격) 인증 절차는 국내의 한국표준협회에서도 받을 수 있다.

2. 단기소득 임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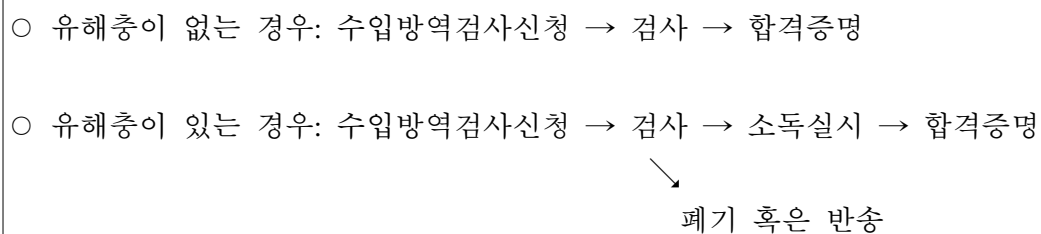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특별한 규제나 비관세 장벽은 없으며, 다만 일본내 수입시, 식물의 병충해 유입방지를 위한 식물방역, 식품위생법상에서 허가하는 잔류농약문제 등에 관한 식품위생 등의 통관 절차를 받게 된다.

1.1. 밤

1.1.1. 식물 방역

외국산 밤을 수입할 경우 식물 방역법에 의거 식물방역소에 「수입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특히 생밤의 경우 식물의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입항 후 즉시 수출국 정부기관의 검사증명서를 첨부해 수입식물검사신청서를 식물방역소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결과 병해충이 검출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훈증 또는 폐기처분된다.

<그림 1> 식물방역절차



1.1.2. 식품위생

판매목적으로 해외로부터 밤을 수입하는 경우 후생성 검역소 수입식품감시담당에 「식품등수입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밤의 경우 저장약품인 아프라톡신에 오염되는 일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며, 잔류농약 가운데 휘니치온은 0.2ppm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산 밤의 경우 깎밤으로 수입이 많은데 과거에는 보존료로 사용되는 EDTA, 이산화유황, 이산화이온 등이 과다 잔류되어 문제가 된 적은 있으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바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별도 수입규제사항은 없으나 식품위생법에 의거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1.2.1. 식물방역법

검역기관은 식물방역소(농림수산성 산하)로 외국으로부터 곤충, 벌레 등 유해동물의 세균이나 유해식물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수입농산물이 검역대상이 된다. 일본의 수입상사나 통관업체가 수입할 상품의 견본을 채취하여 지정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후 그 분석성적표를 통관시 제출하면 되는데 분석시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병충해 등이 발견되면 훈증소독 또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1.2.2. 식품위생법

검사기관은 식품위생감시사무소(후생성 산하)로 식품류 위생상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료품 등의 수입시 검사를 실시한다. 이 또한 수입자나

통관업체가 수입신청서를 식품위생감시사무소에 제출하면 이 사무소는 해당 수입품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로 심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 시험검사의 실시여부는 감시원의 판단이며 만일 검사결과 불합격되면 수입자체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후생성이 지정한 민간검사소의 검사결과로 검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식용(원료포함)의 건표고버섯을 수입할 경우 후생성검역소 수입식품감시 담당에 「식품등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소에서 심사·검사 후 식품위생법상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필」 印이 발부된다. 검사 결과 합격하면 동일 식품이 해당기간내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획수입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또한 농약의 잔류기준치가 정해져 있다.

1.3. 송이버섯

수입자유화품목으로 특별한 비관세장벽은 없으며, 식물방역법 및 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검역제도가 있다.

1.3.1. 식품위생법

검사기관은 식품위생감시사무소(후생성 산하)로 식품류 위생상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료품 등의 수입시 검사를 실시하며, 이 또한 수입자나 통관업체가 수입신청서를 식품위생감시사무소에 제출하면 이 사무소는 해당 수입품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로 심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 시험검사의 실시여부는 감시원의 판단이며 만일 검사결과 불합격되면 수입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후생성이 지정한 민간검사소의 검사결과로 검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1.3.2. 한국산 송이버섯의 검역

송이버섯은 매우 고가품이고 신선도 유지가 생명이므로 운송, 통관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해야 한다. 한국산 송이버섯의 경우는 현재까지 상기와 같은 검사나 검역을 실시한 적이 없을 정도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 수입상들의 의견이다. 이는 송이버섯의 소비형태상 요리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 단계에서 굵거나 삶아 인체에 유해한 병충해 등이 침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통관 관계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별첨 : JAS 규정에 의한 합판의 구분과 규격 규정

JAS 규정은 합판에 대해 보통 합판, 콘크리트형 궤(枕)용 합판(거푸집용 합판), 구조용 합판, 천연목화장합판, 특수가공화장 합판 등 5가지 품목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규격 및 판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접착의 정도는 사용 환경에 대응하여 상시 습윤상태에서의 사용을 특류, 단속적 습윤상태에서의 사용을 1류, 때때로 습윤상태에서 사용을 2류로 구분한다. 보통합판, 천연목화장합판, 특수가공화장합판은 1류 또는 2류, 콘크리트형 궤용합판은 1류, 구조용합판은 특류 또는 1류의 기준에 합격해야만 한다.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에 대해서는 보통합판은 표판의 품질에 따라 활엽수 단판의 경우는 1등, 2등으로 표시하고 침엽수 단판의 경우는 A~D까지의 부호로 표시한다. 콘크리트형 궤용합판도 표면의 품질에 따라 A~D까지의 부호로 표시하며, 구조용 합판에서도 구부림의 성능에 따라 1급 또는 2급으로 하고 판면(板面)의 품질은 A~D까지 표시한다. 천연목화장합판에서는 판면의 품질기준은 없으며, 특수가공화장합판은 표면성능에 관해 4가지 타입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통합판은 콘크리트형 궤용합판, 구조용합판, 천연목화장합판, 특수가공화장합판이외 합판으로서 접착정도는 1류, 2류, 판면의 품질은 1등, 2등, A,B,C,D의 조합(표판에 침엽수 단판을 이용한 경우),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F☆☆☆☆, F☆☆☆, F☆☆, F☆으로 구분한다.

콘크리트형 궤용합판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소정의 형태로 성형하기 위한 형틀로서 사용하는 합판(표면 또는 표양면에 도장 또는 오버레이를 실시한 것을 포함)으로서 접착정도는 1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 판면의 품질은 A, B, C, D의 조합,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F☆☆☆☆, F☆☆, F☆으로 구분한다.

구조용 합판은 건축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합판으로서

접착정도는 특류, 1류, 등급은 1급과 2급, 판면의 품질은 A, B, C, D의 조합,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F☆☆☆☆, F☆☆☆, F☆☆, F☆으로 구분한다.

천연목화장합판은 목재질 특유의 미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을 주목적으로서 표면 또는 표양면에 단판을 붙여 만든 판으로서 접착성능은 1류, 2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F☆☆☆☆, F☆☆☆, F☆☆, F☆으로 구분한다.

특수가공 화장합판은 콘크리트형 궤용 합판 또는 천연목화장합판 이외의 합판으로 표면 또는 표양면에 오버레이, 프린트, 도장 등의 가공을 실시한 합판으로서 접착성능은 1류, 2류, 표면성능은 F타입, FW타입, W타입, SW타입,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F☆☆☆☆, F☆☆☆, F☆☆, F☆으로 구분한다.

<JAS 인증 수수료>

구 분	비용(엔)	비고
1. 인증 심사와 관련 수수료		
1) 인증 심사료		
시스템 A	500,000	품목 추가시 1품목당 300,000엔 추가
시스템 B	300,000	품목 추가시 1품목당 180,000엔 추가
2) 제품 품질 조사료		
1회(구조용 집성재)	65,000	신청 제품에 따라 다름
3) 여비		
여비	430,000	1회(2명, 약 1주간)
항공비	60,000	Economic Class(2명, 한국)
계	490,000	
2. 인증 수수료		
	50,000	품목 추가시 1품목당 30,000엔 추가
3. 인증 후 수수료		
1) 인증등록료		
1~2개 품목	15,000	매월
	180,000	연간(월*12)
2~4개 품목	18,000	매월
5개 품목 이상	20,000	
2) 감사료		
시스템 A	240,000	매년, 1종류, 1회당
시스템 B	75,000	매년, 1종류, 1회당
감사에 필요한 여비	490,000	항공료, 여비
3) 인증기관 마크 수수료		
제품에 마크 표시	20	1m3당
	100,000	5,000m3 수출할 경우
합 계	2,115,000	

자료 : (사)한국합판보드협회 내부자료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구 분	H S K	일본 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 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1	0106310000	010631000	맹금류	8.0	13.1	Free	
2	0106320000	010632000	앵무류(패로트류,파라키프류,금강앵무류,유황앵무류를 포함)	8.0	13.1	Free	
3	0505100000	0505.10000	새의솜털및충전재용깃털	3.0	6.6	Free	
4	0505909000	0505.90000	기타(새의털)	5.0	6.6	Free	
5	0602109000	0602.10000	기타(뿌리없는 삽수·접수)	8.0	13.1	Free	
6	0602207010	0602.20000	밤나무	8.0	13.1	Free	
7	0602207020	0602.20000	호도나무	8.0	13.1	Free	
8	0602207030	0602.20000	잣나무	8.0	13.1	Free	
9	0602300000	0602.30000	철쭉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 여부 불문)	8.0	13.1	Free	
10	0602902011	0602.90090	소나무(분재용)	8.0	13.1	Free	
11	0602902019	0602.90090	소나무(기타)	8.0	13.1	Free	
12	0602902020	0602.90090	낙엽송	8.0	13.1	Free	
13	0602902030	0602.90090	삼나무	8.0	13.1	Free	
14	0602902040	0602.90090	편 백	8.0	13.1	Free	
15	0602902050	0602.90090	리기테다	8.0	13.1	Free	
16	0602902061	0602.90090	단풍나무(분재용)	8.0	13.1	Free	
17	0602902069	0602.90090	단풍나무(기타)	8.0	13.1	Free	
18	0602902071	0602.90090	소사나무(분재용)	8.0	13.1	Free	
19	0602902079	0602.90090	소사나무(기타)	8.0	13.1	Free	
20	0602902081	0602.90090	느티나무(분재용)	8.0	13.1	Free	
21	0602902089	0602.90090	느티나무(기타)	8.0	13.1	Free	
22	0602902091	0602.90090	기타 산림수(분재용)	8.0	13.1	Free	
23	0602902099	0602.90090	기타 산림수(기타)	8.0	13.1	Free	
24	0602909010	0602.90090	목단	8.0	13.1	Free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구 분	H S K	일본 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 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25	0602909020	0602.90090	동백	8.0	13.1	Free	
26	0604100000	0604.10000	이끼와 지의	8.0	13.1	3.0	
27	0604911010	0604.91000	은행잎(신선)	8.0	13.1	3.0	
28	0604911090	0604.91000	기타(은행잎이외/신선)	8.0	13.1	3.0	
29	0709520000	0709.52000	송 로(신선/냉장)	27.0	27.0	3.0	
30	0709591000	0709.59090	송이버섯(신선/냉장)	30.0	40.5	4.3	
31	0709592000	0709.59090	표고버섯(신선/냉장)	50.0	90.0	4.3	
32	0709901000	0709.90099	고사리(신선/냉장)	30.0	90.0	3.0	
33	0709902000	0709.90099	고 비(신선/냉장)	27.0	27.0	3.0	
34	0710803000	0710.80090	죽 순(냉동)	27.0	27.0	6.0	
35	0710805000	0710.80090	고사리(냉동)	30.0	90.0	6.0	
36	0710806000	0710.80090	송이버섯(냉동)	27.0	27.0	6.0	
37	0711591000	0711.59000	송 로(일시저장처리)	27.0	27.0	9.0	
38	0711903000	0711.90099	죽 순(일시저장처리)	27.0	27.0	9.0	
39	0711905010	0711.90093	고사리(일시저장처리)	30.0	90.0	12.0	
40	0711905020	0711.90099	고 비(일시저장처리)	27.0	27.0	9.0	
41	0712320000	0712.32000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건조한것)	30.0	40.5	9.0	
42	0712391010	0712.39090	송이버섯(건조)	30.0	40.5	9.0	
43	0712391020	0712.39090	표고버섯(건조)	30.0	90.0	9.0	
44	0712392000	0712.39090	송 로(건조)	27.0	27.0	9.0	
45	0712902010	0712.90090	고사리(건조)	30.0	90.0	9.0	
46	0712902094	0712.90090	고 비(건조)	30.0	54.0	9.0	
47	0714901010	0714.90120	취뿌리(냉동)	45.0	45.0	12.0	
48	0714901090	0714.90290	취뿌리(기타)	18.0	18.0	9.0	
49	0802110000	0802.11100 0802.11200	아몬드(미탈각)	8.0	45.0	Free 2.4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구 분	H S K	일본 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 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50	0802120000	0802.12100 0802.12200	아몬드(탈각)	8.0	21.0	Free 2.4	
51	0802210000	0802.21000	헤즐너트필버트(미탈각)	8.0	27.0	6.0	
52	0802220000	0802.22000	헤즐너트필버트(탈각)	8.0	27.0	6.0	
53	0802310000	0802.31000	호두(미탈각)	45.0	45.0	10.0	
54	0802320000	0802.32000	호두(탈각)	30.0	30.0	10.0	
55	0802401000	0802.40000	밤(미탈각)	219.4	219.4	9.6	
56	0802402000	0802.40000	밤(탈각)	219.4	219.4	9.6	
57	0802500000	0802.50000	피스타치오	30.0	45.0	Free	
58	0802901010	0802.90400	잣(미탈각)	566.8	566.8	12.0	
59	0802901020	0802.90400	잣(탈각)	566.8	566.8	12.0	
60	0802902010	0802.90400	은행(미탈각)	27.0	27.0	12.0	
61	0802902020	0802.90400	은행(탈각)	27.0	27.0	12.0	
62	0802909000	0802.90100 0802.90200 0802.90300 0802.90400	기타견과류	30.0	45.0	Free 5.0 4.5 12.0	
63	0810901000	0810.90290	감(신선)	50.0	67.5	6.0	
64	0810903000	0810.90290	대추(신선)	611.5	611.5	6.0	
65	0811901000	0811.90190 0811.90290	밤(냉동)	30.0	72.0	12.0 12.0	
66	0811902000	0811.90190 0811.90290	대추(냉동)	30.0	72.0	12.0 12.0	
67	0811903000	0811.90190 0811.90290	잣(냉동)	30.0	72.0	12.0 12.0	
68	0813401000	0813.40290	감(건조)	50.0	90.0	9.0	
69	0813402000	0813.40290	대추(건조)	611.5	611.5	9.0	
70	1106201000	1106.20200	사고 뿌리 또는 껍질의 것 (칩뿌리의 것)	8.0	19.7	21.3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구 분	H S K	일본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 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71	1106209000	1106.20110 1106.20190 1106.20200	사고·뿌리 또는 껍질의 것 (기타)	8.0	19.7	Free 15.0 21.3	
72	1209991010	1209.99000	참나무종자	0.0	0.0	Free	
73	1209991090	1209.99000	기타산림수종자	0.0	0.0	Free	
74	1209994000	1209.99000	잔디종자	0.0	0.0	Free	
75	1211909080	1211.90990	초피	8.0	18.0	2.5	
76	1301901000	1301.90090	올레오레진	3.0	13.1	Free	
77	1301909000	1301.90010 1301.90090	락, 검, 기타	3.0	13.1	Free Free	
78	1302193000	1302.19231 1302.19239	생칠	8.0	16.4	6.0 Free	
79	1401101000	1401.10000	맹종죽	8.0	9.0	8.5	
80	1401102000	1401.10000	청환죽	8.0	9.0	8.5	
81	1401109000	1401.10000	기타죽	8.0	9.0	8.5	
82	1401201000	1401.20000	등(조개거나 인발한 것)	8.0	13.1	Free	
83	1401209000	1401.20000	등(기타)	8.0	13.1	Free	
84	1401901000	1401.90290	취죽기껍질	8.0	13.1	3.0	
85	1401909000	1401.90100 1401.90210 1401.90290	기타 편조물용 식물성재료	8.0	13.1	8.5 3.0 3.0	
86	1402000000	1402.00000	충전용 식물성재료(케이폭, 식물성헤어 등)	3.0	6.6	Free	
87	1404101000	1404.10000	오배자(염색·유연용)	3.0	6.6	Free	
88	1404102000	1404.10000	아몬드핵(염색·유연용)	3.0	18.0	Free	
89	1404109000	1404.10000	기타 염색·유연용 식물성 원료	3.0	6.6	Free	
90	1404901000	1404.90200	조각용으로 사용되는 종자, 껍질 및 너트	3.0	9.0	Free	
91	1404902010	1404.90499	저피(수피)	3.0	6.6	6.0	
92	1404902020	1404.90499	삼아피(수피)	3.0	6.6	6.0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구 분	H S K	일본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93	1404902090	1404.90499	기타(수피)	3.0	6.6	6.0	
94	1404903010	1404.90499	떡갈잎	5.0	9.0	6.0	
95	1404903020	1404.90499	명개잎	5.0	9.0	6.0	
96	1404903090	1404.90499	기타식물잎	5.0	6.6	6.0	
97	1404909000	1404.90100 1404.90200 1404.90300 1404.90410 1404.90491 1404.90492 1404.90499	기타 식물성 생산품	3.0	6.6	Free Free 6.0 3.0 6.0 6.0 6.0	
98	2003200000	2003.20010 2003.20020	송로(조제저장처리)	20.0	30.0	9.6 10.5	
99	2003901000	2003.90100 2003.90210 2003.90220	표고버섯(조제저장처리)	20.0	47.2	13.4 9.6 10.5	
100	2003902000	2003.90100 2003.90210 2003.90220	송이버섯(조제저장처리)	20.0	47.2	13.4 9.6 10.5	
101	2005902000	2005.90190 2005.90210	죽 순(조제저장처리)	20.0	47.2	13.4 13.6	
102	2006001000	2006.00010	마롱글라세(설탕저장처리)	30.0	67.5	12.6	
103	2006009020	2006.00029	죽 순(설탕저장처리)	20.0	47.2	18.0	
104	2008191000	2008.19111 2008.19192 2008.19199 2008.19219	밤(조제저장처리)	50.0	90.0	21.0 11.0 16.8 10.0	
105	2106909060	2106.90299	도토리분	8.0	54.0	15.0	
106	2208702000	2208.70000	오가피주	20.0	30.0	Free	
107	2308001000	2308.00000	도토리(사료용, 식물성 웨이스트 등)	5.0	90.0	Free	
108	2308002000	2308.00000	마로니에열매(사료용, 식물성 웨이스트 등)	5.0	13.1	Free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구 분	H S K	일본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 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109	2514001000	2514.00000	슬레이트(조상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0	5.0	Free	
110	2514009000	2514.00000	슬레이트(기타)	3.0	5.0	Free	
111	2516110000	2516.11000	화강암(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0	5.0	Free	
112	2516120000	2516.12000	화강암(직·정사각형 블록상 또는 슬랩상)	3.0	5.0	Free	
113	2516210000	2516.21000	사암(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0	5.0	Free	
114	2516220000	2516.22000	사암(직·정사각형 블록상 또는 슬랩상)	3.0	5.0	Free	
115	2516901000	2516.90000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0	5.0	Free	
116	2516909000	2516.90000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기타)	3.0	5.0	Free	
117	2517491000	2517.49000	현무암(입상·파편상·분상)	3.0	5.0	Free	
118	2517492000	2517.49000	화강암(입상·파편상·분상)	3.0	5.0	Free	
119	2517499000	2517.49000	기타(입상·파편상·분상)	3.0	5.0	Free	
120	3806101000	3806.10000	로 진	6.5	6.5	Free	
121	3807009010	3807.00000	목초액	6.5	6.5	Free	
122	4401100000	4401.10000	멜나무	2.0	2.0	Free	
123	4401210000	4401.21000	칩상 또는 삭편상(침엽수)	2.0		Free	
124	4401220000	4401.22000	칩상 또는 삭편상(활엽수)	0.0		Free	
125	4401300000	4401.30000	톱밥 또는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2.0	2.0	Free	
126	4402001000	4402.00010 4402.00090	성형목탄	2.0	2.0	Free Free	
127	4402009000	4402.00010 4402.00090	기타목탄	2.0	2.0	Free Free	
128	4403101000	4403.10100 4403.10230	열대산목재(페인트, 착색, 방부처리 원목)	0.0	2.0	Free Free	
129	4403102000	4403.10210 4403.10220 4403.10230	활엽수(페인트, 착색, 방부처리 원목)	0.0	2.0	Free Free Free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구 분	H S K	일본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 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130	4403109000	4403.10100	침엽수(페인트, 착색, 방부처리 원목)	0.0	2.0	Free	
131	4403201000	4403.20100 4403.20095 4403.20097	삼나무(침엽수 원목)	0.0		Free Free Free	
132	4403202010	4403.20800	더글러스퍼(침엽수 원목)	0.0		Free	
133	4403202020	4403.20600	햄록(침엽수 원목)	0.0		Free	
134	4403203000	4403.20091	적송(침엽수 원목)	0.0		Free	
135	4403204000	4403.20300	전나무(침엽수 원목)	0.0		Free	
136	4403205000	4403.20099	낙엽송(침엽수 원목)	0.0		Free	
137	4403207000	4403.20099	가문비나무(침엽수 원목)	0.0		Free	
138	4403208000	4403.20091	라디에타소나무(침엽수 원목)	0.0		Free	
139	4403209000	4403.20010 4403.20091 4403.20092 4403.20093 4403.20094 4403.20095 4403.20096 4403.20097 4403.20098 4403.20099	기타(침엽수 원목)	0.0		Free Free Free Free Free Free Free Free Free Free	
140	4403410000	4403.41010 4403.41090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메란티, 메란티바카우(열대산 원목)	0.0	2.0	Free Free	
141	4403491000	4403.49600	화이트라왕, 화이트메란티, 화이트세라야, 엘로메란티, 아란(열대산 원목)	0.0	2.0	Free	
142	4403492010	4403.49291	티 크	0.0	2.0	Free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구 분	H S K	일본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 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143	4403492020	4403.49211 4403.49219	케루잉(열대산 원목)	0.0	2.0	Free Free	
144	4403492030	4403.49211 4403.49219	카폴(열대산 원목)	0.0	2.0	Free Free	
145	4403492040	4403.49299	제루통(열대산 원목)	0.0	2.0	Free	
146	4403492090	4403.49299	기 타	0.0	2.0	Free	
147	4403493000	4403.49300	오꾸메, 오베체, 사빨리, 시뽀, 아까쥬다푸리케, 마코레 및 이로코(열대산 원목)	0.0	2.0	Free	
148	4403494000	4403.49600	티아마, 만소니아, 이롬바, 디 베토우, 림바, 아조베(열대산 원목)	0.0	2.0	Free	
149	4403495000	4403.49600	마호가니 및 발사	0.0	2.0	Free	
150	4403499000	4403.49110 4403.49190 4403.49600	기타	0.0	2.0	Free Free Free	
151	4403910000	4403.91000	참나무류(원목)	0.0	2.0	Free	
152	4403920000	4403.92000	너도밤나무류(원목)	0.0	2.0	Free	
153	4403991010	4403.99310	자단(원목)	0.0	2.0	Free	
154	4403991020	4403.99310	흑단(원목)	0.0	2.0	Free	
155	4403991040	4403.99390	물푸레나무(원목)	0.0	2.0	Free	
156	4403991050	4403.99390	호도나무(원목)	0.0	2.0	Free	
157	4403991090	4403.99390	기타(황양, 화리, 철도목, 헝 코리 원목)	0.0	2.0	Free	
158	4403992000	4403.99390	리그넘바이트(원목)	0.0	2.0	Free	
159	4403993010	4403.99390	사시나무(원목)	0.0	2.0	Free	
160	4403993020	4403.99390	포플러(원목)	0.0	2.0	Free	
161	4403993030	4403.99390	단풍나무(원목)	0.0	2.0	Free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구 분	H S K	일본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 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162	4403993040	4403.99390	느릅나무(원목)	0.0	2.0	Free	
163	4403993050	4403.99390	자작나무(원목)	0.0	2.0	Free	
164	4403993060	4403.99390	피나무(원목)	0.0	2.0	Free	
165	4403994000	4403.99190 4403.99110	오동나무(원목)	0.0		Free	
166	4403999011	4403.99390	말라스(열대산 원목)	0.0	2.0	Free	
167	4403999012	4403.99390	타운(열대산 원목)	0.0	2.0	Free	
168	4403999019	4403.99310 4403.99390	기타(열대산원목, 앞에서 계 기한 것 제외)	0.0	2.0	Free	
169	4403999090	4403.99210 4403.99290 4403.99310 4403.99390	기타 원목	0.0	2.0	Free	
170	4404102000	4404.10210	목재의 봉(침엽수류)	5.0	10.0	5.0	
171	4404109000	4404.10100 4404.10290	기타(침엽수류)	5.0	10.0	Free 7.5	
172	4404202000	4404.20210	목재의 봉(활엽수류)	5.0	10.0	5.0	
173	4404209000	4404.20100 4404.20290	기타(활엽수류)	5.0	10.0	5.0 7.5	
174	4405000000	4405.00000	목모와 목분	5.0	10.0	2.5	
175	4406100000	4406.10000	주약 미처리 궤도용 침목	5.0	10.0	Free	
176	4406900000	4406.90000	기타(궤도용 침목)	5.0	10.0	Free	
177	4407101000	4407.10310 4407.10361 4407.10369	삼나무(침엽수류 제재목)	5.0	10.0	Free Free Free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illegible]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구 분	H S K	일본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 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185	4407241000	4407.24000	비롤라(열대산 제재목)	5.0	10.0	Free	
186	4407242000	4407.24000	마호가니(열대산 제재목)	5.0	10.0	Free	
187	4407243000	4407.24000	임부아(열대산 제재목)	5.0	10.0	Free	
188	4407244000	4407.24000	발사(열대산 제재목)	5.0	10.0	Free	
189	4407250000	4407.25010 4407.25090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 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열대 산 제재목)	5.0	10.0	6.0 6.0	
190	4407260000	4407.26010 4407.26090	화이트라왕, 화이트메란티, 화 이트세라야, 엘로메란티 및 아란(열대산 제재목)	5.0	10.0	6.0 6.0	
191	4407291000	4407.29290	케루잉, 라민, 카폴, 종콩, 멜 바우, 제루통 및 캄파스(열대 산 제재목)	5.0	10.0	Free	
192	4407292000	4407.29215	티크(열대산 제재목)	5.0	10.0	Free	
193	4407293000	4407.29290	오꾸메, 오베체, 사빨리, 시뽀, 아까쥬다푸리케, 마꼬레, 이로 코, 티아마, 만소니아, 이롬바, 디벤토우, 림바 및 아조베(열 대산 제재목)	5.0	10.0	Free	
194	4407299000	4407.29110 4407.29190 4407.29290	기타(열대산 제재목)	5.0	10.0	6.0 6.0 Free	
195	4407910000	4407.91000	참나무류(제재목)	5.0	10.0	Free	
196	4407920000	4407.92000	너도밤나무류(제재목)	5.0	10.0	Free	
197	4407991010	4407.99100	자단(제재목)	5.0	10.0	Free	
198	4407991020	4407.99100	흑단(제재목)	5.0	10.0	Free	
199	4407991030	4407.99500	물푸레나무(제재목)	5.0	10.0	Free	
200	4407991040	4407.99500	호도나무(제재목)	5.0	10.0	Free	
201	4407991090	4407.99500	기타(황양, 화리, 철도목, 학 코리의 제재목)	5.0	10.0	Free	
202	4407992000	4407.99400	리그넘바이트(제재목)	5.0	10.0	Free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구 분	H S K	일본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 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203	4407993010	4407.99500	사시나무(제재목)	5.0	10.0	Free	
204	4407993020	4407.99500	포플리(제재목)	5.0	10.0	Free	
205	4407993030	4407.99500	단풍나무(제재목)	5.0	10.0	Free	
206	4407993040	4407.99500	느릅나무(제재목)	5.0	10.0	Free	
207	4407993050	4407.99500	자작나무(제재목)	5.0	10.0	Free	
208	4407993060	4407.99500	피나무(제재목)	5.0	10.0	Free	
209	4407994000	4407.99210 4407.99290	오동나무(제재목)	5.0	10.0	Free Free	
210	4407999010	4407.99500	열대산 제재목(앞에서 계기한 것 제외)	5.0	10.0	Free	
211	4407999090	4407.99310 4407.99390 4407.99100 4407.99500	기타 제재목	5.0	10.0	6.0 6.0 Free Free	
212	4408106000	4408.10110 4408.10190	적층목제품을 평삭한 베니어 용 등(침엽수류 단판 등)	3.0		6.0 6.0	
213	4408109010	4408.10210 4408.10290	삼나무(침엽수류 단판, 합판 용 단판, 기타 목재)	3.0	10.0	5.0 5.0	
214	4408109020	4408.10210 4408.10290	미송(침엽수류 단판, 합판용 단판, 기타 목재)	3.0	10.0	5.0 5.0	
215	4408109030	4408.10210 4408.10290	적송(침엽수류 단판, 합판용 단판, 기타 목재)	3.0	10.0	5.0 5.0	
216	4408109040	4408.10210 4408.10290	전나무(침엽수류 단판, 합판 용 단판, 기타 목재)	3.0	10.0	5.0 5.0	
217	4408109050	4408.10210 4408.10290	낙엽송(침엽수류 단판, 합판 용 단판, 기타 목재)	3.0	10.0	5.0 5.0	
218	4408109060	4408.10210 4408.10290	가문비나무(침엽수류 단판, 합판용 단판, 기타 목재)	3.0	10.0	5.0 5.0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구 분	H S K	일본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 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219	4408109070	4408.10210 4408.10290	라디에타소나무(침엽수류 단판, 합판용 단판, 기타 목재)	3.0	10.0	5.0 5.0	
220	4408109090	4408.10010 4408.10210 4408.10290	기타(침엽수류 단판, 합판용 단판, 기타 목재)	3.0	10.0	6.0 5.0 5.0	
221	4408313000	4408.31100 4408.31190	적층목제품을 평삭한베니어용 등(열대산 목재의 단판 등)	3.0		6.0 6.0	
222	4408319010	4408.31210 4408.31290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 메란티(열대산 목재의 단판 등)	3.0	10.0	5.0 5.0	
223	4408319020	4408.31210 4408.31290	메란티바카우(열대산 목재의 단판 등)	3.0	10.0	5.0 5.0	
224	4408396000	4408.39110 4408.39120 4408.39200 4408.39510 4408.39520 4408.39410 4408.39420	적층목제품을 평삭한 베니어 용 등(열대산 목재의 단판 등)	3.0		6.0 6.0 Free 6.0 6.0 6.0	
225	4408399010	4408.39590	티크(열대산 목재의 단판 등)	3.0	10.0	Free	
226	4408399020	4408.39910 4408.39990	화이트라왕(열대산 목재의 단판 등)	3.0	10.0	5.0 5.0	
227	4408399030	4408.39910 4408.39990	시뽀, 오꾸메, 오베체, 아까쥬 다푸리케, 사빨리(열대산 목재의 단판 등)	3.0	10.0	5.0 5.0	
228	4408399040	4408.39910 4408.39990	림바(열대산 목재의 단판 등)	3.0	10.0	5.0 5.0	
229	4408399050	4408.39910 4408.39990	마호가니(열대산 목재의 단판 등)	3.0	10.0	5.0 5.0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구 분	H S K	일본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 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230	4408399090	4408.39200 4408.39910 4408.39990	기타(열대산 목재의 단판 등)	3.0	10.0	Free 5.0 5.0	
231	4408901000	4408.90110 4408.90120 4408.90510 4408.90520	적층목제품을 평삭한 베니어 용 등(열대산 목재의 단판 등)	3.0		6.0 6.0 6.0 6.0	
233	4408909120	4408.90190	흑단(단판 등)	3.0	10.0	5.6	
234	4408909130	4408.90610 4408.90690	물푸레나무(단판 등)	3.0	10.0	5.6	
235	4408909140	4408.90610 4408.90690	호도나무(단판 등)	3.0	10.0	5.0 5.0	
236	4408909190	4408.90610 4408.90690	기타	3.0	10.0	5.0 5.0	
237	4408909200	4408.90610 4408.90690	리그넘바이트(단판 등)	3.0	10.0	5.0 5.0	
238	4408909310	4408.90610 4408.90690	사시나무(단판 등)	3.0	10.0	5.0 5.0	
239	4408909320	4408.90610 4408.90690	포폴리(단판 등)	3.0	10.0	5.0 5.0	
240	4408909330	4408.90610 4408.90690	단풍나무(단판 등)	3.0	10.0	5.0 5.0	
241	4408909340	4408.90610 4408.90690	느릅나무(단판 등)	3.0	10.0	5.0 5.0	
242	4408909350	4408.90610 4408.90690	자작나무(단판 등)	3.0	10.0	5.0 5.0	
243	4408909360	4408.90610 4408.90690	피나무(단판 등)	3.0	10.0	5.0 5.0	
244	4408909400	4408.90610 4408.90690	오동나무(단판 등)	3.0	10.0	5.0 5.0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구 분	H S K	일본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 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245	4408909911	4408.90610 4408.90690	바보엔	3.0	10.0	5.0 5.0	
246	4408909919	4408.90610 4408.90690	기타(열대산 목재의 단판 등 으로 앞에서 제기한 것 제외)	3.0	10.0	5.0 5.0	
247	4408909990	4408.90190 4408.90610 4408.90690	기타	3.0	10.0	5.6 5.0 5.0	
248	4409100000	4409.10100 4409.10200 4409.10310 4409.10320	침엽수류(성형한 것)	8.0	13.0	3.7 3.6 5.0 Free	
249	4409200000	4409.20110 4409.20190 4409.20200 4409.20310 4409.20320 4409.20340	활엽수류(성형한 것)	8.0	13.0	7.5 7.5 3.6 Free Free Free	
250	4410210000	4410.21010 4410.21020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보드 및 웨이퍼보드(미가공)	8.0		6.0 5.0	
251	4410290000	4410.29010 4410.29020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보드 및 웨이퍼보드(기타)	8.0		6.0 5.0	
252	4410310000	4410.31010 4410.31020	기타 목재의 것(미가공)	8.0		6.0 5.0	
253	4410320000	4410.32010 4410.32020	기타 목재의 것(멜라민종이피 복)	8.0		6.0 5.0	
254	4410330000	4410.33010 4410.33020	기타 목재의 것(플라스틱라미 네이트피복)	8.0		6.0 5.0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구 분	H S K	일본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 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255	4410390000	4410.39010 4410.39020	기타	8.0		6.0 5.0	
256	4410900000	4410.90010 4410.90020	기타	8.0		7.9 6.6	
257	4411110000	4411.11000	섬유판(0.8g/cm ³ 초과)	8.0		2.6	
258	4411191010	4411.19000	마루판	8.0		2.6	
259	4411191090	4411.19000	기타	8.0		2.6	
260	4411199000	4411.19000	기타	8.0		2.6	
261	4411210000	4411.21000	섬유판(0.5-0.8g/cm ³)	8.0		2.6	
262	4411291010	4411.29000	마루판	8.0		2.6	
263	4411291090	4411.29000	기타	8.0		2.6	
264	4411299000	4411.29000	기타	8.0		2.6	
265	4411310000	4411.31000	섬유판(0.35-0.5g/cm ³)	8.0		2.6	
266	4411390000	4411.39000	섬유판(기타)	8.0		2.6	
267	4411910000	4411.91000	기타 섬유판	8.0		2.6	
268	4411990000	4411.99000	기타 섬유판(기타)	8.0		2.6	
269	4412131000	4412.13111 4412.13119 4412.13121 4412.13211 4412.13219 4412.13221	열대산 합판(두께3.2mm미만)	8.0		10.0 10.0 10.0 6.0 6.0 6.0	
270	4412132000	4412.13111 4412.13119 4412.13122 4412.13211 4412.13219 4412.13229	열대산 합판(3.2mm-4mm)	8.0		10.0 10.0 10.0 6.0 6.0 6.0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구 분	H S K	일본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 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271	4412133000	4412.13111	열대산 합판(4mm-6mm)	8.0		10.0	
		4412.13119				10.0	
		4412.13122				10.0	
		4412.13211				6.0	
		4412.13219				6.0	
		4412.13229				6.0	
272	4412134000	4412.13111	열대산 합판(6mm-12mm)	13.0		10.0	
		4412.13119				10.0	
		4412.13123				8.5	
		4412.13211				6.0	
		4412.13219				6.0	
		4412.13231				6.0	
273	4412135000	4412.13111	열대산 합판(12mm-15mm)	13.0		10.0	
		4412.13119				10.0	
		4412.13125				8.5	
		4412.13211				6.0	
		4412.13219				6.0	
		4412.13233				6.0	
274	4412136000	4412.13111	열대산 합판(15mm이상)	13.0		10.0	
		4412.13119				10.0	
		4412.13125				8.5	
		4412.13130				8.5	
		4412.13211				6.0	
		4412.13219				6.0	
		4412.13233				6.0	
		4412.13240				6.0	
275	4412141000	4412.14011	활엽수 합판(두께3.2mm미만)	8.0		6.0	
		4412.14019				6.0	
		4412.14031				6.0	
276	4412142000	4412.14011	활엽수 합판(3.2mm-4mm)	8.0		6.0	
		4412.14019				6.0	
		4412.14039				6.0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구 분	H S K	일본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 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277	4412143000	4412.14011 4412.14019 4412.14039	활엽수 합판(4mm-6mm)	8.0		6.0 6.0 6.0	
278	4412144000	4412.14011 4412.14019 4412.14041	활엽수 합판(6mm-12mm)	13.0		6.0 6.0 6.0	
279	4412145000	4412.14011 4412.14019 4412.14042	활엽수 합판(12mm-15mm)	13.0		6.0 6.0 6.0	
280	4412146000	4412.14011 4412.14019 4412.14042 4412.14049	활엽수 합판(15mm이상)	13.0		6.0 6.0 6.0	
281	4412191011	4412.19011 4412.19019 4412.19021	침엽수 합판(두께6mm미만)	8.0		6.0 6.0 6.0	
282	4412191019	4412.19011 4412.19019 4412.19022	침엽수 합판(기타)	13.0		6.0 6.0 6.0	
283	4412191091	4412.19011 4412.19019 4412.19021	기타 합판(두께6mm미만)			6.0 6.0 6.0	
284	4412191099	4412.19011 4412.19019 4412.19022	기타 합판(기타)	13.0		6.0 6.0 6.0	
285	4412220000	4412.22010 4412.22090	기타 합판(적어도 한개의 프 라이가 이류소호주 1에 계기 한 열대산 목재의 것)	13.0		6.0 6.0	
286	4412230000	4412.23010 4412.23090	합판(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 드로 된 것)	13.0		6.0 6.0	
287	4412291000	4412.29090	기타 합판	13.0		6.0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구 분	H S K	일본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 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288	4412292010	4412.29010	마루판	13.0		6.0	
289	4412292090	4412.29010	기타(적층목제품)	13.0		6.0	
290	4412920000	4412.92010 4412.92090	기타 합판(적어도 한개의 프 라이가 이류소호주 1에 게기 한 열대산 목재의 것)	13.0		6.0 6.0	
291	4412930000	4412.93010 4412.93090	기타 합판(적어도 한층은 파 티클보드로 된 것)	13.0		6.0 6.0	
292	4412991010	4412.90090	침엽수 합판	13.0		6.0	
293	4412991090	4412.90090	기타 합판	13.0		6.0	
294	4412992010	4412.99010	마루판	13.0		6.0	
295	4412992090	4412.99010	기타 적층목제품	13.0		6.0	
296	4413000000	4413.00000	고밀도화 목재	8.0	13.0	7.0	
297	4414000000	4414.00000	목재의 그림틀, 사진틀 등	8.0	13.0	3.2	
298	4415100000	4415.10000	케이스, 상자 및 포장용기 등	8.0	13.0	2.8	
299	4415200000	4415.20000	페렛, 박스페렛 등	8.0	13.0	3.9	
300	4416000000	4416.00000	목재의 통 및 기타용기 등	8.0	13.0	2.2	
301	4417000000	4417.00010 4417.00020	목재의 공구 등	8.0	13.0	2.2 2.8	
302	4418100000	4418.10000	창문과 창문틀	8.0	13.0	Free	
303	4418200000	4418.20000	문, 문틀 및 문지방	8.0	13.0	Free	
304	4418300000	4418.30000	과아컷트패널	8.0	13.0	2.0	
305	4418400000	4418.40000	콘크리트구조물 작업용의 섯 터	8.0	13.0	2.0	
306	4418500000	4418.50000	지붕이는 판자	8.0	13.0	2.9	
307	4418901000	4418.90100	셀루라우드패널	8.0	13.0	5.0	
308	4418909000	4418.90221 4418.90222 4418.90229	기타 건축용 목재건구와 목공 품	8.0	13.0	2.0 3.9 3.9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구 분	H S K	일본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 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309	4419001000	4419.00020	대접(공기)	8.0	13.0	2.7	
310	4419002010	4419.00020	대나무 젓가락	8.0		2.7	
311	4419002090	4419.00020	기타 젓가락	8.0		2.7	
312	4419009000	4419.00010 4419.00020	기타 목재의 식탁용품 및 주 방용품	8.0	13.0	4.7 2.7	
313	4420101000	4420.10000	목재의 조상	8.0	13.0	Free	
314	4420109000	4420.10000	목재의 기타 장식품	8.0	13.0	Free	
315	4420901000	4420.90010	기목 세공과 상감 세공한 목 재	8.0	13.0	10.0	
316	4420902010	4420.90090	담배상자(칠기제품)	8.0	13.0	2.7	
317	4420902020	4420.90090	신변장식용품 상자(칠기제품)	8.0	13.0	2.7	
318	4420902030	4420.90090	제94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가구(칠기제품)	8.0	13.0	2.7	
319	4420902090	4420.90090	기타(칠기제품)	8.0	13.0	2.7	
320	4420909010	4420.90090	담배 및 신변장식용품상자	8.0	13.0	2.7	
321	4420909020	4420.90090	제94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가구	8.0	13.0	2.7	
322	4420909090	4420.90090	기타	8.0	13.0	2.7	
323	4421100000	4421.10000	옷걸이	8.0	13.0	3.9	
324	4421901010	4421.90010 4421.90099	보 빈	8.0	13.0	3.8 2.9	
325	4421901090	4421.90010 4421.90099	스폴, 콥 등	8.0	13.0	3.8 2.9	
326	4421902000	4421.90010 4421.90099	성냥개비의 나무 등	8.0	13.0	3.8 2.9	
327	4421903000	4421.90010 4421.90099	이쑤시개	8.0	13.0	3.8 2.9	
328	4421904000	4421.90010 4421.90099	포장용의 목재블럭	8.0	13.0	3.8 2.8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구 분	H S K	일본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 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329	4421905000	4421.90010 4421.90092	부채 및 이들의 살 등	8.0	13.0	3.8 3.9	
330	4421909000	4421.90091 4421.90020 4421.90010 4421.90099	기타 목제품	8.0	13.0	10.0 Free 3.9 2.9	
331	4501100000	4501.10000	천연코르크(조상, 가공품)	8.0	13.0	Free	
332	4501900000	4501.90000	기타(조상, 가공품)	8.0	13.0	Free	
333	4502000000	4502.00000	천연코르크(반제품)	8.0	13.0	Free	
334	4503100000	4503.10000	마 개	8.0	13.0	Free	
335	4503900000	4503.90000	기타(천연코르크 제품)	8.0	13.0	Free	
336	4504100000	4504.10000	블록, 판, 쉬트 등(응집코르크와 제품)	8.0	13.0	Free	
337	4504900000	4504.90000	기타(응집코르크와 제품)	8.0	13.0	Free	
338	4602101010	4602.10023	핸드백(대나무 제품)	8.0	13.0	7.9	
339	4602101020	4602.10023	바구니(대나무 제품)	8.0	13.0	7.9	
340	4602101030	4602.10023	쟁반, 접시, 기타주방용품 등 (대나무 제품)	8.0	13.0	7.9	
341	4602101090	4602.10010 4602.10021 4602.10023	기타(대나무 제품)	8.0	13.0	3.4 3.3 7.9	
342	4602102000	4602.10010 4602.10021	등나무 제품	8.0	13.0	3.4 3.3	
343	4602109000	4602.10010 4602.10021 4602.10022 4602.10029	기타(식물성 재료의 세공품)	8.0	13.0	3.4 3.3 7.9 7.9	
344	4814301010	4814.30000	갈포 벽지(미염색)	0.0	0.0	Free	

부표 1. 한·일 임산물 세번별 관세율 총괄표 <계속>

구 분	H S K	일본유사코드	품목명(한글)	한국		일본	비 고
				실행 세율	양허 세율	실행 세율	
345	4814301020	4814.30000	갈포 벽지(염색)	0.0	0.0	Free	
346	4814309000	4814.30000	기타 벽지	0.0	0.0	Free	
347	6802230000	6802.23000	화강암(비석용 또는 건축용)	8.0	13.0	Free	
348	6802290000	6802.29000	기타석(비석용 또는 건축용)	8.0	13.0	Free	
349	6802930000	6802.93000	화강암(기타)	8.0	13.0	Free	
350	6802990000	6802.99000	기타석(기타)	8.0	13.0	Free	
351	6803001000	6803.00000	벼루(가공 슬레이트 제품)	8.0	13.0	Free	
352	6803009000	6803.00000	기타(가공 슬레이트 제품)	8.0	13.0	Free	
353	6815990000	6815.99010 6815.99090	기타 석제품	8.0	-	Free	
354	9406001000	9406.00010 9406.00090	조립식 건축물(목재의 것)	8.0	13.0	Free	

부표 2. 일본 시장내 한국농산물의 MCA지수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년간 평균
1	010631000	-	-	-	-	-	-
2	010632000	-	-	-	-	-	-
3	050510000	0.050	0.014	-	-	-	0.032
4	050590000	-	0.594	1.119	-	-	0.857
5	060210000	0.070	0.013	-	-	-	0.041
6	060220000	0.766	7.170	3.341	12.695	6.226	6.040
7	060230000	-	-	-	0.356	-	0.356
8	060290090	0.120	0.349	0.493	0.605	0.880	0.489
9	060410000	0.162	-	-	-	-	0.162
10	060491000	0.005	0.011	0.005	0.002	-	0.006
11	070952000	-	-	-	-	-	-
12	070959090	-	-	-	2.290	0.282	1.286
13	070990099	0.191	0.523	0.144	1.033	0.507	0.480
14	071080090	0.020	0.011	0.067	0.059	0.051	0.042
15	071159000	-	-	-	-	-	-
16	071190093	-	-	-	-	-	-
17	071190099	0.077	0.101	0.116	0.079	0.144	0.103
18	071232000	-	-	-	0.049	-	0.049
19	071239090	-	-	-	0.771	1.569	1.170
20	071290090	0.160	0.225	0.103	0.153	0.289	0.186
21	071490120	-	-	-	-	-	-
22	071490290	1.190	0.235	0.048	0.102	0.031	0.321
23	080211100	-	-	-	-	-	-
24	080211200	-	-	-	-	-	-
25	080212100	-	-	-	-	-	-
26	080212200	-	-	-	-	0.048	0.048
27	080221000	-	-	-	-	-	-
28	080222000	-	-	-	-	-	-
29	080231000	-	-	-	-	-	-
30	080232000	-	-	-	-	-	-

부표 2. 일본 시장내 한국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년간 평균
31	080240000	12.853	17.445	20.092	21.011	17.658	17.812
32	080250000	-	-	-	-	-	-
33	080290100	-	-	-	-	-	-
34	080290200	-	-	-	-	-	-
35	080290300	-	-	-	-	-	-
36	080290400	1.815	-	0.019	0.024	-	0.619
37	081090290	-	0.088	-	-	-	0.044
38	081190190	1.248	1.184	2.404	-	-	1.612
39	081190290	0.599	0.683	0.627	0.860	1.116	0.777
40	081340290	-	-	-	-	-	-
41	110620110	-	-	-	-	-	-
42	110620190	-	-	-	-	-	-
43	110620200	-	-	0.243	0.347	-	0.295
44	120999000	3.085	3.183	2.991	3.614	3.813	3.337
45	121190990	1.544	1.379	1.587	1.187	1.241	1.388
46	130190010	-	-	-	-	-	-
47	130190090	-	-	0.066	-	-	0.022
48	130219231	-	-	-	-	-	-
49	130219239	12.229	11.857	8.817	8.871	9.262	10.207
50	140110000	0.391	0.358	0.326	0.227	0.256	0.312
51	140120000	-	-	-	-	-	-
52	140190100	-	-	-	-	-	-
53	140190210	-	-	-	-	-	-
54	140190290	0.252	-	-	-	-	0.252
55	140200000	-	-	-	-	-	-
56	140410000	-	-	0.092	-	0.104	0.098
57	140490100	-	-	-	-	-	-
58	140490200	-	0.166	0.030	-	-	0.098
59	140490300	-	0.046	-	-	-	0.046
60	140490410	-	-	-	-	-	-

부표 2. 일본 시장내 한국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년간 평균
61	140490491	-	-	-	-	-	-
62	140490492	13.354	5.544	6.842	-	-	8.580
63	140490499	2.552	2.278	2.071	1.582	0.963	1.889
64	200320010	-	-	-	-	-	-
65	200320020	-	-	-	-	-	-
66	200390100	-	-	-	-	-	-
67	200390210	-	-	-	0.031	-	0.031
68	200390220	-	-	-	-	0.055	0.055
69	200590190	-	0.456	0.557	0.092	0.166	0.318
70	200590210	0.009	-	-	-	0.023	0.016
71	200600010	-	-	-	-	-	-
72	200600029	-	0.038	-	-	-	0.038
73	200819111	5.730	2.333	1.992	-	-	3.352
74	200819192	-	-	-	-	-	-
75	200819199	13.526	12.599	7.667	5.761	6.869	9.284
76	200819219	-	-	-	-	-	-
77	210690299	0.207	0.248	0.257	0.212	0.560	0.297
78	220870000	0.297	0.254	0.388	0.212	0.449	0.320
79	230800000	-	-	-	0.005	-	0.005
80	251400000	-	-	-	-	-	-
81	251611000	2.281	2.291	2.138	2.197	1.705	2.122
82	251612000	0.482	1.070	0.409	1.881	1.692	1.107
83	251621000	1.041	-	-	-	-	1.041
84	251622000	-	-	-	-	-	-
85	251690000	1.698	1.011	0.066	0.090	0.124	0.598
86	251749000	0.494	0.040	0.120	0.192	0.931	0.355
87	380610000	-	-	0.021	-	0.010	0.016
88	380700000	-	0.051	0.225	-	-	0.138
89	440110000	-	-	-	-	-	-
90	440121000	-	-	0.000	-	-	0.000

부표 2. 일본 시장내 한국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년간 평균
91	440122000	-	-	0.000	-	-	0.000
92	440130000	0.092	0.073	0.037	-	-	0.068
93	440200010	-	-	-	0.630	-	0.630
94	440200090	0.114	0.115	0.134	0.280	0.183	0.165
95	440310100	-	-	-	-	-	-
96	440310210	-	-	-	-	-	-
97	440310220	-	-	-	-	-	-
98	440310230	-	-	-	0.626	-	0.626
99	440320010	-	-	-	-	-	-
100	440320091	-	-	-	-	-	-
101	440320092	-	-	-	-	-	-
102	440320093	-	-	-	-	-	-
103	440320094	-	-	-	-	-	-
104	440320095	0.007	0.003	-	-	-	0.005
105	440320096	-	-	-	-	-	-
106	440320097	-	-	-	-	-	-
107	440320098	-	-	-	-	-	-
108	440320099	-	-	-	-	-	-
109	440341010	-	-	-	-	-	-
110	440341090	-	-	-	-	-	-
111	440349110	-	-	-	-	-	-
112	440349190	-	-	-	-	-	-
113	440349211	-	-	-	-	-	-
114	440349219	-	-	-	-	-	-
115	440349291	-	-	-	-	-	-
116	440349299	-	-	-	-	-	-
117	440349300	-	-	-	-	-	-
118	440349600	-	-	-	-	-	-
119	440391000	-	-	-	-	-	-
120	440392000	-	-	-	-	-	-

부표 2. 일본 시장내 한국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년간 평균
121	440399110	-	-	-	-	-	-
122	440399190	-	-	-	-	-	-
123	440399210	-	-	-	-	-	-
124	440399290	-	-	-	-	-	-
125	440399310	-	-	-	-	-	-
126	440399390	0.078	-	-	0.016	-	0.047
127	440410100	-	-	-	-	-	-
128	440410210	-	-	-	-	-	-
129	440410290	-	-	-	-	-	-
130	440420100	-	-	-	-	-	-
131	440420210	-	-	-	-	-	-
132	440420290	-	-	-	-	-	-
133	440500000	-	-	-	-	-	-
134	440610000	0.004	-	-	-	-	0.004
135	440690000	1.369	0.256	0.137	-	-	0.587
136	440710110	0.002	0.002	0.001	-	0.001	0.002
137	440710121	-	0.003	0.003	0.004	0.001	0.003
138	440710129	-	-	-	0.002	-	0.002
139	440710210	-	-	-	0.500	-	0.500
140	440710290	-	-	0.246	-	-	0.246
141	440710310	-	-	-	-	-	-
142	440710321	-	-	0.452	-	-	0.452
143	440710322	0.007	0.020	0.009	0.019	0.012	0.014
144	440710323	-	0.003	-	-	-	0.003
145	440710329	0.146	0.261	0.139	0.173	0.055	0.155
146	440710330	-	-	0.191	-	-	0.191
147	440710341	2.126	2.720	2.546	3.364	4.711	3.093
148	440710349	0.005	0.020	0.003	0.090	0.207	0.065
149	440710350	1.905	0.063	-	-	-	0.984
150	440710361	0.110	0.231	0.159	0.103	0.091	0.139

부표 2. 일본 시장내 한국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년간 평균
151	440710369	-	0.010	0.046	-	-	0.028
152	440710371	0.173	1.050	1.136	0.970	1.399	0.946
153	440710379	-	-	-	0.228	0.419	0.323
154	440710381	-	-	-	-	0.049	0.049
155	440710389	-	-	-	0.008	-	0.008
156	440710391	-	-	-	-	-	-
157	440710399	-	0.073	-	-	-	0.073
158	440724000	-	-	-	-	-	-
159	440725010	-	-	-	-	-	-
160	440725090	-	-	-	-	-	-
161	440726010	-	-	-	-	-	-
162	440726090	-	-	-	-	-	-
163	440729110	-	-	-	-	-	-
164	440729190	-	-	0.041	-	-	0.041
165	440729215	-	-	-	-	-	-
166	440729290	-	-	0.007	-	-	0.007
167	440791000	-	0.005	-	-	-	0.005
168	440792000	-	-	-	-	-	-
169	440799100	-	-	-	0.043	-	0.043
170	440799210	0.027	0.033	-	0.010	-	0.023
171	440799290	-	-	-	-	-	-
172	440799310	-	0.033	-	-	-	0.033
173	440799390	-	-	-	-	-	-
174	440799400	-	-	-	-	-	-
175	440799500	0.004	0.061	0.063	0.005	-	0.033
176	440810010	-	-	-	1.394	-	1.394
177	440810110	-	-	-	-	-	-
178	440810190	-	-	-	-	-	-
179	440810210	-	-	-	0.370	-	0.370
180	440810290	-	-	-	3.157	-	3.157

부표 2. 일본 시장내 한국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년간 평균
181	440831100	-	-	-	-	-	-
182	440831190	-	-	-	-	-	-
183	440831210	-	-	-	-	-	-
184	440831290	-	-	-	-	-	-
185	440839110	-	-	-	-	-	-
186	440839120	-	-	-	-	-	-
187	440839200	-	-	-	-	-	-
188	440839410	-	-	-	-	-	-
189	440839420	-	-	-	-	-	-
190	440839510	-	-	-	-	-	-
191	440839520	-	-	-	-	-	-
192	440839590	-	-	-	-	-	-
193	440839910	-	-	-	-	-	-
194	440839990	-	-	-	-	-	-
195	440890110	-	-	-	-	-	-
196	440890120	-	-	-	-	-	-
197	440890190	-	-	-	-	-	-
198	440890510	-	-	-	-	-	-
199	440890520	-	-	-	-	-	-
200	440890610	-	-	-	0.015	0.060	0.037
201	440890690	-	-	-	0.100	0.040	0.070
202	440910100	-	-	-	-	-	-
203	440910200	0.062	0.004	-	0.007	0.015	0.022
204	440910310	0.006	-	0.006	-	-	0.006
205	440910320	-	-	-	-	-	-
206	440920110	0.059	-	-	-	-	0.059
207	440920200	0.024	-	0.021	-	-	0.022
208	440920310	-	-	-	-	-	-
209	440920320	-	-	-	-	-	-
210	440920330	-	-	-	-	-	-

부표 2. 일본 시장내 한국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년간 평균
211	440920340	0.001	0.013	0.004	-	0.003	0.007
212	441021010	-	-	-	-	-	-
213	441021020	-	-	-	-	-	-
214	441029010	-	-	-	4.727	1.604	3.166
215	441029020	-	-	-	-	-	-
216	441031010	-	-	-	0.024	-	0.024
217	441031020	-	-	-	-	-	-
218	441039010	-	-	-	6.370	0.127	3.248
219	441039020	-	-	-	32.455	-	32.455
220	441090010	-	12.582	9.276	-	-	10.929
221	441090020	-	-	35.740	-	-	35.740
222	441111000	19.188	19.276	11.072	11.699	7.601	13.767
223	441119000	3.699	1.314	3.368	7.113	4.765	4.052
224	441121000	1.845	1.539	1.528	2.037	2.175	1.825
225	441129000	0.979	0.677	0.781	1.569	1.384	1.078
226	441131000	-	-	-	-	-	-
227	441139000	1.751	1.208	4.732	0.584	3.746	2.404
228	441191000	2.765	-	-	-	-	2.765
229	441199000	3.772	9.204	25.645	6.103	2.103	9.365
230	441213111	-	-	-	-	-	-
231	441213119	-	-	-	0.040	-	0.040
232	441213121	-	-	0.109	-	-	0.109
233	441213122	-	-	0.304	-	-	0.304
234	441213123	-	-	-	0.003	-	0.003
235	441213125	-	-	-	0.025	-	0.025
236	441213130	-	-	-	-	-	-
237	441213211	-	-	-	-	-	-
238	441213219	-	-	0.004	0.007	-	0.006
239	441213221	-	-	-	-	-	-
240	441213229	-	-	-	-	-	-

부표 2. 일본 시장내 한국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년간 평균
241	441213231	-	-	0.004	-	-	0.004
242	441213233	-	-	-	-	0.007	0.007
243	441213240	-	-	-	0.201	0.092	0.146
244	441214011	-	-	0.217	-	0.005	0.111
245	441214019	0.066	-	0.092	-	-	0.079
246	441214031	-	-	-	-	0.059	0.059
247	441214039	-	-	-	0.006	-	0.006
248	441214041	-	-	-	0.032	0.003	0.018
249	441214042	-	-	-	0.055	0.003	0.029
250	441214049	-	-	-	-	-	-
251	441219011	-	0.005	-	-	-	0.005
252	441219019	6.008	1.161	0.077	12.486	23.933	14.555
253	441219021	-	-	-	-	0.270	0.270
254	441219022	0.013	0.036	0.710	0.488	-	0.312
255	441222010	0.163	-	-	-	-	0.163
256	441222090	0.006	-	-	0.066	-	0.018
257	441223010	-	1.568	-	-	-	1.568
258	441223090	-	-	-	-	-	-
259	441229010	0.026	-	0.189	0.097	-	0.104
260	441229090	0.017	0.041	0.085	-	-	0.048
261	441290090	-	-	-	-	-	-
262	441292010	-	0.173	-	-	-	0.173
263	441292090	-	-	-	-	-	-
264	441293010	-	-	-	-	-	-
265	441293090	9.222	0.383	-	2.384	-	3.996
266	441299010	0.029	0.298	0.393	0.558	0.130	0.281
267	441300000	-	-	-	-	-	-
268	441400000	0.360	0.242	0.176	0.166	0.120	0.213
269	441510000	0.704	1.346	2.032	1.294	2.559	1.587
270	441520000	0.937	0.920	0.745	1.179	1.370	1.030

부표 2. 일본 시장내 한국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년간 평균
271	441600000	-	-	-	-	-	-
272	441700010	-	-	-	-	-	-
273	441700020	0.019	-	0.041	0.207	0.392	0.165
274	441810000	0.123	0.106	0.285	0.093	0.195	0.160
275	441820000	0.334	0.329	0.393	0.442	0.278	0.355
276	441830000	0.068	-	0.515	0.362	-	0.315
277	441840000	-	-	-	-	13.920	13.920
278	441850000	-	-	-	-	-	-
279	441890100	8.685	3.020	3.206	0.270	-	3.795
280	441890210	0.107	0.069	0.991	0.358	0.498	0.405
281	441890221	0.138	0.129	0.086	0.064	0.046	0.093
282	441890222	0.005	-	-	-	-	0.005
283	441890229	0.015	0.030	0.050	0.042	0.007	0.029
284	441900010	0.005	0.001	0.007	0.016	0.023	0.010
285	441900020	0.202	0.226	0.273	0.175	0.100	0.195
286	442010000	0.725	0.444	0.233	0.301	0.289	0.398
287	442090010	1.405	-	0.827	-	1.981	1.405
288	442090090	0.738	0.667	0.414	0.777	0.693	0.658
289	442110000	0.211	0.018	0.175	0.038	0.032	0.095
290	442190010	-	-	-	-	-	-
291	442190020	-	-	-	-	-	-
292	442190091	-	-	-	-	-	-
293	442190092	0.113	1.024	-	0.181	-	0.439
294	442190099	0.308	0.338	0.234	0.201	0.219	0.260
295	450110000	-	-	-	-	-	-
296	450190000	0.042	-	-	-	-	0.042
297	450200000	-	-	1.580	1.677	-	1.629
298	450310000	-	-	-	-	-	-
299	450390000	0.067	-	1.310	2.315	1.592	1.321
300	450410000	0.063	-	0.229	0.113	0.017	0.105

부 표 2. 일본 시장내 한국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년간 평균
301	450490000	-	-	-	0.192	-	0.192
302	460210010	2.867	0.118	-	-	1.024	1.336
303	460210021	-	-	-	-	-	-
304	460210022	7.436	7.843	7.316	7.859	7.021	7.495
305	460210023	0.023	0.005	0.004	-	0.004	0.009
306	460210029	0.009	0.001	0.002	0.004	0.002	0.003
307	481430000	4.607	10.580	9.743	11.366	2.357	7.730
308	680223000	0.767	0.823	0.385	0.510	0.185	0.534
309	680229000	0.688	0.602	0.068	0.519	-	0.469
310	680293000	1.642	0.986	0.704	0.469	0.343	0.829
311	680299000	1.388	2.549	5.699	3.557	4.780	3.595
312	680300000	0.568	0.025	-	0.112	-	0.235
313	681599010	-	-	-	-	-	-
314	681599090	3.079	7.054	6.327	2.988	1.622	4.214
315	940600010	0.200	0.781	1.415	1.818	1.223	1.088
316	940600090	1.682	3.203	5.950	9.219	6.351	5.281
전 체		0.429	0.452	0.448	0.417	0.449	0.439

부표 3. 한국 시장내 일본농산물의 MCA지수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개년 평균
1	0106310000	-	-	-	-	-	-
2	0106320000	-	-	-	-	-	-
3	0505100000	-	-	-	-	-	-
4	0505909000	2.372	4.539	-	-	-	3.456
5	0602109000	0.317	-	-	1.167	0.124	0.536
6	0602207010	-	-	-	-	-	-
7	0602207020	-	-	-	-	-	-
8	0602207030	-	-	-	-	-	-
9	0602300000	32.268	8.524	29.112	33.132	2.318	33.132
10	0602902011	-	-	-	-	-	-
11	0602902019	-	-	-	-	-	-
12	0602902020	-	-	-	-	-	-
13	0602902030	-	-	-	33.132	34.220	33.676
14	0602902040	-	-	-	-	-	-
15	0602902050	-	-	-	-	-	-
16	0602902061	-	-	-	-	-	-
17	0602902069	-	-	-	-	-	-
18	0602902071	-	-	-	-	-	-
19	0602902079	-	-	-	33.132	-	33.132
20	0602902081	-	-	-	-	-	-
21	0602902089	-	-	-	-	-	-
22	0602902091	-	-	-	33.132	11.467	22.299
23	0602902099	-	0.684	-	1.518	34.220	12.141
24	0602909010	8.735	12.481	5.294	-	-	8.837
25	0602909020	-	-	-	-	34.220	34.220
26	0604100000	-	-	-	-	-	-
27	0604911010	-	-	-	-	-	-
28	0604911090	-	-	-	-	-	-
29	0709520000	-	-	-	-	-	-
30	0709591000	-	-	-	0.321	1.253	0.787

부표 3. 한국 시장내 일본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개년 평균
31	0709592000	-	-	-	-	-	-
32	0709901000	-	-	-	-	-	-
33	0709902000	-	-	-	-	-	-
34	0710803000	-	-	-	-	-	-
35	0710805000	-	-	-	-	-	-
36	0710806000	-	-	-	-	0.583	0.583
37	0711591000	-	-	-	-	-	-
38	0711903000	-	-	-	-	-	-
39	0711905010	-	-	-	-	-	-
40	0711905020	-	-	-	-	-	-
41	0712320000	-	-	-	-	-	-
42	0712391010	-	-	-	-	-	-
43	0712391020	-	-	-	-	-	-
44	0712392000	-	-	-	-	-	-
45	0712902010	0.722	-	-	-	-	0.722
46	0712902094	-	-	-	-	-	-
47	0714901010	-	-	-	-	-	-
48	0714901090	0.931	-	-	0.195	-	0.563
49	0802110000	-	-	-	-	-	-
50	0802120000	-	-	-	-	-	-
51	0802210000	-	-	-	-	-	-
52	0802220000	-	-	-	-	-	-
53	0802310000	-	-	-	-	-	-
54	0802320000	-	-	-	-	-	-
55	0802401000	-	-	0.912	-	3.757	2.335
56	0802402000	-	-	-	29.528	-	29.528
57	0802500000	-	-	-	-	-	-
58	0802901010	-	-	-	-	-	-
59	0802901020	-	-	-	-	-	-
60	0802902010	32.268	-	-	-	-	32.268

부표 3. 한국 시장내 일본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개년 평균
61	0802902020	-	-	-	-	-	-
62	0802909000	-	-	-	-	-	-
63	0810901000	-	-	-	-	-	-
64	0810903000	-	-	-	-	-	-
65	0811901000	-	-	3.992	-	-	3.992
66	0811902000	-	-	-	-	-	-
67	0811903000	-	-	-	-	-	-
68	0813401000	-	0.117	-	-	-	0.117
69	0813402000	-	-	-	-	-	-
70	1106201000	-	14.978	29.112	33.132	-	25.741
71	1106209000	-	0.656	0.732	1.235	2.149	1.193
72	1209991010	-	-	-	-	-	-
73	1209991090	-	2.398	0.154	0.822	0.567	0.985
74	1209994000	0.127	0.250	0.987	0.667	-	0.508
75	1211909080	-	-	-	-	-	-
76	1301901000	8.670	24.963	0.390	2.168	1.561	7.550
77	1301909000	1.277	1.387	1.651	1.981	2.546	1.768
78	1302193000	16.134	17.372	25.965	18.352	26.783	20.921
79	1401101000	-	-	-	-	-	-
80	1401102000	-	-	-	-	-	-
81	1401109000	-	-	-	-	0.153	0.153
82	1401201000	-	-	-	-	-	-
83	1401209000	-	-	-	-	-	-
84	1401901000	-	-	-	-	-	-
85	1401909000	-	0.254	-	-	-	0.254
86	1402000000	-	-	-	-	-	-
87	1404101000	-	-	-	-	-	-
88	1404102000	-	-	-	-	-	-
89	1404109000	8.670	1.784	6.850	1.274	4.563	4.628
90	1404901000	-	-	-	-	-	-

부표 3. 한국 시장내 일본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개년 평균
91	1404902010	-	-	-	-	-	-
92	1404902020	32.268	24.963	-	-	-	28.615
93	1404902090	5.116	2.918	5.598	14.519	-	7.038
94	1404903010	-	-	-	-	-	-
95	1404903020	-	-	-	-	-	-
96	1404903090	-	-	-	-	24.443	24.443
97	1404909000	0.217	0.842	1.684	1.422	1.364	1.106
98	2003200000	-	-	-	-	-	-
99	2003901000	-	-	-	-	-	-
100	2003902000	-	-	-	-	-	-
101	2005902000	0.687	0.524	0.279	0.245	0.189	0.385
102	2006001000	32.268	24.963	26.465	22.889	-	26.646
103	2006009020	-	-	-	-	-	-
104	2008191000	0.712	1.737	0.399	15.662	2.389	4.180
105	2106909060	-	-	-	-	0.125	0.125
106	2208702000	-	-	-	-	-	-
107	2308001000	-	-	-	-	-	-
108	2308002000	-	-	-	-	-	-
109	2514001000	-	-	-	-	-	-
110	2514009000	-	-	-	-	-	-
111	2516110000	0.882	0.261	0.723	-	0.417	0.571
112	2516120000	1.435	0.472	1.613	1.771	0.348	1.128
113	2516210000	-	-	-	-	-	-
114	2516220000	-	-	-	-	-	-
115	2516901000	4.387	-	-	-	-	4.387
116	2516909000	-	-	0.715	0.866	-	0.790
117	2517491000	-	-	29.112	-	-	29.112
118	2517492000	-	-	1.917	-	-	1.917
119	2517499000	2.353	1.285	15.125	18.386	16.458	10.721
120	3806101000	0.573	0.257	0.214	0.148	0.283	0.295

부표 3. 한국 시장내 일본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개년 평균
121	3807009010	-	-	-	-	-	-
122	4401100000	-	-	-	-	-	-
123	4401210000	-	4.339	7.394	19.182	3.597	8.628
124	4401220000	-	0.312	0.298	0.517	-	0.375
125	4401300000	-	0.162	0.915	0.462	0.372	0.478
126	4402001000	0.873	-	-	-	-	0.873
127	4402009000	0.394	0.112	0.124	0.526	0.342	0.299
128	4403101000	-	-	-	-	-	-
129	4403102000	-	-	-	-	-	-
130	4403109000	-	-	-	-	4.858	4.858
131	4403201000	2.685	1.912	0.930	2.683	0.629	1.768
132	4403202010	-	-	-	-	-	-
133	4403202020	-	-	-	-	-	-
134	4403203000	-	-	-	-	-	-
135	4403204000	-	-	0.416	0.139	-	0.277
136	4403205000	-	-	-	-	-	-
137	4403207000	-	-	-	-	-	-
138	4403208000	-	-	-	-	-	-
139	4403209000	0.157	0.293	0.527	-	-	0.326
140	4403410000	-	-	-	-	-	-
141	4403491000	-	-	-	-	-	-
142	4403492010	-	-	-	-	-	-
143	4403492020	-	-	-	-	-	-
144	4403492030	-	-	-	-	-	-
145	4403492040	-	-	-	-	-	-
146	4403492090	-	-	-	-	-	-
147	4403493000	-	-	-	-	-	-
148	4403494000	-	-	-	-	-	-
149	4403495000	-	-	-	-	-	-
150	4403499000	-	-	-	-	-	-

부표 3. 한국 시장내 일본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개년 평균
151	4403910000	0.253	-	-	-	-	0.253
152	4403920000	-	-	-	-	-	-
153	4403991010	-	-	-	-	-	-
154	4403991020	-	-	29.112	33.132	-	31.122
155	4403991040	-	-	-	-	-	-
156	4403991050	-	-	-	-	-	-
157	4403991090	-	-	0.476	-	-	0.476
158	4403992000	-	-	-	-	-	-
159	4403993010	-	-	-	-	-	-
160	4403993020	-	-	-	-	-	-
161	4403993030	-	-	-	-	-	-
162	4403993040	-	-	-	-	-	-
163	4403993050	-	-	-	-	-	-
164	4403993060	-	-	-	-	-	-
165	4403994000	-	-	-	-	-	-
166	4403999011	-	-	-	-	-	-
167	4403999012	-	-	-	-	-	-
168	4403999019	-	-	-	-	-	-
169	4403999090	-	0.444	0.120	0.387	0.418	0.342
170	4404102000	-	-	-	-	-	-
171	4404109000	-	-	-	-	-	-
172	4404202000	-	-	-	-	-	-
173	4404209000	0.552	-	-	16.567	-	8.559
174	4405000000	0.489	0.515	0.268	0.575	0.598	0.489
175	4406100000	-	-	-	-	-	-
176	4406900000	3.843	-	-	-	-	3.843
177	4407101000	-	-	0.967	0.788	0.294	0.683
178	4407102000	-	-	-	1.649	-	1.649
179	4407103000	-	-	-	-	-	-
180	4407104000	-	-	0.120	0.122	0.142	0.128

부표 3. 한국 시장내 일본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개년 평균
181	4407105000	-	-	-	-	-	-
182	4407107000	0.258	-	0.392	0.128	-	0.260
183	4407108000	-	-	-	-	-	-
184	4407109000	-	0.135	0.515	0.259	0.361	0.318
185	4407241000	-	-	-	-	-	-
186	4407242000	-	-	1.134	-	-	1.134
187	4407243000	-	-	-	-	-	-
188	4407244000	5.338	0.384	1.712	-	-	2.478
189	4407250000	-	-	-	-	-	-
190	4407260000	-	-	-	0.318	-	0.318
191	4407291000	-	-	-	-	-	-
192	4407292000	-	-	-	-	-	-
193	4407293000	-	-	-	-	-	-
194	4407299000	0.146	-	-	-	-	0.146
195	4407910000	0.255	0.481	0.238	0.244	0.384	0.320
196	4407920000	0.346	-	-	-	-	0.346
197	4407991010	0.565	0.391	-	0.226	-	0.394
198	4407991020	18.861	7.767	7.453	-	-	11.360
199	4407991030	-	-	-	-	-	-
200	4407991040	-	-	1.168	-	-	1.168
201	4407991090	0.947	0.276	1.155	-	-	0.793
202	4407992000	-	-	-	-	-	-
203	4407993010	-	-	-	-	-	-
204	4407993020	-	-	-	-	-	-
205	4407993030	0.467	0.122	0.156	0.778	0.435	0.391
206	4407993040	0.234	-	-	-	-	0.234
207	4407993050	-	-	-	-	0.873	0.873
208	4407993060	-	-	-	-	-	-
209	4407994000	-	-	-	-	0.261	0.261
210	4407999010	-	-	-	-	-	-

부표 3. 한국 시장내 일본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개년 평균
211	4407999090	0.135	0.545	0.737	0.585	0.650	0.530
212	4408106000	-	-	-	-	-	-
213	4408109010	-	-	-	-	-	-
214	4408109020	-	-	-	-	-	-
215	4408109030	-	-	-	-	-	-
216	4408109040	-	-	-	-	-	-
217	4408109050	-	-	-	-	-	-
218	4408109060	-	-	-	0.444	3.129	1.787
219	4408109070	-	-	-	-	-	-
220	4408109090	-	-	-	-	-	-
221	4408313000	-	-	-	-	-	-
222	4408319010	-	-	-	-	-	-
223	4408319020	-	-	-	-	-	-
224	4408396000	-	-	-	17.844	34.220	26.032
225	4408399010	-	-	-	-	-	-
226	4408399020	-	-	-	-	-	-
227	4408399030	-	-	-	-	-	-
228	4408399040	-	-	-	-	-	-
229	4408399050	-	-	-	1.274	0.740	1.007
230	4408399090	-	-	-	-	0.128	0.128
231	4408901000	-	-	-	-	0.115	0.115
232	4408909110	-	-	-	1.315	1.823	1.569
233	4408909120	-	-	-	-	22.813	22.813
234	4408909130	-	-	-	-	-	-
235	4408909140	-	-	-	-	-	-
236	4408909190	-	-	-	0.215	0.548	0.382
237	4408909200	-	-	-	-	-	-
238	4408909310	-	-	-	-	-	-
239	4408909320	-	-	-	-	-	-
240	4408909330	-	-	-	0.283	0.780	0.531

부표 3. 한국 시장내 일본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개년 평균
241	4408909340	-	-	-	-	-	-
242	4408909350	-	-	-	1.453	1.994	1.723
243	4408909360	-	-	-	-	-	-
244	4408909400	-	-	-	-	-	-
245	4408909911	-	-	-	-	-	-
246	4408909919	-	-	-	0.372	0.219	0.296
247	4408909990	-	-	-	0.656	0.998	0.827
248	4409100000	0.245	0.573	0.343	-	-	0.387
249	4409200000	0.789	0.183	0.183	-	0.528	0.421
250	4410210000	-	-	-	0.245	-	0.245
251	4410290000	-	-	-	-	0.470	0.470
252	4410310000	-	-	-	-	0.237	0.237
253	4410320000	-	-	-	-	-	-
254	4410330000	-	-	-	-	-	-
255	4410390000	-	-	-	0.777	0.113	0.445
256	4410900000	0.654	0.262	0.976	0.188	0.145	0.445
257	4411110000	0.144	-	-	0.337	-	0.240
258	4411191010	-	-	0.432	0.643	0.399	0.491
259	4411191090	-	-	-	-	0.134	0.134
260	4411199000	-	1.262	-	0.374	2.285	1.307
261	4411210000	-	-	-	-	0.192	0.192
262	4411291010	-	-	0.297	0.332	1.232	0.620
263	4411291090	-	0.359	-	-	-	0.359
264	4411299000	2.876	0.816	1.773	0.819	3.213	1.899
265	4411310000	-	-	-	-	-	-
266	4411390000	-	-	-	-	-	-
267	4411910000	4.524	0.942	-	-	-	2.733
268	4411990000	0.162	-	0.188	0.516	2.249	0.779
269	4412131000	0.583	0.416	0.182	0.165	0.151	0.300
270	4412132000	-	-	-	-	-	-

부표 3. 한국 시장내 일본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개년 평균
271	4412133000	-	-	-	0.599	0.200	0.399
272	4412134000	0.315	0.342	0.676	0.126	0.292	0.350
273	4412135000	0.340	0.990	0.281	0.244	0.428	0.456
274	4412136000	0.268	0.294	0.124	0.174	0.329	0.238
275	4412141000	-	-	-	0.828	-	0.828
276	4412142000	-	-	-	-	-	-
277	4412143000	-	-	1.298	-	-	1.298
278	4412144000	-	-	-	0.179	0.138	0.158
279	4412145000	-	-	0.119	-	0.299	0.209
280	4412146000	-	-	-	-	-	-
281	4412191011	-	-	-	-	-	-
282	4412191019	-	-	0.763	-	-	0.763
283	4412191091	-	-	-	-	-	-
284	4412191099	16.667	4.489	5.124	1.817	2.776	6.175
285	4412220000	-	-	-	-	-	-
286	4412230000	-	-	-	-	-	-
287	4412291000	0.775	0.156	-	-	-	0.465
288	4412292010	4.528	4.853	2.381	2.479	0.516	2.952
289	4412292090	0.573	0.394	0.534	-	0.184	0.421
290	4412920000	-	-	0.470	-	1.294	0.882
291	4412930000	32.268	-	-	-	-	32.268
292	4412991010	8.254	-	4.159	-	-	6.207
293	4412991090	2.620	1.679	1.999	0.455	0.279	1.406
294	4412992010	19.795	9.272	6.156	4.487	1.674	8.277
295	4412992090	5.745	0.619	0.788	2.125	0.770	2.009
296	4413000000	0.655	0.155	0.739	0.597	0.223	0.474
297	4414000000	1.430	0.182	0.198	0.143	0.997	0.590
298	4415100000	14.932	12.475	13.921	0.582	5.815	9.545
299	4415200000	6.824	2.275	0.670	0.200	0.438	2.081
300	4416000000	3.214	0.925	0.347	3.417	0.653	1.711

부표 3. 한국 시장내 일본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개년 평균
301	4417000000	0.437	0.620	0.324	0.525	1.368	0.655
302	4418100000	0.872	-	0.349	-	0.433	0.551
303	4418200000	0.418	0.918	-	0.128	0.589	0.513
304	4418300000	-	4.766	-	-	-	4.766
305	4418400000	3.256	-	-	-	-	3.256
306	4418500000	-	3.879	2.872	-	-	3.376
307	4418901000	-	-	-	-	-	-
308	4418909000	-	-	-	-	-	-
309	4419001000	2.198	0.140	0.688	1.241	0.217	0.897
310	4419002010	6.959	3.658	2.146	1.385	0.855	3.001
311	4419002090	0.800	0.380	0.283	0.182	0.762	0.481
312	4419009000	0.896	0.696	2.356	1.169	1.561	1.336
313	4420101000	-	-	0.143	0.654	0.178	0.325
314	4420109000	0.480	0.280	1.115	0.452	1.167	0.699
315	4420901000	-	-	-	-	-	-
316	4420902010	-	-	-	-	-	-
317	4420902020	-	-	-	-	-	-
318	4420902030	-	-	-	-	-	-
319	4420902090	1.676	0.789	0.477	0.645	1.582	1.034
320	4420909010	1.837	-	0.146	0.395	0.117	0.624
321	4420909020	4.599	-	-	-	0.182	2.390
322	4420909090	0.667	0.615	0.371	0.683	0.474	0.562
323	4421100000	0.842	0.999	0.219	0.421	0.373	0.571
324	4421901010	12.318	2.979	27.992	23.144	3.429	13.973
325	4421901090	3.481	2.447	1.347	0.467	3.397	2.228
326	4421902000	1.831	-	1.754	-	-	1.792
327	4421903000	-	-	-	-	-	-
328	4421904000	-	15.129	12.939	13.155	7.897	12.280
329	4421905000	0.373	0.363	0.829	0.337	0.339	0.448
330	4421909000	0.373	0.336	0.765	0.579	0.334	0.477

부표 3. 한국 시장내 일본농산물의 MCA지수<계속>

순위	HS-CODE	1999	2000	2001	2002	2003	5개년 평균
331	4501100000	-	-	-	-	-	-
332	4501900000	0.246	-	0.668	-	-	0.457
333	4502000000	-	-	-	-	-	-
334	4503100000	-	-	-	-	-	-
335	4503900000	-	-	-	-	-	-
336	4504100000	0.649	-	0.358	1.554	1.299	0.965
337	4504900000	0.140	0.434	3.639	2.276	0.247	1.347
338	4602101010	-	-	-	-	-	-
339	4602101020	0.117	-	-	-	-	0.117
340	4602101030	0.368	0.115	1.386	0.463	0.545	0.575
341	4602101090	0.798	0.774	0.635	0.187	0.218	0.522
342	4602102000	0.413	-	0.162	0.599	0.222	0.349
343	4602109000	0.112	0.693	0.457	0.153	0.239	0.331
344	4814301010	-	-	-	-	-	-
345	4814301020	29.358	-	-	-	-	29.358
346	4814309000	1.331	2.528	3.752	7.765	3.919	3.859
347	6802230000	0.252	0.271	0.267	0.676	0.894	0.472
348	6802290000	0.720	0.497	0.773	0.287	0.339	0.523
349	6802930000	-	-	-	0.162	0.121	0.142
350	6802990000	1.547	-	0.375	0.299	0.163	0.596
351	6803001000	0.542	-	-	7.182	-	3.862
352	6803009000	-	4.615	3.298	0.266	1.647	2.457
353	6815990000	8.375	1.812	9.587	6.182	1.787	5.549
354	9406001000	0.137	0.139	-	0.278	0.327	0.221

부표 4. 일본 임산물의 한국 시장내 잠재교역액(PBT)

HS-CODE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5년간 평균
010631	0	0	0	0	0	0
010632	0	0	0	0	0	0
050510	964	739	536	1,076	1,142	891
050590	12	3	9	2	76	21
060210	901	956	765	464	554	728
060220	6	97	89	43	129	73
060230	0	27	0	2	13	14
060290	8	141	80	86	34	70
060410	0	2	3	0	0	3
060491	12	129	69	54	6	54
070952	0	0	0	1	0	1
070959	0	0	0	811	1,022	917
070990	0	0	0	0	0	0
071080	244	147	256	194	93	187
071159	0	0	0	0	0	0
071190	1	96	128	190	214	126
071232	0	0	0	0	0	0
071239	0	0	0	3,144	2,736	2,940
071290	1,618	1,504	980	1,135	827	1,213
071490	617	742	818	650	585	682
080211	0	0	0	0	5	5
080212	89	15	30	54	43	46
080221	0	0	0	0	0	0
080222	0	0	0	0	0	0
080231	4	4	16	0	5	7
080232	0	0	0	30	2	16
080240	0	100	24	72	868	266
080250	303	51	0	2	2	89
080290	0	3	86	0	163	84

부표 4. 일본 임산물의 한국 시장내 잠재교역액(PBT) <계속>

HS-CODE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5년간 평균
081090	94	180	584	1124	1073	611
081190	0	0	0	0	2	2
081340	392	716	472	482	353	483
110620	57	18	40	0	96	53
120999	1,639	2,456	2,499	2,792	2,989	2,475
121190	1,741	1,865	1,896	1,306	1,692	1,700
130190	241	280	167	167	169	205
130219	16	22	8	29	9	17
140110	210	235	131	127	157	172
140120	0	4	2	0	0	3
140190	28	94	35	38	29	45
140200	0	0	0	0	0	0
140410	33	24	22	10	0	22
140490	464	528	312	298	234	367
200320	6	3	0	2	0	4
200390	0	0	0	0	0	0
200590	1,049	1,425	1,342	1,609	1,439	1,373
200600	242	552	394	297	308	359
200819	4,434	5,268	5,092	5,562	5,371	5,145
210690	1,171	1,289	1,517	1,470	1,634	1,416
220870	3,469	3,525	4,758	6,467	6,411	4,926
230800	0	0	0	0	0	0
251400	0	0	6	47	15	23
251611	1,321	1,418	803	825	1,641	1,202
251612	584	1,501	2,404	1,133	1,965	1,517
251621	0	0	0	26	0	26
251622	40	8	0	47	23	23
251690	0	24	0	24	12	20
251749	769	461	374	76	420	420
380610	2,317	2,236	1,109	1,878	1,810	1,870
380700	403	418	430	334	267	370

부표 4. 일본 임산물의 한국 시장내 잠재교역액(PBT) <계속>

HS-CODE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5년간 평균
440110	0	0	0	0	0	0
440121	11	38	31	8	35	25
440122	14	82	19	443	42	120
440130	424	61	100	264	214	213
440200	696	887	1,027	2,061	2,598	1,454
440310	0	0	0	0	0	0
440320	0	237	151	0	849	412
440341	0	0	0	0	0	0
440349	0	0	0	0	0	0
440391	0	0	0	4	0	4
440392	0	0	0	0	0	0
440399	53	49	138	233	311	157
440410	0	0	0	0	0	0
440420	27	115	99	62	52	71
440500	295	676	174	209	206	312
440610	0	0	0	0	0	0
440690	0	0	3	8	9	7
440710	2,591	2,004	1,657	1,890	2,639	2,156
440724	15	129	50	52	27	55
440725	0	0	0	0	0	0
440726	36	0	12	4	2,464	629
440729	121	75	225	502	184	221
440791	490	63	524	1,474	532	616
440792	82	53	2	937	19	218
440799	5,639	5,659	4,592	5,055	5,753	5,340
440810	441	88	211	233	122	219
440831	0	0	0	0	0	0
440839	1,329	1,204	1,109	1,621	2,015	1,455
440890	10,999	11,508	7,656	7,005	7,074	8,849
440910	45	142	0	119	75	95

부표 4. 일본 임산물의 한국 시장내 잠재교역액(PBT) <계속>

HS-CODE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5년간 평균
440920	1,439	341	304	265	748	620
441011	19	0	3	0	0	11
441019	0	0	391	0	0	391
441021	0	0	0	0	0	0
441029	0	0	0	0	0	0
441031	0	0	0	0	0	0
441032	0	0	0	0	0	0
441033	0	0	0	0	0	0
441039	0	0	0	0	0	0
441090	0	47	25	33	143	62
441111	0	46	36	0	82	55
441119	395	121	419	150	348	287
441121	13	184	150	292	338	196
441129	620	1,160	1,111	1,054	2,554	1,300
441131	0	0	0	0	0	0
441139	49	879	435	353	81	359
441191	0	36	0	0	138	87
441199	627	321	361	320	471	420
441213	855	1,412	1,178	1,455	3,771	1,734
441214	4,642	3,643	2,386	3,574	3,890	3,627
441219	672	410	0	0	327	470
441222	0	0	0	0	0	0
441223	0	0	0	0	0	0
441229	0	0	335	324	735	465
441292	0	20	0	25	18	21
441293	0	14	6	2	26	12
441299	0	0	567	310	810	562
441300	31	25	9	5	114	37
441400	323	429	128	141	358	276
441510	1,107	0	0	760	188	685

부표 4. 일본 임산물의 한국 시장내 잠재교역액(PBT) <계속>

HS-CODE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5년간 평균
441520	1,828	2,611	2,141	1,839	2,151	2,114
441600	79	97	83	61	413	147
441700	148	193	229	198	118	177
441810	71	577	0	170	0	272
441820	696	1,259	1,050	360	620	797
441830	527	505	301	97	170	320
441840	3	75	0	36	13	32
441850	0	0	0	3	0	3
441890	8,451	4,364	2,357	2,894	2,509	4,115
441900	5,534	6,006	4,351	4,172	4,002	4,813
442010	796	1,090	635	697	1198	883
442090	922	823	1,059	925	969	940
442110	162	24	32	60	62	68
442190	8,095	7,436	6,647	7,143	10,543	7,973
450110	207	83	9	3	44	69
450190	233	158	153	122	132	160
450200	9	7	0	9	0	8
450310	11	11	0	4	20	11
450390	55	77	49	45	40	53
450410	389	612	423	448	583	491
450490	107	85	63	40	59	71
460210	597	739	428	394	480	528
481430	61	76	191	249	104	136
680223	680	275	464	226	385	406
680229	11	1	59	11	65	29
680293	369	470	492	564	366	452
680299	165	408	112	167	215	213
680300	231	215	314	145	0	226
681599	8,180	9,797	7,521	10,532	9,190	9,044
940600	5,234	6,175	4,740	6,080	4,979	5,442
합 계	103,448	105,716	87,817	103,121	116,432	107,580

부표 5. 한국 임산물의 일본 시장내 잠재교역액(PBT)

HS-CODE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5년간 평균
010631	-	-	-	-	-	-
010632	-	-	-	-	-	-
050510	13,129	17,557	16,422	13,178	14,952	15,048
050590	2	23	8	7	-	10
060210	82	111	112	112	82	100
060220	96	161	96	0	18	93
060230	16	9	13	23	15	15
060290	-	611	878	574	750	703
060410	-	-	-	-	-	-
060491	109	130	110	93	7	90
070952	-	-	-	-	-	-
070959	604	159	190	884	771	522
070990	3	1	-	-	-	2
071080	50	24	211	155	231	134
071159	-	-	-	-	-	-
071190	89	547	831	599	359	485
071232	-	-	-	-	-	-
071239	-	-	-	2,221	2,757	996
071290	244	274	547	1,091	362	504
071490	8	4	48	5	4	14
080211	-	-	-	-	-	-
080212	108	36	-	-	-	72
080221	-	-	-	-	-	-
080222	-	-	-	-	-	-
080231	83	-	-	-	-	83
080232	-	-	20	-	-	20
080240	3,759	4,329	6,852	9,239	22,529	9,342
080250	-	-	-	-	-	-
080290	134	-	43	15	17	52
081090	449	1,535	2,346	1,223	213	1,153

부표 5. 한국 임산물의 일본 시장내 잠재교역액(PBT) <계속>

HS-CODE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5년간 평균
081190	64	242	35	30	95	93
081340	60	39	23	27	-	37
110620	-	-	1	-	1	2
120999	140	172	189	155	279	187
121190	1,005	989	1,184	1,121	1,420	1,144
130190	10	18	6	248	877	232
130219	-	-	-	-	-	-
140110	53	75	97	65	52	68
140120	-	-	-	-	-	-
140190	-	-	-	-	-	-
140200	-	-	-	-	-	-
140410	-	-	-	10	2	6
140490	49	-	16	12	4	20
200320	-	-	-	-	-	-
200390	-	-	-	-	-	-
200590	-	-	21	8	1	10
200600	-	29	398	463	2,205	774
200819	542	1,084	499	2,488	702	1,063
210690	23	18	32	24	194	58
220870	418	442	351	484	310	401
230800	-	-	-	-	-	-
251400	16	-	-	3	3	7
251611	25	151	190	214	82	132
251612	200	171	245	415	610	328
251621	-	-	-	-	-	-
251622	4	-	-	-	-	4
251690	1	-	-	6	19	9
251749	8	54	104	10	25	40
380610	79	107	139	137	27	98
380700	9	82	497	283	730	320

부표 5. 한국 임산물의 일본 시장내 잠재교역액(PBT) <계속>

HS-CODE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5년간 평균
440110	-	-	-	-	-	-
440121	-	-	56	-	-	56
440122	-	-	-	-	2	2
440130	18	3	2	3	12	8
440200	44	113	30	23	9	44
440310	-	-	-	-	-	-
440320	-	7	12	13	9	10
440341	-	-	-	-	-	-
440349	-	-	-	-	-	-
440391	4	-	-	-	-	4
440392	-	-	-	-	-	-
440399	5	31	-	-	43	26
440410	-	-	-	-	-	-
440420	2	-	-	-	-	2
440500	-	-	-	43	-	43
440610	-	-	-	-	-	-
440690	6	-	-	-	-	6
440710	319	162	700	1,820	1,259	852
440724	-	-	-	-	-	-
440725	-	-	-	-	-	-
440726	-	-	-	-	-	-
440729	20	51	34	29	159	59
440791	-	-	-	-	-	-
440792	-	-	-	-	-	-
440799	666	1,746	3,078	2,418	2,117	2,005
440810	345	770	578	101	43	367
440831	-	-	-	-	-	-
440839	-	50	58	29	156	73
440890	68	1,516	2,291	625	944	1,089
440910	61	61	4	33	13	34

부표 5. 한국 임산물의 일본 시장내 잠재교역액(PBT) <계속>

HS-CODE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5년간 평균
440920	28	154	37	84	182	97
441021	-	-	-	20	78	49
441029	-	-	-	-	109	109
441031	-	-	-	-	-	-
441032	-	-	-	-	-	-
441033	-	-	-	-	101	101
441039	-	-	-	366	-	366
441090	-	-	108	-	-	108
441111	509	2,046	1,914	1,321	-	1,448
441119	3,434	4,164	3,580	2,462	1,907	3,109
441121	4,787	6,068	5,804	1,634	1,670	3,993
441129	53	65	7	1	24	30
441131	-	-	-	-	-	-
441139	-	-	-	-	-	-
441191	-	-	-	-	-	-
441199	-	-	-	-	-	-
441213	465	263	288	455	745	443
441214	474	111	17	3	7,455	1,612
441219	7,686	2,402	1,540	509	323	2,492
441222	-	-	-	-	-	-
441223	-	-	-	-	-	-
441229	41,982	40,202	20,261	12,189	14,636	25,854
441292	-	-	-	-	-	-
441293	-	-	-	-	-	-
441299	365	891	730	1,181	671	768
441300	80	85	133	31	22	70
441400	902	775	281	442	276	535
441510	2,634	2,581	3,149	4,986	5,260	3,722
441520	1,147	1,404	1,365	937	1,101	1,191
441600	126	154	116	110	116	124

부표 5. 한국 임산물의 일본 시장내 잠재교역액(PBT) <계속>

HS-CODE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5년간 평균
441700	30	63	55	27	68	49
441810	126	224	87	111	49	119
441820	62	106	318	152	230	174
441830	7,967	2,005	1,103	739	680	2,499
441840	-	-	-	-	-	-
441850	-	-	-	-	-	-
441890	3,992	1,246	437	772	501	1,390
441900	505	719	857	1,072	652	761
442010	159	258	449	276	51	239
442090	2,555	1,477	841	608	833	1,263
442110	141	102	258	167	182	170
442190	1,846	2,320	3,773	7,562	6,577	4,416
450110	-	1	-	3	-	2
450190	-	-	-	-	-	-
450200	-	4	22	-	-	13
450310	9	5	9	16	27	13
450390	-	8	22	18	22	18
450410	-	-	1	4	5	3
450490	1	-	-	3	-	2
460210	86	279	103	185	145	160
481430	260	215	125	53	108	152
680223	189	494	1,187	388	581	568
680229	93	207	74	190	46	122
680293	184	134	211	269	220	204
680299	193	94	124	187	271	174
680300	-	3	3	22	3	8
681599	525	440	633	582	1397	715
940600	10,766	9,047	15,806	13,129	15,306	12,811
합 계	117,589	114,510	105,425	94,025	118,101	111,414

SUMMARY

Korea-Japan FTA and Policy Implications in Forestry Secto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of Korea-Japan FTA and provide information and guidelines for negotiation strategies in the forestry sector. This study consists of comparison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ructural changes, trade structure, tariff system, and competitiveness of forestry products in Japan as well as in Korea. This study selected some competitive commodities for Korea and Japa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and potential bilateral trade of forestry products.

This study enlightened that the structure of Korean forestry export is heterogeneous.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chest nut and pine mushroom have maintained their market share and competitiveness in spite of relatively higher prices while woods can survive only through the niche market in the Japanese wood import markets. Tariff structure of Korean forestry products is simple relative to Japan so that Japanese country schedule might be complicate with various categories for forestry commodities.

As a result of current production and consumption situations as well as tariff structure and competitive advantages, Korea-Japan FTA will promote exports of forestry products to Japan. At the same time, imports of some products from Japan may also increase. The rate of increase, however, is appeared to be much higher for Japanese export than that of Korean export.

Guidelines for Korea in the FTA negotiation with Japan is as follows; For its C/S, tariff elimination category for commodities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current tariff rates. For example, most tropical log to which zero percent of in-quota tariff rate is applied may be classified as "customs duties shall be eliminated a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FTA agreement" category. Establishing new categories such as "renegotiation after the agreement of WTO/DDA" or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within 15 years" may be another strategies for most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forestry sector. Finally, "exemption of tariff elimination" category should be recognized for those commodities of uncertain benefits of tariff eliminations for both countries. For both Korea and Japan, rationale of "exception of tariff abolishment" should be required, especially in preparation of future FTA with China and ASEAN.

Researcher: Myong-Keun Eor, Chul-Su Chang, Kwang Lee

E-mail Address: myongeor@krei.re.kr

C2004-18

한·일 FTA 체결과 임업부문의 정책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4. 6.

발 행 2004. 6.

발행인 이 정 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代)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